

연구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688-01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세부운영 방안 연구

**Studies on specific management for labeling and advertisement
for functional livestock foods**

주관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22838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기능성 축산물 세부 표시·광고 세부운영 방안 연구(건국대학교/김진만)” 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17

주관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

주관연구책임자 : 김 진 만

제 1세부 과제명 : 국내 및 일본의 기능성 축산물 제도 조사를 통한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세부운영 지침 제안
(제1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 건국대학교 / 김진만

제 2세부 과제명 : 미국 및 유럽의 기능성 축산물 제도 조사를 통한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세부운영 지침 제안
(제2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 연세대학교 / 윤성식

목 차

I.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필요성	8
제2장 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방법	28
제3장 연구개발과제 결과	33
제4장 결론 및 제언	175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기여도	213
제6장 기타 중요변경 사항	216
제7장 참고문헌	217
제8장 첨부서류	221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I.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제목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세부운영 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와 기능성 축산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광고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능성 축산물 관련 운영 제도 마련 및 관련 부처 간의 협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식품 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기준규격 및 법령을 분석한 후 국내의 실정에 부합되는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활성화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제도 운용 사례와 국외(일본, 미국, 유럽) 등의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분석 하여 이를 통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는 바이다.

연구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규제도 및 현황조사

1. 국내 기능성 축산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2. 일본의 기능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법규 및 실태
3. CODEX의 기능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법규
4. 미국의 기능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법규 및 실태
5. 유럽의 기능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법규 및 실태

나.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 실시

2012년 6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27일 까지 총 8회에 걸쳐 관계 부처와 축산식품관련 협회 및 산업체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능성 표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절차 및 기준 분석을 통하여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유

럽 주요국의 기능성 표시사항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기능, 표시 예시 및 표현 가능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국내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관리 방안 모색 및 법률의 제안

1. 기능성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과 표시 관련 법률 및 표시방안 제안
2. 기능성 축산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안
3.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
4.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기준 제안
5.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자체세부 운영방안 제안

4. 연구개발 결과 및 성과활용 계획

본 연구는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과 운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국외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세부지침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축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SUMMARY (영문 요약문)

1. The Title

Studies on the specific managements for labeling and advertisement for functional livestock foods.

2. Purpose of Research

For international harmony and promotion of functional livestock product industry, the goal is to devise efficient plans as well as desirable consultations between the relevant government branches through complete analysis in drawbacks on the current labeling and advertisement issues related to the functionalities in the livestock products and its improvement plans. In addition, this work examines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erms of labeling and advertisement of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ggesting a promotional plan appropriate for labeling and advertisement of the domestic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Henceforth, ultimately improving national health and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3.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anagement plan for labeling and advertisement of the domestic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through thorough examinations on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the function livestock products in the foreign countries(Japan, USA, and EU). Scop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 Examinations of the present situations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1. Analysis of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system and its current status in Korea.
2. Regula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functional foods-related labeling and advertisements in Japan
3. Regulations of the functional foods-related labeling and advertisements in CODEX
4. Regula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functional foods-related labeling and advertisements in USA
5. Regula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functional foods-related labeling and

advertisements in EU

B. Formed an expert consultative group and held the professional conferences

The consultative group, which consists of representatives of the food associations, livestock industries, and consumer bodies has held professional conferences eight times from June 15 to December 27, 2012, discussed practical applications into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through thorough analyses on the foreign functional foods-related systems as well as health-related functionalities of raw ingredients, standards and criteria, review procedures on the labeling and advertisements of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C. Suggestions to management plans and regulation laws related to the functional foods-related labeling and advertisements in Korea

1. Suggestions in standard and criteria, and regulation laws related to the functional foods-related labeling and advertisements in Korea
2. Suggestions to a draft of law in regard to organization of a review committee for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3. Suggestions to form the review committee on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related to labeling and advertisements
4. Suggestions to the review procedure of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related to labeling and advertisements
5. Suggestions to specific self management plans of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related to labeling and advertisements

4. Results and Application Plan

By suggesting the laws related to the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and also the management plans for labeling and advertisements, general consumers gain confidence in domestic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in additio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against the imported the various forms of them in this multinational FTA era.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not only fast growth of the livestock products industries, but also to ensure the health promotion of consumers in Korea by protecting the consumers from false or exaggerative labeling and advertisements.

제1장 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본 연구는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와 기능성 축산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광고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능성 축산물 관련 운영 제도 및 관련 부처 간의 협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많은 축산식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의 축산가공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국내 식품관련 산업의 육성 도모와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FTA로 인한 기능성 축산물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능성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수입 기능성 축산물이 기능성을 표시·광고하여 국내에 판매될 것이라 예상되나 국내 기능성 축산물은 아직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능성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기능성 축산물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한 국내 기능성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의 기준 및 자료, 국내 자료, 국외 선진국 제도 조사 등을 근거로 하여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고품질 기능성관련 축산식품의 표시 및 광고 세부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기능성 관련 축산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학적 근거 없는 기능성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능성 축산물 관련 국내 법률간 조화 및 담당업무 등을 위한 부처 간의 협의 및 새로운 제도적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성 축산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표시·광고 지침(안) 제안



그림 1. 기능성 축산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표시·광고 지침(안) 제안

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 생활수준 향상, 노령인구 증가, 웰빙(well-being) 현상 등으로 인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 증가
- ◆ 건강기능식품의 등장을 통한 식품 산업계의 발달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

인류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의 욕구증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의 기능성, 식품생산의 다양화 등 식품 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식품의 1차 기능(primary function) 즉, 식품의 양적 공급을 목표로 식품이 소비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식품의 2차 기능(secondary function)이라 할 수 있는 기호성 충족(sensory acceptability)은 물론 식품이 제공하는 건강 기능성을 추구하는 3차 기능(tertiary function) 위주로 양적 소비(quantitative consumption)에서 질적 소비(qualitative consumption)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식생활 변화는 식습관에서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현대인의 6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었고, 그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과학의 발달로 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일정부분 질병의 예방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식생활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를 추구하고자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은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웰빙(well-being) 현상에 결합되면서, 식이를 통한 영양소와 기능성분 섭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등장은 정제기에 들어선 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으며, 기능성 시장의 확대는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

되어 식품 산업체뿐만 아니라 식품관련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다국적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3대 분야 17대 과제 중 고부가 식품 산업을 포함시켰다.

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제도의 문제점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기능성 축산물에 관련하는 법률 조항 없음
- ◆ 기능성 축산물 표시 및 광고가 과대허위표시·광고로 규제받는 사례 발생

기능성 식품에 관한 정의와 명칭은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며 국내 법률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능성 축산물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도의 미흡으로 국내의 기능성을 가지는 축산물은 외국에서 수입된 기능성 축산물과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축산식품의 경우, 일반 축산가공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하는 법률 조항이 없어, 기능성 축산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과대·허위표시 및 광고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능성축산식품의 소비확대와 기업의 경영확대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축산식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기능성을 표방하는 축산식품(유제품, 계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제품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물에 있어서는 유용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능성을 표방하는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나 축산농가의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수입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 ◆ FTA등 국제무역 환경 변화로 인한 해외 기능성 축산물의 수입 증가
- ◆ 수입 기능성 축산물과 기능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의 제약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국내 제품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제고

국내 축산물가공업체들은 그동안 다양한 기능성 축산물을 개발해놓고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으며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다가 과

대광고로 규제받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FTA 등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로 선진외국의 기능성 축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제도에 의한 규제는 수입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기능성 표시 유형으로는 ①건강강조표시 ②구조/기능강조표시 ③영양소함량표시가 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 축산물은 보건기능식품 내의 특정보건용식품에 포함되며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의학적·영양학적으로 인정이 된 경우 질병위험 감소표시가 허가된다. 이와 같이 국외 축산물의 경우 다양한 표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수입 기능성 축산물에 비해 국내 축산물이 기능성이 떨어지지 않고 품질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는 국내 제품은 소비자에게 국내 기능성 축산물은 품질 및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 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의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기준규격 및 법령을 분석한 후 국내의 실정에 부합되는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활성화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능성 축산물의 국내외 법규 제도 및 표시·광고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기능성 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업체 및 축산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거짓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여 권익을 보호하기를 기대한다.

1.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국내 기능성 축산물 관련 연구 현황

2002-2011년간 우리나라의 한국축산식품학회지에 발표된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논문의 기능성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발표된 논문은 구체적으로 기능성 축산물과 기능성 가공축산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능성 축산물은 특수 기능성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에 급여하는 방식과 제품에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국내 기능성 축산물 연구에 사용된 기능물질(2002-2011)

형태	축종/제품	기능물질
사료급여	소	비타민 E, 면실, 무화과 발효물, 점토 광물질, 잣나무, 옥수수, 보리, 활성탄, 마늘대사일리지, 황토, 비타민A, 옷나무 분말, 죽초액, 유기셀레늄 강화버섯, 썩
	돼지	라이신, 산조인, 인삼 부산물, 토코페롤, 바이오 세라믹(약돌), 감껍질분말, 잠분, 머루주박, 인진썩, 오가피 및 마늘, 감귤피, 어유, 썩펠렛, 셀레늄, 비타민E, 산삼배양액, 활성탄, 한방부산물, 미강추출 식이섬유, 호맥사일리지, <i>Bacillus subtilis</i> , 보리, 들국화분말, 발효 대두, 포도박 추출물, 페퍼민트 분말
	닭	정어리유, 한약 부산물, 어유, 게르마늄, 루테인, 양파, 꽃감부산물, 썩분말, 어유, 리놀레인산(CLA), 피타민, 엄나무, 발효과일박, 로즈마리, 마늘부산물
	계란	Conjugated Linoleic acid(CLA), 케일, 명일엽, 대두, 인진썩,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혼합추출물, 오가피추출액
가공식품에 첨가	육가공품	빵잎 분말, 자몽종자추출물, 옷 추출물, 인삼분말, 키토산, 토마토, 감마오리자놀, 인삼추출물, 녹차추출물, 김치 분말, 울금 추출물, 복분자 추출물, 단감 분말, 복합 한약재 추출물, 올리브유, 미강 식이섬유, 락토페린, 누에분말, 표고버섯가루, 포도씨유, 타피오카 전분, 도토리 및 녹두 가루, 마늘즙, 양파즙, 붉은 양배추, 마늘종 추출물, 사포닌, 울피가루, 조릿대 잎 추출물, 레드비트, 흑마늘, 연잎 분말, 솔잎 추출물, 강황, 썩, 홍삼 추출물, 다시마 분말, 백련 잎 추출물, 미역취 잎과 줄기 분말, 치자 추출물, 적소두 단백질, 호박잎 추출물
	유가공품	구기자, 지골피, 오미자 추출물, 가루 녹차, 홍삼 추출물, 오디 추출물, 클로렐라, 더덕 추출물, 가시오가피 추출물, 밀감 농축액, 마늘즙, 차가버섯 추출물, 마분말

기능성 축산물의 연구특징을 살펴보면 사료에 첨가한 성분이 단일성분을 가진 첨가물이 아니라 잣나무, 옻나무, 어성초, 감귤피 등 지역 특산물이거나 한약재, 농산물, 식물성 부산물 등이 많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한 다가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리놀레인산(CLA), 셀레늄 등을 급여하거나 첨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가공식품에 직접 첨가하는 시험은 사료급여를 통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전통양념이나 기능성을 가진 식물 추출물을 첨가하였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후에 원료육과 가공제품에서 주로 품질검사를 하였고 지방산 조성과 산화억제 효과를 확인한 것이 고작이다. 아직까지 기능성 투여육의 성분 이행 여부나 인간 건강의 증진 측면에서 학문적 검증은 미비한 편이다. 그리고 실제 산업화로 연결되어 성공한 사례가 낮아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고, 설령 산업화가 되었다더라도 기능성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되었다는 징후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고기의 위생과 안전,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고기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어서 메스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 유기축산과 같은 가축관리 전환방법을 이용하여 건강 기능성육을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능성 축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는 사료를 통한 기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가공제품에 직접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이 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기의 가격이 비싸고 원료자체가 고급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성육보다는 품질과 이미지를 강조한 브랜드 축산물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측면(기능성)보다는 위생, 안전,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농민들이 경험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 고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시험을 통했다 하더라도 기능성육의 검증결과가 미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능성을 강조하는 축산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 국외 관련 기술개발의 현황

서양은 전통적으로 육제품을 비롯한 축산물을 많이 소비해 왔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2~3배 이상 섭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적육(쇠고기, 돼지고기) 보다는 지방이 적게 들어있고 불포화지방산이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백육(닭고기)을 찾고 있으며, 또한 기능성육(Functional meat)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건강에 유익한 고기(Healthier meat)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 축산

물에 대한 산업체나 학계의 관심은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그 주요 관심사는 지방이다. 식육에서 지방 총량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산 조성에서 불포화지방산의 증가와 ω -6/ ω -3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고기의 지방산 구성비를 변형시키기 위해 사료를 통해 불포화 지방산이나 리놀렌산(CLA) 등을 활용하거나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방목과 목초를 급여하는 연구 또한 수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기의 색깔과 지방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타민 E와 셀레늄의 급여에 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기능성육과 건강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기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연구, 리놀렌산(CLA)을 통한 인간의 건강(비만, 암, 동맥경화, 당뇨, 관절염, 심장병)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연구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기능성 연구대상 물질수가 적으며, 선정된 물질도 단일 물질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녹차나 로즈마리 등과 같이 식물성 기능물질도 일부 이용하지만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세계식육학회(ICoMST)에서 1999년부터 2007년간 발표된 건강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보면 기능성육에 관한 제목은 없다. 대신 고기와 건강, 품질과 영양, 동물복지와 환경, 소비자의 육구라는 제목에서 건강 기능성육을 소개하고 있다. 기능성육과 관련하여 비타민 E와 지방조성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고, 동물복지 사양에 의한 육조성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2-2011년간 세계식품과학회지(J. Food Science)에 발표된 기능성 육제품의 기능 물질을 보면 천연항산화물질, 불포화지방산, 기능성 식물과 곡류 등이 있지만 논문 수는 많지 않다(표 2). 서구에서는 천연 향신료 중에서 항산화력이 뛰어난 로즈마리를 가공육에 첨가한 시험을 비교적 많이 한 바 있지만, 적극적인 기능성 육제품에 대한 연구흐름은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기능성 물질을 가공육에 첨가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으며, CLA가 기능성육으로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 세계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축산물에 이용된 기능물질(2002-2011)

첨가 형태	축종/제품	기능성분
가공식품에 첨가	육가공품	키토산, 토마토, 녹차추출물, 올리브유, 카라기난(Kappa-Carrageenan), 토코페롤 (Tocoperol), 씨트러스(Citrus Fiber), 베타 글루칸(Barley β -Glucan), 유 미네랄(Milk Mineral), 막 단백질(Plasma Protein), 키토산(Chitosan), 허브(Rosemary), 귀리(Oat Bran), 겨 식이섬유(Pea Fiber), DHA와 EPA 등의 지방산, 리놀렌산(Conjugated Linoleic Acid), 콩 두부(Soy Tofu Powder Organosulfur Compounds) 아몬드 껍질 분말(Almond skin powder) 포도씨 추출물(Grape seed extract), 계란 노른자 단백질(Egg yolk protein), WPC(whey protein concentrate), whey, 레시틴(lecithin), 이소플라본 (isoflavone)
	유가공품	α -Tocopherol, Omega-3 Oils, 리놀렌산(Conjugated Linoleic Acid), ARA, DHA 와 EPA 등의 지방산, 칼슘, 쌀녹말, 콜라겐(collagen), 리놀렌산(Conjugated Linoleic Acid), DHA 와 ARA, Prebiotics, olein oil-free fat, 레시틴(lecithin), 이소플라본 (isoflavone)
생육에 첨가	소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껍질 분말(Almond skin powder), 마늘(Garlic)
생육 및 기능성물질의 추출 이용	닭고기 및 계란	포도씨 추출물(Grape seed extract), 계란 노른자 단백질(Egg yolk protein)

1) 미국

1-1) 축산물 브랜드 생산·유통현황

엑셀(Excel)사

엑셀(Excel)사는 미국의 거대 농기업인 카길(Cargil)의 자회사로, 쇠고기 패커(packer)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이고, 돼지고기 패커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의 본부는 캔자스 주의 위치타(Wichita)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 브랜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신선 포장육과 가공육을 유통하고 있다.

엑셀사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쇠고기의 경우 약 24%에 달한다. 특히 일본 수출을 겨냥해 한 개의 돼지고기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특별한 목적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북서부지역의 소매체인점인 'Shaw'에 진열·판매 목적으로 그라운드 비프(ground beef)를 생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조지아 주에 위치한 'Kroger'에 납품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엑셀사의 대부분의 가공육은 '엑셀(Excel)'이라는 라벨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브랜드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식품서비스 배분업자에게 유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브래스카(Nebraska)주에 소재한 공장은 'Craker Barrel'이라는 레스토랑에 납품할 목적으로 완전 요리된 로스트비프(roast beef)를 생산하고 있고, 아칸사(Arkansas)주에 위치한 공장은 아웃백(Outback)과 데니스(Denny's)에 납품을 목적으로 스테이크를 생산하고 동시에 월마트(Walmart)의 'Sam's Warehouse' 점포와 'Sonic drive-ins', 'Dairy Queen', 'Applebees', 'Arby's' 등을 위해 스테이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공장은 (California) 아웃백(Outback)에 납품하기 위해 스테이크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

어드밴스 식품사(Advance Food Company)

어드밴스 식품사(Advance Food Company)는 5개정도의 가공공장, 1개의 배분센터, 1,400여명의 종업원을 가지는 신진기업으로, 주로 중량이나 형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마리네이드(식초 및 포도주에 향료를 넣은 양념)에 절이는 식의 반죽하고 바르는 식의 가공을 통해 또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들 가공품의 75%정도는 조리식품으로 모든 식품이 냉동식품이다. 판매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95백만 파운드, 1999년도 110백만 파운드, 2000년도 135백만 파운드, 그리고 2001년도에 165백만 파운드의 실적을 올렸다. 식품서비스의 경우, 이 회사는 조리의 간편성과 품질의 균일성(크기 등)을 강조하고 있고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소매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축종별로는 판매의 50%정도가 쇠고기, 30% 닭고기, 나머지 10%가 각각 칠면조와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이 회사의 성장 주요인은 관계개선, 제품개발, 배분체계 개발에 있다. 제품의 라벨은 식품배분업자(food distributor)에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 'Sysco', 'US Food Service', 'Alliant'가 있다. 회사의 강점은 브랜드보다는 제품 컨셉(concept)에 두고 있고, 소비자와의 관계발전, 식품서비스와 소매활동에 또한 있다. 이와 관련한 제품개발 사례를 보면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조리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즉 영양섭취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의 원료뿐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최고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조리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완전조리식품 생산라인에 적용하여 식품에 내재된 질병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가열하여 먹을 수 있는 제품개발로 소비자의 노동비용을 감소, 즉 간편한 완전 조리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조리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과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 크기와 저렴한 가격전략으로 남은 음식물의 양을 줄이면서 식품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노력으로 회사의 제품 컨셉을 구축해가고 있다 (제품의 예: Country Fried Steak Southern Style, Glazed Teriyaki Chicken Breast, Super Rib Pork Pattie 등).

원료육은 주로 가축시장(spot market)에서 구매하고 있고, 일부는 일주나 몇 달의 선물계약에 의해 구매하고 있다. 해당 산업 내에서는 엑셀사와 합작사업(joint venture)을 하고 있고 소매사업의 일부는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서비스사업은 일부 캐나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어드밴스 사의 주력은 공급업자와 분배업자에 대한 서비스이고, 향후 제품의 균일성과 식품안전성 등과 같은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가의 축산가공 식품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1-2) 미국의 州 브랜드화(State Branding) 프로그램

미국의 州 브랜드화(State Branding)의 역사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모양을 제대로 갖춘 프로그램들은 1980년 초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 역사적 배경으로는 첫째, 1980년대 초 공급과잉으로부터 발생된 농업분야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둘째,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정책과 각종 연방정부 주체의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州(State)단위의 정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州정부가 주별 농산물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州정부 브랜드화는 주로 각 주의 농정국(Department of agriculture)이 담당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California州) 및 워싱턴(Washington州)과 같이 州정부가 아닌 생산자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대개 州정부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참여 농가나 식품 가공업자들로부터는 등록비와 州정부 투자에 비례한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인 투자액은 각 州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작게는 연간 5만 달러로부터 많게는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州도 있다. 여기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州브랜드(State Branding)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뉴저지 州의 'Jersey Fresh' 프로그램과, 규모는 작지만 가장 최근에 시작한 아리조나 州의 'Arizona Grown'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ersey Fresh'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fresh) 뉴저지산 청과물을 널리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정부 농무성은 이를 위하여 일정 품질기준을 통과한 청과물에 대하여 'Jersey Fresh' 로고를 발부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뉴저지 州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근의 필라델피아 州, 뉴욕 州, 델라웨어 州 및 버지니아 州까지 확대하여 제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Jersey Fresh' 프로그램은 각종 옥외 간판, 라디오, TV 등을 이용한 광고와 특별촉진활동을 통해 뉴저지산 청과물의 신선도(Freshness)를 강조하고 있다. 촉진 프로그램으로는 농산물 산지시장(Farmers' market), trade show 및 각종 요리대회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discount coupon) 및 'Jersey Fresh'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 포스터, 쇼핑백, 앞치마 등을 배부하고 있다. 1983년에 시작된 'Jersey Fresh' 브랜드는 첫해에 35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Bennett(1995)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뉴저지 州 소비자의 약 9%만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꾸준한 州정부의 노력으로 4년 후에는 소비자 인지도를 38%까지 증대시켰으며, 1994년 현재 연 예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성공적인 州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Arizona Grown' 이라는 브랜드는 생산자단체에 의해 1993년에 시작되었으나, 1997년 애리조나 州정부가 州단위 프로그램으로 법제화함으로써 州정부가 관장하는 州브랜드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브랜드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1997년의 경우, 州의 재정에서 연간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고, 참여농가와 식품가공업자들이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2만 5천 달러를 추가 조성하여 총 5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산은 이후 더욱 증가하여 이듬해부터는 州재정에서 5만 달러와 민간기업에서 5만 달러를 각각 조성하여 1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초창기에 'Arizona Grown'은 청과물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품목을 확대하여 낙농, 양계, 비육우, 양봉, 피스타치오, 피클 등이 포함되었다. 브랜드에 대한 홍보 활동예산이 다른 州에 비해 작은 관계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보다는 'Arizona Grown' 로고가 부착된 각종 포스터, 현수막 그리고 광고문을 각 도매점과 소매점에 배포·전시하는 방법이다. 애리조나 州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브랜드 홍보 방법으로는 전담 대변인을 고용하여 각종 뉴스 쇼나 기자회견 등에서 주정부의 브랜드화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Arizona Grown'은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 내의 소비자들에게 애리조나 산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하는데 나름대로의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나, Patterson, Olofsson,

Richards, and Sass (1999)의 프로그램 평가에 의하면 'Arizona Grown'은 제품 차별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며, 수요촉진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프로그램의 예산이 적은 관계로 광고나 판촉활동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케팅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광고나 판촉활동이 효과를 보려면 일정금액 이상(threshold)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1-3) 미국의 유제품시장

미국 내에서는 저지방(Lowfat)과 유기농(Organic) 제품이 웰빙 유제품의 대표적 형태로서, 저지방 유제품은 웰빙유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7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체중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유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우유 내 칼슘만 섭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원유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젓소에게 성장호르몬을 투여, 인공색소, 안정제, 농축제, 제조제, 살충제, 보존제 등이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기농 유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 방편으로 미국 스타벅스사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인공 성장호르몬 등이 함유된 우유의 공급을 중단하한 바 있다. 미국 내 유기농 유제품의 가격은 일반 유제품에 비해 대체적으로 35-105% 가량 비싼데, 그 이유는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루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기능성분의 추가 및 특정 성분을 강화시킨 유제품의 개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로 비타민과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첨가한 제품으로 그 종류는 다양하지는 않았다. 칼슘을 강화시킨 우유와 유제품은 뼈를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에 키 성장의 도움 뿐 아니라 골다공증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뒷받침이 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일반우유 또는 가공유에 비타민 D를 강화시킨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기능성이 강화된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Probiotic) 효과를 가진 제품을 손꼽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이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거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가진 유용한 미생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Stonyfield Farm의 “All Natural”과 Dan Active사의 “소화력 향상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유제품이 있고, 다국적 기업인 Danone사는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제품 출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저지방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Lactobacillus GG*)를 출시하였다. 그 외에도,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을 호소하는 소비자를 위한 소화가 잘되는 락토프리(無) 유제품도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에서만 3,000만 명 이상이 유당불내증(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흔한 증상)으로 우유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 소재를 첨가하여 유제품의 기능적 특성을 강화시켰다.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공액리놀렌산(CLA)은 항암 및 항당뇨 효과 뿐 아니라 안전하게 지방성분을 줄이

고 건강한 신체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기능성 소재로 저지방 유제품에 첨가되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콜라겐과 비타민C가 포함된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케피어 요구르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변비예방과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항비만과 항염증의 효과와 체내의 칼슘흡수를 높여준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농(Danone)에서 여러 가지 케피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비타민과 칼슘을 첨가하여 기능성을 더욱더 높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분유에서는 신생아의 성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칼슘, Iron, 각종 비타민을 강화시킨 조제분유가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를 첨가하는 조제분유가 늘고 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Bifidobacteria*로 대표되는 장내 유용세균의 증식을 촉진시킴으로서 발생하며, 임상실험으로 장 및 간기능개선, 혈압의 강화, 항암작용, 골다공증의 예방 등 많은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조제분유 뿐 아니라 요구르트, 가공우유, 강화우유에 첨가하여 유제품의 기능성을 높이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EPA와 DHA 및 omega3가 심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에 따라 유제품과 육제품, 알가공품에 첨가하려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육제품의 추세는 Iron Copper와 Vitamin B와 같은 영양성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가능한 콜레스테롤과 칼로리를 낮춘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알가공품의 경우는 닭에게 영양가 높은 사료를 섭취하여 유용한 omega의 함량을 높이는 제품들과 같이 높은 영양가치가 있는 계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 밖에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몸에 유해한 항생제나 방부제, 호르몬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계란과 제품별로 등급을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2) 일본

2-1) 일본의 축산물 브랜드 현황

일본 화우의 경우, 전국화우등록협회가 1995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 브랜드 3개를 포함하여 216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OO소 및 OO돼지」라고 하는 축산물브랜드의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고 조사단체에 따라 축산물브랜드의 수도 다르다. 전국화우등록협회조사에 따르면 화우브랜드가 216개이지만 중앙축산회가 조사·작성한 「지역의 산지브랜드화 식육·계란 일람(1995년)」에 의하면 149개, 일본식육 소비종합센터가 발행하는 브랜드식육핸드북(1999년)에 의하면 139개의 브랜드가 있다. 돼지의 경우는 중앙축산회조사(1995년)에 의하면 156개, 브랜드식육핸드북(2000년)에 의하면 179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런데 위의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것이므로 행정지휘 아래에 있지 않은, 상업성이 강한 개인브랜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입각한 조사자료로써 1997년과 1998년에 전국식육공정거래협회가 실시한 전국조사, 즉 판매점이 실제로 판매한 적이 있는 브랜드, 소비자가 점포에서 본 적이 있는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화우의 경우 240~303개의 브랜드가 있고 돼지의 경우 291~375개의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식육소비종합센터 「산지 등 표시 牛肉표시실태조사보고서」, 「산지 등 표시 豚肉 표시 실태조사보고서」).

표 3. 일본의 축산물브랜드 실태

조사자료	조사년도	화우	돼지
전국화우등록협회	1995년	216	
중앙축산회조사	1995년	149	156
브랜드식육 핸드북	1999년 및 2000년	139	179
점포표시조사	1997년 및 1998년	240-303	291-375

이 가운데, 소의 경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3가지 있는데 이는 고베쇠고기, 마쓰사카쇠고기, 오우미쇠고기로 모두 밑소는 다지마송아지이다. 최근에는 마에자와 쇠고기와 히다쇠고기가 신흥브랜드로 부상하였으며 히다쇠고기 역시 효고현에서 도입한 다지마우 계통의 종모우인 안복을 도입하여 성공한 경우이다.

2-2) 일본의 기능성 유제품 현황

일본 건강·영양 식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의 규모는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계속 증가해 왔지만, 그 이후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그 규모가 5175

억엔으로 2007년에 비하여 76% 정도로 감소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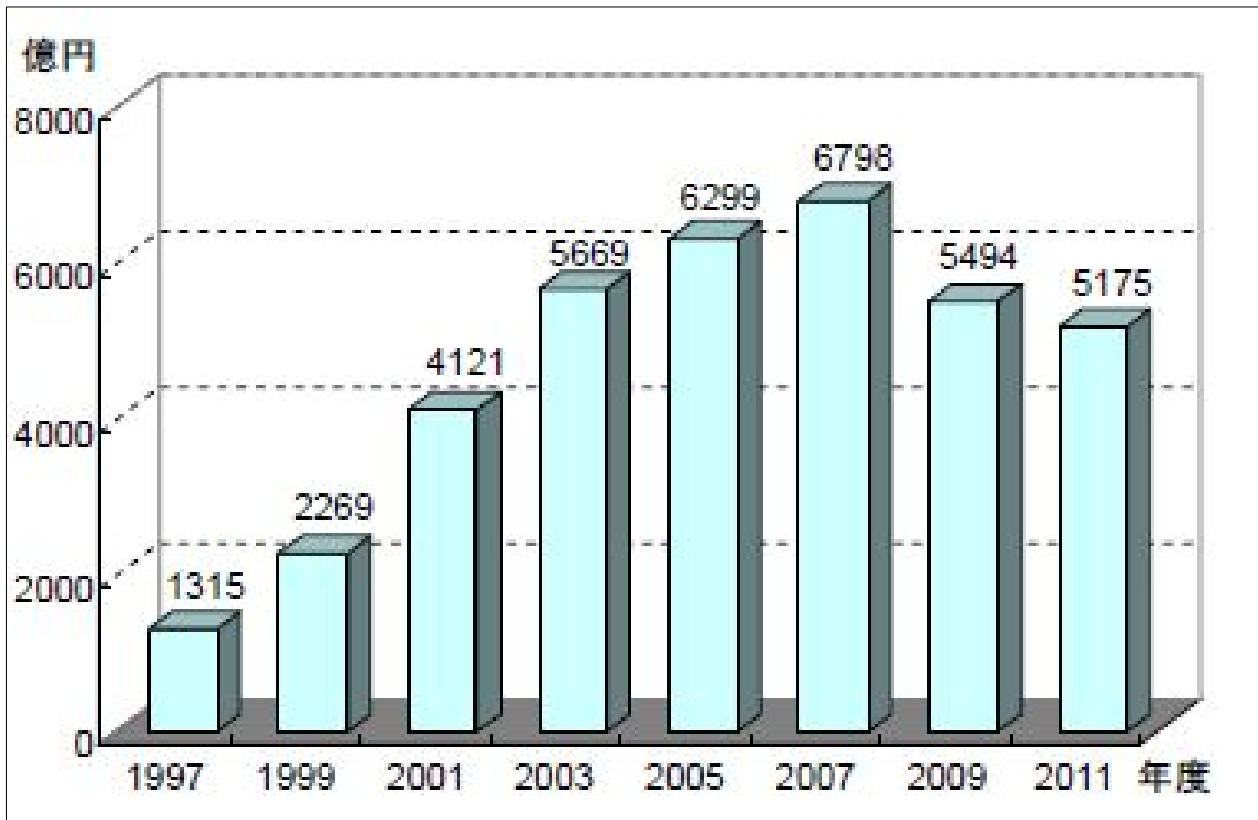


그림 2.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 규모 추이

위장의 상태를 조절하는 식품에 속하는 유산균 관련 품목은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올리고당 관련 품목도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식이섬유 관련 품목은 규격기준형 허가 품목 수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밀들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출시 항목의 감소 영향으로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승인된 특정보건용식품은 총 1023건이며 그 중 유제품의 허가 품목은 103건이다.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규모 중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48.3%에서 2011년 5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유럽

3-1) 유럽의 기능성 축산물 및 식육제품 현황

기능성 식품이라는 용어는 1980년 일본에서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1년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를 처음 탄생시켰다. 또한 서구에서도 일부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healthier'라는 개념이 더 강하여 어떤 심신기능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영양적으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식품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기능성 식품의 요건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천연성분에서 유래된 식품(캡슐, 정제, 분말은 제외)이어야 하며,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일부분으로서 소비가 되어야 하며, 생물학적 방어체계(biological defense mechanisms)의 강화, 특별한 질병(specific disease)의 예방 및 치료, 물리적·정신적 건강상태(condition)의 조절, 노화(aging process)의 지연과 같은 특수 작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간주하는 기능성 축산물의 형태 및 종류는 기능성 물질이 강화된 사료를 급여하여 육질 및 영양적인 조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즉, 비타민 E를 급여하여 육색 개선 및 저장성 증진 효과, 기존축종에 비해 20배의 DHA 함유, 7배의 비타민 E 함유, 6배의 ω -3 지방산 함유)과 가축의 생산관리나 환경을 조절하여 건강한 가축, 고품질의 육질을 갖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최근 급속히 관심을 끌고 있는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기능성 식육제품의 형태 및 종류는 가장 일반적인 기능성 식육제품으로서 특정 기능성 성분을 임의적으로 원료육에 직접 첨가하여 기능성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즉, 레몬알베도를 첨가하여 아질산염을 감소시킨 가열소시지, 식이섬유를 첨가하여 지방을 대체한 저지방/저칼로리 sausage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사료에 해바라기유(sunflower oil), 카놀라유(canola oil) 등의 식물성유를 급여하여 육 자체의 지방산 조성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원료육으로 사용하여 식육제품의 지방산 조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식육제품 제조 시에 포화도가 높은 동물성 지방 대신에 불포화도가 높은 fish oil이나 vegetable oil을 일부 대체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나트륨 염 대신에 대체염을 첨가하여 기능성을 개선시키는 방법(KCl, MgCl)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기능성 축산물에 대해 별도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다. 단지, 일부 영양소가 강화된 육과 계란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미비한 편이다. Nutrition claim이나 health claim과 같은 세부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도 상당히 적다.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health claim을 적용하는 것도 드물다. 식육제품의 경우 식이섬유를 활용한 저지방/저칼로리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허브류 등 천연항산화제를 활용한 제품, honey, 견과류, curry 등을 첨가한 제품 등이 일부 유통되고 있다. 그 외에 유제품 및 알 가공품류에

서 특정성분 함량이 높은 축산물들이 각각의 기능성을 광고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조사된 제품들은 비교적 특정성분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이 잘 표기되어 있었으며, 특히 질병명의 언급 등 건강 강조를 허위·과대 표현한 제품은 드문 것으로 들어났다.

유럽의 경우, 기능성육이라는 말보다는 건강에 유익한 고기(healthier meat)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육에 대한 산업체나 학계의 관심은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그 주요 관심사는 지방이다. 식육에서 지방 총량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산 조성에서 불포화지방산을 증가시키거나 ω -6/ ω -3의 7:12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일부는 고기의 지방산 구성비를 변형시키기 위해 사료를 통해 불포화지방산이나 CLA 등을 활용하거나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방목과 목초를 급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기의 색깔과 지방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타민 E와 셀레늄의 급여에 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기능성 고기와 건강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기와 건강, 품질과 영양, 동물복지와 환경, 소비자의 육구라는 제목으로 건강 기능성 육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연구가 되어 오거나 동물복지를 통해 강화된 육을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지표물질은 vitamin류(vitamin A, B group, C, E), fatty acid류(conjugated linoleic acid, ω -3 fatty acid(DHA, EPA), essential fatty acid(linoleic acid, linolenic acid, arachidonic acid), oleic acid), 다량 mineral(Ca, Mg), 미량 mineral(Fe, I, Se, Cu, Zn, Co), protein/fat ratio, amino acid profile 등이 있다.

또한 기능성 식육제품의 기능물질을 보면 천연항산화 물질, 불포화지방산, 기능성 식물과 곡류 등이 있지만 대부분 연구에 그치고 있다. 항산화력이 뛰어난 rosemary 등의 허브류를 가공육에 첨가한 시험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기능성 식육제품에 대한 연구흐름은 없으며 일부 천연 식이섬유 등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 결과, 식육제품 별로 강화된 지표 물질은 다음과 같다. Ham 및 sausage류는 kappa-carrageenan, tocopherol, citrus fiber, barley α -glucan, milk mineral, plasma, protein, chitosan 등이 활용되고 있고, 패티류는 rosemary, oat bran, pea fiber, DHA, EPA, CLA, soy tofu powder, organosulfur compounds 등이 활용되었고, 그 밖에 histidine dipeptide, L-carnitine, 생리활성 peptide(ACE inhibitors: 고혈압촉진 효소 저해제), amino acid profile, fat content, protein content, calorie 등이 지표물질로 활용이 되고 있다.

3-2) 유럽의 기능성 유제품 시장동향

Global Consumer Trends에 의하면 약 75%의 유럽인들이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기능성식품 시장은 매년 6-7%씩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유럽의 식품 회사들은 심장건강, 체중조절과 함께 면역, 장 건강, 일반적인 웰빙 식품 등 다양한 기능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소비자의 17%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역학적 data를 반영하여 혈 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sterol 또는 sterol ester가 강화된 제품이 최근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니레버(Unilever)사가 기존 출시된 스프레드제품인 Flora pro-active의 성공에 힘입어 우유와 요구르트 형태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농(Danone)은 sterol ester를 포함한 발효음료를 유럽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영국에서 Probiotic 요구르트와 음료가 기능성 식품의 주요 성장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Tesco)사에서는 *Lactobacillus acidophilus*와 inulin이 함유된 probiotic 음료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주로 영양보조식품 형태의 제품보다는 식품의 본태를 유지하면서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의 형태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능성 식품 시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슬레·스노우사는 probiotic 요구르트 “네슬레 LC1 요구르트 플렌”을 판매하고 있으며 작년년부터 LC1을 이용한 유산균 음료를 시판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품은 스위스의 로잔느 연구소에서 각종 생리활성, 안정성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사람의 장관과 질내 균총의 개선 가능성이나 고령자의 감염성 예방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졌다. 다농사의 probiotic 요구르트 “다농비오 BE80균”은 세계1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맛은 물론이고 소화관내에서 고농도의 비피더스균이 생존하는 것을 확인하여 “변비에 고민하는 소비자가 먹기 좋은 요구르트”로 인식시키고 있다.

다니스코사는 1998년에 Wisby사를 매수한 이래 probiotics 제품개발에 주력해 왔다. probiotics로는 내산성능과 내담즙산능이 높은 *Bifidobacterium species* 420균주를 사용한다. 요구르트와 여러 가지 식품중에 이균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다니스코사는 HOWARUTM 브랜드와 함께 프리미엄 probiotics로서 두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하여는 여러 개의 면역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와 더불어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브랜드로 보급시킴으로써 시장의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고급 슈퍼마켓에서 HOWARU 브랜드 유제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식품군을 판매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관인 NIZO food research는 probiotic bacteria, 포만감 유도물질 탐색, 유제품 중 공액리놀레산 증가, 칼슘에 의한 장내감염 예방, 유지방에 의한 장건강 증진에 관하여 꾸준한 연구를 해왔다.

유럽도 미국과 같이 고품질의 유기농 원료들이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유제품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유기농 우유에 비타민과 같은 미네랄 뿐 아니라 omega를 첨가하여 기능성을 높인 유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계란 또한 유기농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암탉에게 기능적인 소재가 함유된 사료를 섭취시킨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비타민이나 omega가 함유되어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 효능에 관련된 연구 자료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파악이 된다.

특수하게 우유에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 고품질 유청단백질(whey protein) 혹은 유청단백질 가수분해물(whey protein hydrolysis)을 첨가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신체가 강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하여 소비자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구 분 연 구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목표달성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관련 법규 및 제도 조사														100
국외(미국, 일본, 유럽) 관련 법규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														100
협업체 구성 및 협의														100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제안														100
최종보고서 작성														100

제2장 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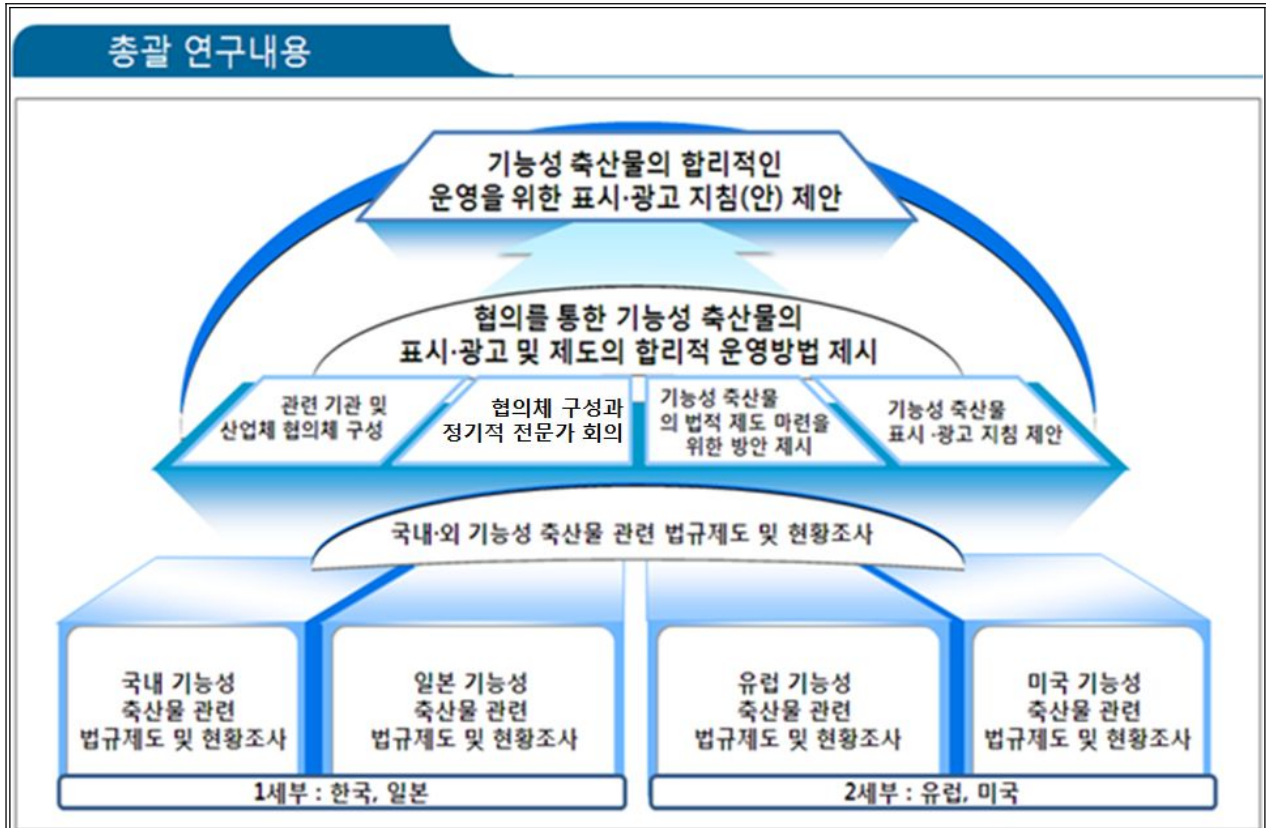


그림 3. 기능성 축산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1 세부>

▷ 국내외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관련 제도 및 법규 조사

- 국내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규제도 및 현황조사
- 국내 기능성 축산물 관련 표시·광고 실태 및 신청절차 조사
- 일본의 기능성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관련 실태 및 법규 조사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축산물의 기능성 관련 부처조사 및 담당 업무 파악
- 협의체 구성 후 구성원간의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 실시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제도의 세부운영 방안 제안

- 부처 협의 도출사항 반영 및 최종 개선 방안 제시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지침(안) 제안

<2 세부>

▷ 국외 기능성 식품 및 축산물 관련 제도 및 법규조사

- 유럽의 기능성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관련 실태 및 법규 조사
- 미국의 기능성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관련 실태 및 법규 조사

▷ 국내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관련 부처 및 협의체 구성

- 법률 간 적용 범위 등 현 문제점 및 관련 협의안 제시
- 협의체 구성 후 구성원간의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 실시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제도의 세부운영 방안 제안

- 국외 기능성 축산물 관련 제도 및 법규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적용안 마련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지침(안) 제안

2.2 연구 방법



그림 4. 기능성 축산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방법

가) 기초 조사 및 연구 추진 방안 결정

- 기초 조사
- 연구진의 추진 전략 수립
-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 및 자문을 통한 합리적 결과 도출
- 세부 추진 방법 및 일정 결정

나) 자료 조사

- 문헌조사: 국내·외 전문서적, 논문, 보고서 등
- 방문조사
- 인터넷 자료 조사

다) 국내 산업계 현황 조사

- 국내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세부운영 현황 조사
-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 조사 및 방문조사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라) 국외 산업계 현황 조사

- 기능성 식품 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기능성 축산식품의 규격기준 및 관리제도 현황 조사
- 문헌조사 및 인터넷 자료 조사
- 국내 현황에 맞는 기능성 식품 및 축산물 제도 적용 및 개선점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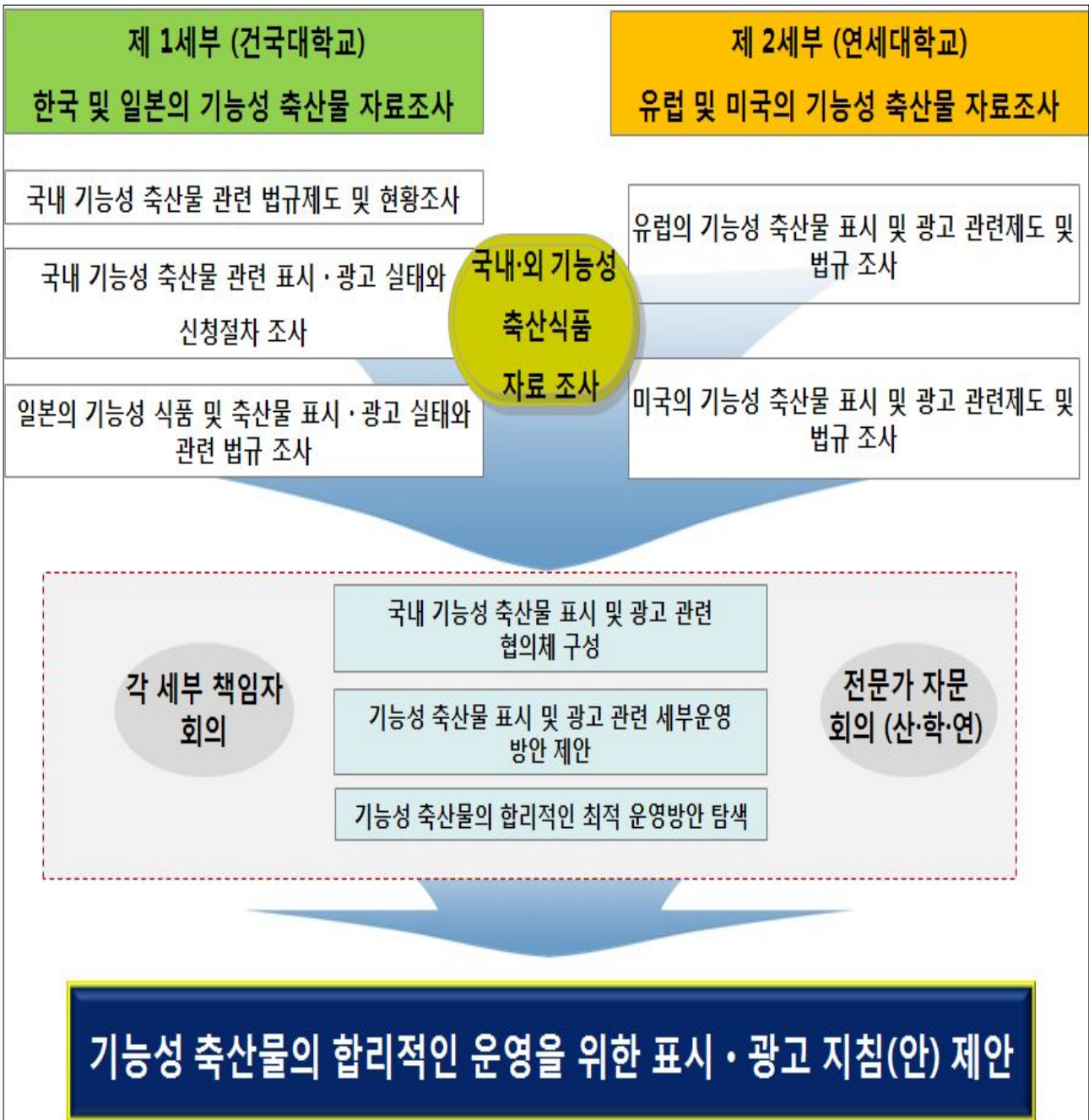
마) 국내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관련 부처 및 협의체 구성

-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공업협회, 육가공협회, 유가공협회, 육계협회, 양계협회,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처 및 협회 파악
- 부처 및 협회 실무자와 생산자/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 구성
-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 실시
- 각 부처 및 협회 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구 수행

바) 조사 결과의 비교·분석

- 자료 정리 기준 설정
- 조사 결과의 분류 및 정리
- 조사 내용 구체화 및 결과 도출

2.3 연구 추진 체계



제3장 연구개발과제 결과

3.1 국내외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규제도 및 현황조사

3.1.1 국내의 기능성 축산물 관련제도의 현황 분석

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0년도부터 논의하였고, 2002년 8월 26일 공포하여 2003년 8월 26일 시행하게 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2003년 12월 18일에, 동법 시행규칙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란 식약청에서 동물시험, 인체시험 등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제품을 심사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이런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일컫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원료로서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1)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우리나라는 2003년 8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식품에 한하여 건강기능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셀·분말·과립·액상·환 등 의약품 형태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9월 22일부터 제형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일반식품의 형태를 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구분	정의
영양소기능표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표시
기타기능표시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기능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소 기능 외의 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 표시	전체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된다는 표시

2)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재된 원료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 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없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영양소에는 비타민 A, β -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₆, 엽산, 비타민 B₁₂, 비오틴,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 요오드, 망간, 폴리브덴, 칼륨, 크롬,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 지방산이 있다(표 5). 그리고 기능성 원료에는 인삼, 홍삼,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클로렐라 등의 터핀류와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의 페놀류가 있으며 ω -3 지방산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레시틴, 스쿠알렌,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매실추출물 등의 지방산 및 지질류와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식이섬유, 알로에 겔,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등의 당 및 탄수화물류가 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등의 발효미생물류와 대두단백 등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로얄젤리, 버섯, 식물추출물발효, 자라, 효모, 효소, 화분 등의 일반원료가 있다(표 6-11).

표 5. 영양소성분의 규격 및 일일섭취량

성분	일일섭취량 (최소-최대)	성분	일일섭취량 (최소-최대)	규격
비타민 A	210-1,000 $\mu\text{g RE}^{1)}$	칼슘	210-800 mg	표시량의 80-150%
β -카로틴	유(Oil)상:0.42-7 mg, 분말/단순추출:1.26 mg이상	마그네슘	66-250 mg	표시량의 80-150%
비타민 D	1.5-10 g	철	4.5-15 mg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E	3-400 mg α -TE ²⁾	아연	3.6-12 mg	표시량의 80-150%
비타민 K	16.5-1000 μg	구리	0.45-7 mg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B ₁	0.3-100 mg	셀레늄	15-135 μg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B ₂	0.36-40 mg	요오드	22.5-150 μg	표시량의 80-180%

나이아신	니코틴산: 3.9-23 mg, 니코틴아미드: 3.9-670 mg	망간	0.6-3.5 mg	표시량의 80-150%
판토텐산	1.5-200 mg	폴리브텐	7.5-230 µg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B ₆	0.45-67 mg	칼륨	1.05-3.7 g	표시량의 80-150%
엽산	75-400 µg	크롬	0.015-9 mg	표시량의 80-150%
비타민 B ₁₂	0.3-2,000 µg	식이섬유	5.0 g 이상	표시량의 80-180%
비오틴	9-900 µg	단백질	12.0 g 이상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C	30-1,000 mg	필수지방산	리놀레산: 4.0g이상, 리놀렌산: 0.6 g이상	표시량의 80-150%

¹⁾ Retinol equivalents

²⁾ *a*-Tocopherol equivalents

표 6. 기능성성분의 규격 및 일일섭취량 - 터핀류

성분	일일섭취량	규격	
인삼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으로서 3-80 mg	Rg1과 Rb1의 합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50%
		세균수	1 mL 당 3,000 이하 (농축액에 한함)
홍삼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Rg1과 Rb1의 합으로서 3-80 mg 혈소관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 Rg1과 Rb1의 합으로서 2.4-23 mg	Rg1과 Rb1의 합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50%
		세균수	1 mL 당 3,000 이하 (농축액에 한함)
엽록소 함유 식물	총 엽록소로서 8-150 mg	총 엽록소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총페오포르바이드	1,000 mg/kg 이하

스피루리나/클로렐라	총 엽록소로서 8-150 mg	총 엽록소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중금속	납: 3.0 mg/kg 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 총 수은: 0.5 mg/kg 이하
		총페오포르바이드	1,000 mm/kg 이하

표 7. 기능성성분의 규격 및 일일섭취량 - 페놀류

성분	일일섭취량	규격	
녹차추출물	카테킨으로서 0.3-1 g	카테킨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카페인	50,000 mg/kg 이하
알로에전잎	무수바바로인으로서 20-30 mg	안트라퀴논계 화합물 (무수바바로인)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프로폴리스추출물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 mg	총 플라보노이드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파라(p)-쿠마르산	확인되어야 함
		계피산	
		납	5.0 mg/kg 이하
		디에틸렌글리콜	불검출

표 8. 기능성성분의 규격 및 일일섭취량 - 지방산 및 오일류

성분	일일섭취량	규격	
ω-3 지방산 함유유지	DHA와 EPA의 합으로서 0.5-2 g	EPA와 DHA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잔류용매	5.0 mg/kg 이하 (헥산을 사용한 경우)
		중금속	납: 3.0 mg/kg 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 총 수은: 0.5 mg/kg 이하
감마리놀렌산 함유유지	감마리놀렌산으로서 240-300 mg	감마 리놀렌산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잔류용매	5.0 mg/kg 이하 (헥산을 사용한 경우)
레스틴	1.2-18 g	인지질 (아세톤불용물)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콜레스테롤	10,000 mg/kg 이하 (난황레스틴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용매	5.0 mg/kg 이하 (헥산을 사용한 경우)
스쿠알렌	스쿠알렌으로서 10 g	스쿠알렌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식물스테롤로서 0.8-3 g	식물스테롤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알콕시글리세롤로서 0.6-2.7 mg	알콕시글리세롤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바틸알콜	확인되어야 함
옥타코사놀 함유유지	옥타코사놀로서 10 mg	옥타코사놀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잔류용매	5.0 mg/kg 이하 (헥산을 사용한 경우)
매실추출물	구연산으로서 1-1.3 g	구연산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시안화합물	불검출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염산염 또는 황산염으로서 1.5-2 g	글루코사민염산 염 또는 황산염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잔류용매	5.0 mg/kg 이하 (헥산을 사용한 경우)
		중금속	납: 5.0 mg/kg 이하 카드뮴: 1.5 mg/kg 이하 총 수은: 1.0 mg/kg 이하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 코사민으로서 0.5-1 g	N-아세틸글루코 사민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뮤코다당 · 단백질	뮤코다당 · 단백 으로서 1.2-1.5 g	뮤코다당 · 단백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단백질과 콘드로 이친황산 비율	1.0 이상 9.0 미만
		살모넬라	음성
식이섬유: 구아검/ 구아검분 해물	구아검 또는 이의 가수분해물 로서 콜레스테롤 조절: 15-27 g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15-27 g 배변활동 원활: 5-27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글루코만 난 (곤약, 곤약만난)	글루코만난으로 서 콜레스테롤 조절: 4-17 g 배변활동 원활: 4-17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이상
식이섬유: 귀리	귀리식이섬유로 서 콜레스테롤 조절: 3 g 이상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0.8-8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이상
식이섬유: 난소화성 말토덱스 트린	귀리식이섬유로 서 콜레스테롤 조절: 3 g 이상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0.8-8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이상
		포도당당량 (D.E.)	8.0-18.0 (원료성 제품에 한함)

표 9. 기능성성분의 규격 및 일일섭취량 - 당 및 탄수화물류

식이섬유: 대두 식이섬유	대두 식이섬유로서 콜레스테롤 조절: 20-25 g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10-25 g 배변활동 원활: 20-60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목이버섯	목이식이섬유로서 12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밀 식이섬유	밀식이섬유로서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6-12 g 배변활동 원활: 36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보리 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로서 20-25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아카시아검)	아라비아검으로서 25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옥수수겨	옥수수겨식이섬유로서 10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이눌린/치커 리 추출물	이눌린으로서 콜레스테롤 조절: 9-10 g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9-10 g 배변활동 원활: 8-20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차전자피	차전자피로서 콜레스테롤 개선: 7 g 이상 배변활동 원활 : 5-25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폴리텍스트 로스	폴리텍스트로스로서 7-12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호로파종자	호로파종자식이섬유로서 12-50 g	식이섬유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알로에 겔	총 다당체 함량으로서 피부건강에 도움: 100-420 mg	총다당체	기타원료에서 유래하는 다당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장 건강에 도움: 110-125 mg 면역력 증진에 도움: 100-290 mg	안트라 퀴논계 화합물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0.005% 이하 (알로에 베라 겔 100% 기준, 원료의 농축배수 및 알로에 겔 환산 함량에 따라 환산 적용함)
영지버섯 자실체추출 물	베타글루칸으로서 24-42 mg	베타글루 칸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키토산/키토 올리고당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의 합으로서 1.2-4.5 g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 고당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중금속	납: 3.0 mg/kg 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 총 수은: 1.0 mm/kg 이하
프락토 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8 g	프락토 올리고당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납	1.0 mg/kg 이하

표 10. 기능성성분의 규격 및 일일섭취량 - 프로바이오틱스

성 분	일일섭취량	규 격	
프로바이오틱스	108-1010 CFU	프로바이오틱 스	표시량 이상
홍국	총 모나콜린 K로서 4-8 mg	총 모나콜린 K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활성형 모나콜린 K	확인되어야 함
		시트리닌	0.05 mg/kg 이하

표 11. 기능성성분의 규격 및 일일섭취량 - 아미노산 및 단백질

성분	일일섭취량	규격	
대두단백	대두단백으로서 15 g 이상	총 모나콜린 K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최종 제품: 표시량의 80-120%
		다이드제인	확인되어야 함
		제니스테인	확인되어야 함

3)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절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1) 기능성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신고증(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증) 또는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신청 받은 심의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제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심의의 지연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재심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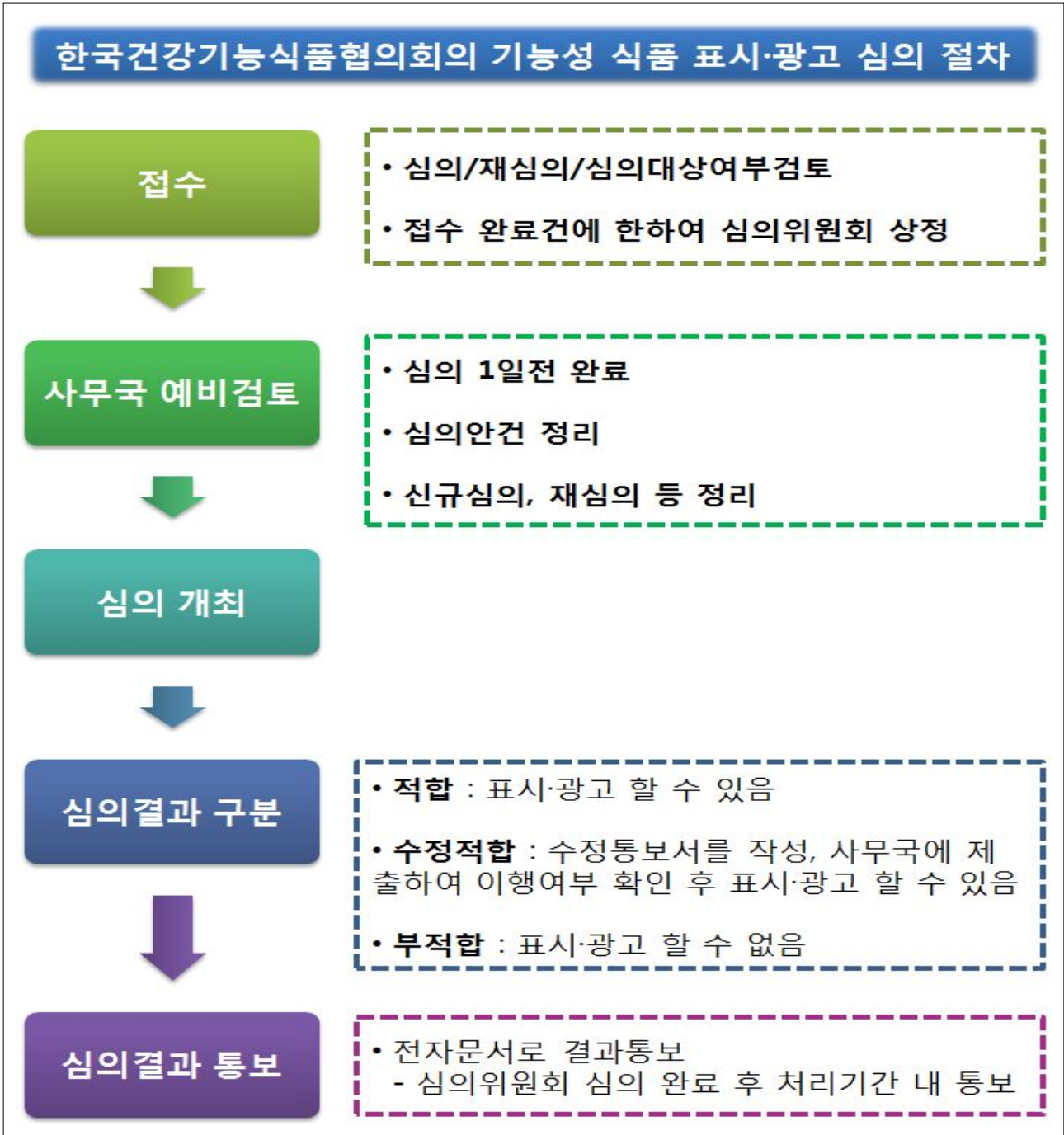


그림 5. 기능성 식품 표시·광고 심의 절차

4)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

건강기능식품이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영양학적 효과 이상으로 특별히 신체의 기능이나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건강에 기여하는 식품”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보건사회부가 현미효소 등 효소제품을 ‘영양등식품’으로 허가하면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 ‘영양등식품’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으로 재분류되었으며 1990년 11월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적용범위 및 성분규격이 설정되었다. 그 후 꾸준하게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에

속하는 식품종이 추가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다. 고시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83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다. 개별인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개별인정원료는 141종이다. 개별인정 원료는 1)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경우, 2)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으로 나뉘며 생리활성기능의 경우 기능성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표 12).

표 12.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 등급

기능성 등급		기능성 내용	기능성 표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	○○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1등급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에 도움을 줌
	2등급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영양소기능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예)칼슘은 뼈, 치아형성에 필요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기억력 개선, 혈행개선, 간건강 등 총 24개의 기능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별인정 원료 141종의 생리활성기능 별 분류는 (표 13)와 같으며,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 등 영양소 별 기능성에 대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장하는 일일섭취량만큼 섭취하도록 하고 기준규격에 맞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와 동일한 기능성을 표시하게 되며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액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압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체지방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면역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인지능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 ‘치아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등이 있다(표 15).

표 13. 개별인정형 원료의 생리활성 기능별 분류

번호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건수
1	간 건강	간 건강에 도움	밀크씨슬추출물, 복분자추출분말, 브로콜리스프라우트분말, 표고버섯균사체,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5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헛개나무병과추출물	2
2	갱년기 여성건강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석류추출/농축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3
3	관절/ 뼈 건강	관절 건강에 도움	가시오갈피등복합추출물, 로즈힙분말, 전칠삼추출물등복합물, 지방산복합물 FAC, 차조기등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 호프추출물, 황금추출물등복합물, N-아세틸글루코사민, Dimethylsulfone (MSM),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11
		뼈 건강에 도움	흑효모배양액분말, 대두이소플라본	2
4	기억력 개선	기억력 개선에 도움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은행잎추출물, 인삼가시오갈피등혼합추출물, 원지추출분말, 테아닌등복합추출물, 피브로인추출물 BF-7, 홍삼농축액	7
5	긴장 완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	유단백가수분해물, L-테아닌	2

6	눈건강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	빌베리추출물, 헤마토코쿠스추출물	1
		눈 건강에 도움	루테인복합물	1
7	면역기능	면역력 증진에 도움	금사상황버섯, 당귀 혼합 추출물,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표고버섯균사체), L-글루타민, 게란티바이오-Ge효모	6 (7)
		과민면역반응 완화에 도움	구아바잎추출물등복합물, 피카오프레토분말등복합물, 다래추출물, 소엽추출물, <i>Enterococcus faecalis</i>	5
8	위건강/ 소화기능 개선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	아티초크추출물	1
9	배뇨기능	방광에 의한 배뇨 기능 개선에 도움	호박씨 추출물 등 복합물	1
10	요로건강	요로 건강에 도움	크랜베리추출물	1
11	운동수행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	마카젤라틴화분말, 크레아틴	2
	능력향상	지구력 증진에 도움	동충하초발효추출물	1
12	인지능력 향상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	참당귀주정추출분말, 대두 포스파티딜세린	2
13	장 건강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	갈락토올리고당, 구아검가수분해물, 대두 올리고당, 라피노스, 락추로스파우더, 밀 전분유래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이소말토올리고당, 액상프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커피만노올리고당분말, 프로바이오틱스	12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	(프로바이오틱스)	(1)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목이버섯, 분말한천, (액상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2 (4)

14	전립선 건강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복합물	2
15	체지방 감소	체지방 감소에 도움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대두배아열수추출물등복합물, 레몬밤추출물 혼합분말, 녹차추출물, 중쇄지방산함유 유지,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디글리세라이드 함유유지,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깻잎추출물,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Green Mate Extract EFLA920	12
16	치아건강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	자일리톨	1
17	칼슘흡수	칼슘 흡수에 도움	액상프락토올리고당, 폴리감마글루탐산	2
18	콜레스테롤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대나무잎추출물, 보리베타글루칸추출물, 보이차추출물, 사탕수수왁스알코올, (스피루리나), 식물스타놀에스테르, 아미닌, 알로에추출물, 알로에복합추출물, 창녕양파추출액, 홍국쌀	10 (11)
19	피로개선	피로 개선에 도움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 홍경천추출물	2
20	피부건강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홍삼·사상자산수유복합추출물	2
		피부 보습에 도움	N-아세틸글루코사민), 곤약감자추출물, 쌀겨추출물, AP 콜라겐 효소 분해 펩타이드, 지초추출분말	4 (5)
21	항산화	항산화에 도움	(대나무잎추출물), 메론추출물, (복분자추출물), 비즈왁스알코올, 코엔자임 Q10, 토마토추출물, 포도종자추출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홍삼농축액	7 (9)

22	혈당저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구아바잎추출물, 동결건조누에분말, 마주정추출물, 바나바추출물, 솔잎 증류농축액, 알부민, 인삼가수분해농축액, 지각상엽 추출 혼합물, Nopal추출물, 쥐눈이콩 펩타이드 복합물, 콩발효추출물, 타가토스, 탈지달맞이꽃종자추출물, 피니틀, 홍경천등복합 추출물, 실크단백질 효소가수분해물	16
23	혈압저하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	가쓰오부시올리고펩타이드, 연어펩타이드, 올리브잎추출물, 정어리펩타이드, 카제인 가수분해물, 해태올리고펩티드, L-글루타민산 유래 GABA함유 분말, 나토균배양 분말	8
24	혈중중성지방개선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	글로빈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나무잎추출물), (디글리세라이드), 정제 오징어유, 정어리정제어유, DHA 농축유지	5 (7)
25	혈행개선	혈행개선에 도움	나토배양물, (은행잎 추출물), (정어리정제어유), (정제오징어유),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DHA 농축유지	2 (6)
총 계				141 (155)*

*기능성별 각각 인정된 원료는 총 141개이나, 동일한 원료에 2개 이상 기능성이 인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합산함

표 14. 영양소 기능성 표시 기준 운용 사례

번호	영양소	기능성 내용	표현 불허용 사례
1	비타민 A	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 치아 건강에 도움 ② 결핍증 : 야맹증, 각막 건조증, 실명

2	베타 카로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3	비타민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핍증 : 구루병(어린이), 골다공증(성인) 유발 ② 뼈의 석회화가 부실해짐 ③ 골절이 잘됨 ④ 다리, 척추, 가슴의 기형
4	비타민 E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핍증 : 적혈구 용혈, 빈혈, 뇌출혈 ② 노화방지
5	비타민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② 뼈의 구성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핍증 : 내출혈
6	비타민 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핍증 : 각기병, 말초신경염, 부종, 신경이상증세 ② 심장과 신경조직을 정상화 시킴
7	비타민 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결핍증 : 결막염, 광공포증, 설염, 지루성 피부염증상
8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핍증 : 펠라그라, 신경장애, 설사, 피부염 ② 신경전달계에 관여
9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결핍증 : 피부염, 불면증, 탈모, 저혈당 등
10	비타민 B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핍증 : 피로, 우울증, 불면증, 피부질환 ② 신경전달계의 올바른 기능을 도움 ③ 면역체 생성 저하, 거대적혈구성 빈혈
11	엽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결핍증 : 빈혈, 장관이상

		③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2	비타민 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 결핍증 : 빈혈, 신경장애 ② 악성빈혈에 유효성분 ③ 불규칙한 심장박동, 기타 심장 장애
13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 결핍증 : 피부염, 모발 손상, 식욕 감퇴, 탈모증, 결막염, 피로, 근육통, 우울증
14	비타민 C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 결핍증 : 괴혈병, 저항성저하, 치주염, 출혈 ② 상처치유의 지연 ③ 잇몸이 붓고 출혈 ④ 치아가 약해짐, 근육 쇠약
15	칼슘	①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③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④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① 결핍증 : 구루병, 골다공증, 성장위축 ② 정상적인 심장박동, 근육의 수축 조절, 신경흥분과 자극 전달에 관여 ③ 체액의 산성화 방지 ④ 각종 신체 불균형 개선 ⑤ 관절염 및 뼈질환 예방
16	마그네슘	①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① 결핍증 : 성장저해, 행동장애, 식욕부진 ② 신경, 심장기능 도움을 줌
17	철	①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②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 갑상선 이상의 예방 및 치료
18	아연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 결핍증 : 우울증, 호흡 이상, 뼈의 연화 ② 면역작용, 심장질환 예방 ③ 노화 예방
19	구리	①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②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 결핍증 : 적혈구 합성이 저하되어 빈혈 발생 ② 심장 순환계결합조직을 정상으로 유지
20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또는 셀렌)	필요	
21	요오드	①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②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③ 신경발달에 필요	① 적혈구와 인슐린의 구성성분
22	망간	① 뼈 형성에 필요 ②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③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23	몰리브덴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화에 필요	
24	칼륨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결핍증 : 빈혈, 면역력 저하
25	크롬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① 혈당치 낮춰줌, 당뇨병 환자에 필요 ②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줌
26	식이섬유	식이섬유 보충	① 변비의 치료 및 예방 ② 암의 치료 및 억제 ③ 당뇨병 예방 및 치료 ④ 비만의 근원적 치료, 일시에 10kg 이상 다이어트
27	단백질	①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②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③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④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⑤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① 질병 저항력 증진 ② 혈액순환 촉진, 혈행개선 ③ 혈압 상승 억제 ④ 인체의 면역력 증진 ⑤ 피부 탄력 유지, 피부 노화, 잔주름 방지 ⑥ 스테미너 작용
28	필수 지방산	필수지방산의 보충	

표 15. 개별인정형 원료별 기능성 내용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1	정어리 펩타이드	생리활성기능 II 혈압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펩타이드 ②바릴티로신	바릴티로신으로서 250-400µg
2	자일리톨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충치균 성장을 저해시켜 충치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	10~25g으로 3회 정도 나누어 섭취
3	테아닌등 복합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①L-theanine ②GABA	씨제이테아닌등 복합추출물로서 210mg
4	알로에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베타시토스테롤	알로에추출물 분 말로서 210~4200mg (베타시토스테롤로서 8.4~168mg)
5	알로에 복합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①베타시토스테롤 ②모나콜린K	알로에추출물 분 말로서 420~1680mg
6	참당귀 주정추출분말	생리활성기능 II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Decursinol ②Decursin	참당귀주정추출분말로서 800mg
7	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키토산 ②(+)-allo-hydroxy citric acid lactone ③L-carnitine	씨제이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로서 2079mg
8	초록입 홍합추출오일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EPA ②DHA ③DPA ④α-linolenic acid	초록입홍합추출오일 복합물로서 620mg
9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난소화성 ②말토덱스트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으로서 15~30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10	유니벡스 대나무잎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혈중 콜레스테롤 및 지질 조절,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Tricin ②p-coumaric acid	-
11	목이버섯 분말	생리활성기능 II 목이버섯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목이버섯 ②식이섬유	4 g/회 (식이섬유로서 1.8g/회 이상) 1일 3회, 식전에 섭취
12	바나바주정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코로소린산 ②(corosolic acid)	바나바주정추출물로서 50~100mg
13	황금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Baicalin ②Catechin	황금 등 복합물로서 1100mg
14	피브로인 추출물 BF-7	생리활성기능 II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티로신(Tyrosine) ②알라닌(Alanine)	피브로인추출물BF-7으로서 200~400mg
15	Dimethyl sulfone (MSM)	생리활성기능 II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디메틸설폰 ②틸설폰닐메탄	Dimethylsulfone(MSM)으로서 1.5~2.0g
16	스피루리나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리활성기능 III 면역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엽록소	[콜레스테롤 개선] 스피루리나원말로서4~8g [면역기능] 총 엽록소로서 62~72mg
17	포도종자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인체의 항산화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총 플라바놀 ②프로안토시아닌	포도종자추출물로서 200~300mg
18	이소말토올리고당	생리활성기능 II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으로서 8~15g
19	공액 리놀레산	생리활성기능 II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LA (Conjugated Linoleic acid)	C L A 로 서 1.4~4.2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20	피니톨	생리활성기능 III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니톨	피니톨로서 1.2g
21	대두 올리고당	생리활성기능 II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Stachyose ②Raffinose	스타키오스와 라피노오스의 합으로서 2~3g
22	홍경천등 복합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혈당조절을 신경 쓰시는 분들의 공복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① 홍경천추출물 (살리드로사이드) ② 계피추출물(계피산))	홍경천 등 복 합추출물로서 900mg
23	프랑스해안 송겹질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시아니딘	하루 섭취량은 피크노제놀로 서100~300mg
24	사탕수수 왁스알코올	생리활성기능 I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①1-tetracosanol, ②1-hexacosanol, ③1-heptacosanol, ④1-octacosanol, ⑤1-nonacosanol, ⑥1-triacontanol, ⑦1-dotriacontanol , ⑧1-tetratriacontanol	하루섭취량은 폴리코사놀-사 탕수수 왁스 알코올로서 5~20mg
25	표고버섯 균사체	생리활성기능 II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일일섭취량 [표고버섯균사 체 AHCC] 1.8~3.6g [HK표고버섯 균사체]350mg
26	대두 포스 파티딜세린	생리활성기능 II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L- α -diacyl phosphatidylserine	하루섭취량은 대두 포스파티 딜세린으로서 300m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27	로즈힙분말	생리활성기능 II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alacto lipid Hyperoside	하루 섭취량은 로즈힙분말로서 5g
28	구아바잎	생리활성기능 II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Ellagic acid ②EGCG ③Gallic acid	하루 섭취량은 지표성분인 총 폴리페놀로서 123.5mg
29	식물스타놀 에스테르	생리활성기능 I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토스타놀(sitostanol) 캄페스타(campestanol)	하루 섭취량은 식물스타놀 에스테르로서 3.4g
30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분말	생리활성기능 III Phase II 효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포라판	-
31	가쓰오부시 올리고 펩타이드	생리활성기능 II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Leu-Lys-Pro-Asn-Met	가쓰오부시 올리고 펩타이드로서 1.5g
32	헛개나무과 병추출분말	생리활성기능 II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Dihydromyricetin ②Quercetin	헛개나무과 병추출분말로서 2,460 mg
33	라피노스	생리활성기능 II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피노스 (Raffinose)	라피노스로서 3~5g
34	당귀혼합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Nodakenin ②Paeoniflorin ③Chlorogenic acid	당귀등혼합추출물로서 6~12g
35	카제인 가수분해물	생리활성기능 II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Phe-Phe-Val-Ala-Pro-Phe-Pro-Glu-Val-Phe-Gly-Lys	카제인 가수분해물로서 4,000mg
36	Green Mate Extract EFLA920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Chlorogenic acid ②Triterpenesaponin	Green Mate Extract EFLA 920로서 3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37	FK-23 (<i>Enterococcus faecalis</i>)	생리활성기능 III 비특이적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i>Enterococcus faecalis</i> FK-23 사균체 ②Cis-박센산	-
38	복분자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항산화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엘라그산	-
	복분자 추출분말	생리활성기능 II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llagic acid	복분자 추출분말로서 3,150mg
39	올리브잎 주정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건강한 혈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Oleuropein	올리브잎주정 추출물 EFLA943로서 500~1000mg
40	탈지달맞이꽃종자주정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총 폴리페놀 ②Penta-O-galloyl beta-D-glucose	탈지달맞이꽃종자주정추출물로서 200~300mg
41	코엔자임 Q10	생리활성기능 II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Q10	코엔자임Q10으로서 90~100mg
42	L-글루타민	생리활성기능 II 과도한 운동 후의 L-글루타민 보충은 신체 저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글루타민	L-글루타민으로서3~5g
43	Saw Palmetto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르산 (Lauric acid)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로서 320mg
44	아마인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알파 리놀렌산 ②총 식이섬유 ③리그난	아마인으로서 50g
45	빌베리 주정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안토시아노사이드	빌베리주정추출물로서 240mg
46	솔잎증류 농축액	생리활성기능 II 건강한 혈당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3-carene ②Limonene ③terpinolene	솔잎증류농축액으로서 1350m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47	콩밭효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 α-Glucosidase 활성 억제능(IC50) ② Tris(2-Ami no-2-(hydroxyme t hyl)-1,3-propaned iol)	콩밭효추출물 로서900mg
48	크레아틴	생리활성기능 II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reatine monohydrate	크레아틴으로 서3g
49	루테인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 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 을 줍니다.	루테인	루테인으로서 10~20mg
50	정어리 정제어유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DHA ②EPA	DHA + EPA 함으로서 500~2000 mg/ 일
51	소나무껍질 추출물 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햇볕 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시아니딘	엘지(LG) 소나 무껍질추출물 등 복합물로서 1130mg
52	헤마토 코쿠스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으 로서4~12mg
53	분말한천	생리활성기능 II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식이섬유	분말한천으로 서 2~5g
54	차조기등 복합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 Puerarin ② Scopoletin ③ Apigenin	차조기등 복합 추출물 (KD-28)로서 2.4g
55	게란 티바이오 -Ge효모	생리활성기능 III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 니다.	게르마늄	게란티 바이오 -Ge효모로서 1.2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56	유단백 가수분해물	생리활성기능 II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αS1-casein (f91-100) (Tyr1-Leu-Gly-Tyr-Leu-Glu-Gln-Leu-Leu-Arg10)	유단백가수분해물로서 150mg
57	참밀알부민	생리활성기능 II 급격한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19-알부민	참밀알부민으로서 1.2~1.5g
58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HCA	총 (-)-HCA로서 750~2,800 g
59	대두 배아열수 추출물 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 Daidzin + Glycitin + Genistin ② L-carnitine	대두배아열수 추출물로서 700mg
60	메론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OD	SOD 활성으로서 500 ~1,000IU
61	N-아세틸 글루코사민	생리활성기능 II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1.0g
62	히알루론산 나트륨	생리활성기능 II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으로서 120mg
63	바이오-이소플라본	생리활성기능 II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다이드진(daidzin) ②제니스틴(Genistin) ③글리시틴(Glycitin)	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 24~25.5mg
64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로서 1.8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65	대두 이소플라본	생리활성기능 II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다이드진(daidzin) ②제니스틴(Genistin) ③글리시틴(Glycitin)	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 25~27mg
66	<i>Enterococcus faecalis</i> FK-23 효소 및 가열처리 분말	생리활성기능 II 꽃가루에 의해 나타나는 코막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Vaccenic acid	<i>Enterococcus faecalis</i> FK-23 효소 및 가열처리 분말(LFK)로서 1g
67	금사 상황버섯	생리활성기능 II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금사상황버섯추출물로서 3.3g
68	L-테아닌	생리활성기능 II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L-테아닌	L-테아닌으로서 200~250mg
69	DHA 농축 유지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중성지질,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DHA ②DHA+EPA	[DHA 농축유지] 0.9~5.3g [DHA +EPA] 0.5~2.0g
70	토마토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ll-trans)-lycopene	(all-trans)-lycopene로서 5.7~15mg
71	홍삼, 사상자, 산수유 복합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햇볕 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Rb1 ②Rg3 ③Torilin ④Loganin	홍삼, 사상자, 산수유 복합추출물로서 3g
72	액상프락토 올리고당	생리활성기능 II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 (1-케이스토스(GF2)+니스토즈(GF3)+프락토피라노실니스토즈(GF4))	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8g
73	L-글루타 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	생리활성기능 II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마아미노부틸산(GABA)	GABA로서 20m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74	지방산 복합물 FAC (Fatty Acid Complex)	생리활성기능 II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yristoleic acid	지방산복합물 FAC 로서 1,248 mg
75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로르산(Lauric acid) ②β-sitosterol	[쏘팔메토 열 매 추출물 등 복합물] 705mg [쏘팔메토 추 출물] 320mg [네틀 추출물] 240mg
76	구아검 가수분해물	생리활성기능 II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아검가수분해물	구아검가수분 해물 로 서 7~21g
77	원지 추출분말	생리활성기능 II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MCA(Trimethox y cinnamic acid)	원지추출분말 로서 300mg
78	커피만노 올리고당 분말	생리활성기능 II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 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노올리고당 (mannobiose, mannotriose, mannotetraose, mannopentaose, mannohexaose)의 합	만노올리고당 으로서 1.0g
79	구아바잎 추출물 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폴리페놀	구아바잎추출 물 등 복합물 로서 800mg
80	보이차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allic acid	보이차 추출물 1 g
81	다래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Quinic acid ②Citric acid	다래추출물 (PG102)로서 2~2.5 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82	홍국쌀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총 모나콜린K ②활성형모나콜린K	총 모나콜린K로서 4~8 mg
83	중쇄지방산 함유유지	생리활성기능 II 다른 식용유와 비교하였을 때 체지방 증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카프릴산 (Caprylic acid) + 카프릭산(Capric acid)	일반 식용유 섭취방법과 동일
84	디글리세라이드 함유유지	생리활성기능 II 디글리세라이드(Diacylglyceride)를 함유하고 있어 다른 식용유와 비교하였을 때 식후 혈중 중성지방과 체지방 증가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디글리세라이드 (Diacylglyceride)	일반 식용유 섭취방법과 동일
85	밀크씨슬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리마린	Silymarin으로서 130 mg
86	호프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호프추출물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lpha acids, iso-alpha acids의 합	호프추출물 1~2 g
87	프로바이오틱스	생리활성기능 II 유익한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Streptococcus thermophilus</i> <i>Lactobacillus acidophilus</i> <i>Lactobacillus delbrueckii ssp. bulgaricus</i> <i>Lactobacillus casei</i> <i>Lactobacillus plantarum</i> <i>Bifidobacterium longum</i> <i>Bifidobacterium infantis</i> <i>Bifidobacterium breve</i>	108~ 3×10 ¹²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88	홍삼농축액	생리활성기능 II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Rb1+Rg1 ②Rg3(S)	Rg1 Rb1 으로 0.16~5.6mg
89	정제 오징어유	생리활성기능 II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DHA ②EPA	DHA+EPA 으 로 0.5~2g
90	Nopal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식이섬유로서 4.3g
91	락추로스 파우더	생리활성기능 II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락추로스 (Lactulose)	락추로스 분말로 650~3000 mg
92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스콜린 (forskolin)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500mg
93	폴리감마글루탐산	생리활성기능 II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감마글루탐산으로서 60~70mg
94	쌀겨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lucosylceramide	쌀겨추출물 10~34mg
95	동결건조 누에분말	생리활성기능 II 유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deoxynojirimycin	동결건조누에분말 2.7g
96	나토배양물	생리활성기능 II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브린용해 효소활성	HK나토배양물로서 133mg
97	리프리놀-초록입홍합 추출오일	생리활성기능 II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로서 200mg
98	보리베타글루칸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으로서 3~8g
99	홍경천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사빈(Rosavin)	홍경천추출물로서 200~600m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100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Ligustilide ② Eleutheroside E ③Ginsenoside Rg1과 Rb1의 합 ④ Baicalin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로서 5.2g
101	자일로올리고당	생리활성기능 II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일로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으로서 0.7~7.5g
102	갯잎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Ursolic acid	갯잎추출물 (PF501)로서 2.7g
103	크랜베리 분말	생리활성기능 II 요로의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안토시아니딘 (Proanthocyanidin ;PAC)	파크랜크랜베리 분말로서 500~1000 mg
104	해태올리고펩티드	생리활성기능 II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lanine-Lysine-Tyrosine-Serine-Tyrosine	해태올리고펩티드로서 1.6g
105	지초추출 분말	생리활성기능 II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소스펴산 (Lithospermic acid)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로서 200mg
106	비즈왁스 알코올	생리활성기능 II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1-tetracosanol(C24) ②1-hexacosanol(C26) ③1-octacosanol(C28) ④1-triacotanol(C30) ⑤1-dotriacotanol(C32) ⑥1-tetratriacontanol (C34)	비즈왁스알코올 (Bees Wax Alcohol)로서 50mg
107	연어 펩타이드	생리활성기능 II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le-Trp (Isoleucine-Tryptophan)	연어펩타이드로서 2g
108	아티초크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담즙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hlorogenic acid	아티초크추출물로서 1.92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109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Cinnamic acid ②Shanzhisidemet hylester ③Nodakenin	백수오, 속단, 당귀 열수추출 물로서 514mg
110	발효생성 아미노산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지구성 운동 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L-로이신(Leuci ne) ②L-이소로이신(Is oleucine) ③L-발린(Valine)	발효생성아미 노산 복합물로서 4.7~5.0g
111	은행잎 추출물 고시형 전환 (시행: 2013.01.01)	생리활성기능 II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보놀배당체 (Flavone glycoside) (Kaempferol, Quercetin, Isorhamnetin의 합)	은행잎추출물 로서 120mg
112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①레몬 밤 (rosmarinic acid) ②뽕나무잎(1-Deo xynojirimycin) ③인진쑥(6,7-Dim ethylesculetin)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로서 1380mg
113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생리활성기능 II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ly-Pro-Hyp	AP 콜라겐 효 소분해 펩타이 드로서 1000 ~ 1500 mg
114	석류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엘라그산(Ellagic acid)	석류추출물로 서 6.0g
	석류농축액			석류농축액으 로서 40ml
115	회화나무 열매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포리코사이드 (Sophoricoside)	회화나무열매 추출물로서 350mg
116	피카오 프레토 분말 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 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총폴리페놀 ②비타민 C ③클로로젠산 ④계피산	지각상엽 추출 혼합물로서 2.8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117	지각상엽 추출 혼합물	생리활성기능 II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나린진 (Naringin) ②아스트라갈린 (Astragalín)	지각상엽 추출 혼합물로서 2.8g
118	녹차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테킨(Catechin)	카테킨으로서 0.3 ~ 0.5g
119	창녕양파추 출액	생리활성기능 II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케르세틴(Querceti n)	창녕양파추출 액으로서150ml
120	크랜베리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요로에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 건 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안토시아노사이드 (Total Anthocyanosides)	크랜베리 추출 물 (Cran-Max)로 서 500mg
121	진칠삼 추출물 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진세노사이드Rb 1 (Ginsenoside Rb1) ②스타키오스(Stac hyose) ③엘레우테로사이 드E (Eleutheroside E)	진칠삼추출물 등 복합물로서 800mg
122	소엽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 다.	로즈마린산 (Rosmarinic acid)	-
123	L-카르니 틴 타르 트레이트	생리활성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L-카르니틴(L-car nitine)	L-카르니틴으 로서2g
124	쥐눈이콩 펩타이드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I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 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	①아르기닌(Argini ne) ②로이신(Leucine)	쥐눈이콩 펩타 이드 복합물로서 4.5 g
125	흑효모 배양액분말	생리활성기능 III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 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	베타글루칸 (β-Glucan)	흑효모배양액 분말로서 150mg
126	클로렐라	생리활성기능 II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 니다.	총 엽록소	총 엽록소로서 125m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127	녹차추출물 / 테아닌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I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카테킨 ②L-테아닌	녹차추출물/테아닌 복합물로서 1680mg
128	마카 젤라틴화 분말	생리활성기능 III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	벤질헥사데칸아미드 (n-benzyl-hexadecanamide)	마카 젤라틴화 분말로서 1.5~3.0g
129	밀전분유래 난소화성 말토 텍스트린	생리활성기능 II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밀전분유래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으로서 8~20g
130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	아데노신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로서 2.1~3.0g
131	인삼가수분 해농축액	생리활성기능 II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Rg1	인삼가수분해농축액으로서 960mg
132	글로빈 가수분해물	생리활성기능 II 식후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VVYP (Val-Val-Tyr-Pro)	글로빈 가수분해물로서 1g
133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마아미노부티르산 (γ-aminobutyric acid)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로서 1.5g
134	가시오갈피 등 복합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가시오갈피: 엘레우테로사이드 E (Eleutheroside E) ②중국당귀: 리구스틸라이드(Ligustilide) ③황금: 바이칼린(Baicalin)	가시오갈피 등 복합추출물로서 1.5g
135	갈락토 올리고당	생리활성기능 III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	갈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으로서 2.1~8.4g

번호	원료명	기능성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136	호박씨 추출물 등 복합물	생리활성기능 II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Polyphenol derivatives ②대두이소플라본 배당체의 합	호박씨 추출물 등 복합물로서 1g
137	타가토스	생리활성기능 II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D-tagatose	D-tagatose로서 5~7.5g
138	마주정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I 혈당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	Allantoin	마주정추출물로서 900mg
139	곤약감자 추출물	생리활성기능 II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lucosylceramide	Glucosylceramide로서 1.2 ~ 1.8mg
140	나토균 배양분말	생리활성기능 II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브린용해효소활성	나토균배양분말로서 100mg
141	실크단백질 효소가수분 해물	생리활성기능 III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	-	실크단백질 효소가수분해물로서 6g

나) 국내 기능성 축산물의 정의와 범위

1) 기능성 축산물의 정의 및 현황

세계적으로 그 국가의 경제수준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축산물의 소비를 증가시켰고 이러한 축산물 소비 증가는 곧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제는 과거에 배를 채우는 개념에서 벗어나 오히려 각종 성인병 및 비만등과 같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깊어져 음식에 대한 개념도 양적 소비 보다는 품질(quality)과 안전성(safety), 다양성(variety) 및 기능성(functionality)이 더 강조되는 소비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축산물의 이용은 보다 안전한 축산물, 보다 다양한 축산물, 보다 기능적인 축산물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무엇보다도 기능성이 가미된 또는 기능성이 함유된 축산물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능성 축산물(functional livestock product)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나 지금까지 이 용어가 사용되어 온 것들을 종합하여 정의 내리고 있는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성 축산물이란 축산물에 물리, 화학적 및 유전공학적 수단을 활용하여 축산물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안전성, 건강성, 품질과 같은 특정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킨 축산물을 의미한다.

기능성 축산물(functional livestock product)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식품의 3차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식품, 다시 말해서 건강증진, 유지 및 각종질병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우리나라의 기능성축산물 가운데 위에서 내린 정의에 걸 맞는 제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개는 정확한 잣대 없이 이 용어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축산식품의 건강기능 표시제의 법률체계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되었다. 축산물은 위와 같은 제도 하에 관리되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규는 축산물을 일반식품과 분리하여 별도로 법률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식품 중 기능성을 강조한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축산물의 경우 현재는 그 기능성을 인정, 관리 하는 법률체계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기능성을 주장하는 축산물을 관리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표시 및 광고 조항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내용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제1135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표시사항은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영양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기타표시 사항이며 영양성분의 경우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식육가공품 중 소시지류,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대상 성분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이다. 관련규정에 적합한 때에만 영양소의 함유 정도를 “무”, “저”, “고”, “함유” 또는 “덜”, “더”, “강화”, “첨가”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표 16).

표 16. 축산물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100g당 40kcal미만 또는 100ml당 20kcal미만일 때
	무	100ml당 4kcal미만일 때
지방	저	100g당 3g미만 또는 100ml당 1.5g미만일 때
	무	100g당 또는 100ml당 0.5g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100g당 1.5g미만 또는 100ml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일 때
	무	100g당 0.1g미만 또는 100ml당 0.1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무	100g당 0.5g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저	100g당 20mg미만 또는 100ml당 10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미만 또는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100g당 5mg미만 또는 100ml당 5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 또는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당류	무	100g당 또는 100ml당 0.5g미만일 때
나트륨	저	100g당 120mg미만일 때
	무	100g당 5mg미만일 때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3g이상 또는 100kcal당 1.5g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100g당 6g이상 또는 100kcal당 3g이상일 때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 100m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20%이상, 100m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 100m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이상, 100m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4) 기능성 축산물의 건강기능 표시제의 법률체계에 대한 분석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유용성 표시가 가능하나 기능성 유제품의 효능 표시는 관련 부처가 이원화 되어있어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어, 발효유 등 기능성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과대·허위표시 및 광고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제품의 소비확대와 기업의 경영확대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도 유제품의 기능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제품 소비확대를 통한 낙농 및 유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 7월 규제개혁 방안이 확정되어, “유용성” 표시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건강효과 표시 또한 가능한 상태이지만 그 기능성 물질의 특성이나 제조 목적 또는 용도에 맞게 유용성 표시를 조정하고 개선한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1.2 일본의 기능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법규 및 실태

가) 법률개요

일본은 1980년에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건 상 유용한 식품이 적절히 선택되도록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기하고 국민 영양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특정보건용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 FOSHU)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 후 1996년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어 왔던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의 제형규제가 완화되었고, 비타민이 1997년, 허브가 1998년, 미네랄이 1999년에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재평가」 및 상업적 용어로 표기되어 온 「영양보조식품에 대한 법제화」가 검토되고, 후생성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0년 3월에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성은 영양보조식품을 보건기능식품으로 재정립하여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법제화」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을 개정하고, 2001년 4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식품에 한하여 기능성표시가 인정되었고, 영양기능식품 제도가 신설되면서 영양기능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을 통틀어 「보건기능식품 제도」로 정비되었다.

보건기능식품제도는 기존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던 「건강식품」 중에서 유효성, 안전성, 품질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며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한 규격기준에 맞는 식품을 「보건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정부 허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식품의 목적, 기능 등의 차이에 따라 「특정보건용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과 「영양기능식품(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의 2가지로 분류된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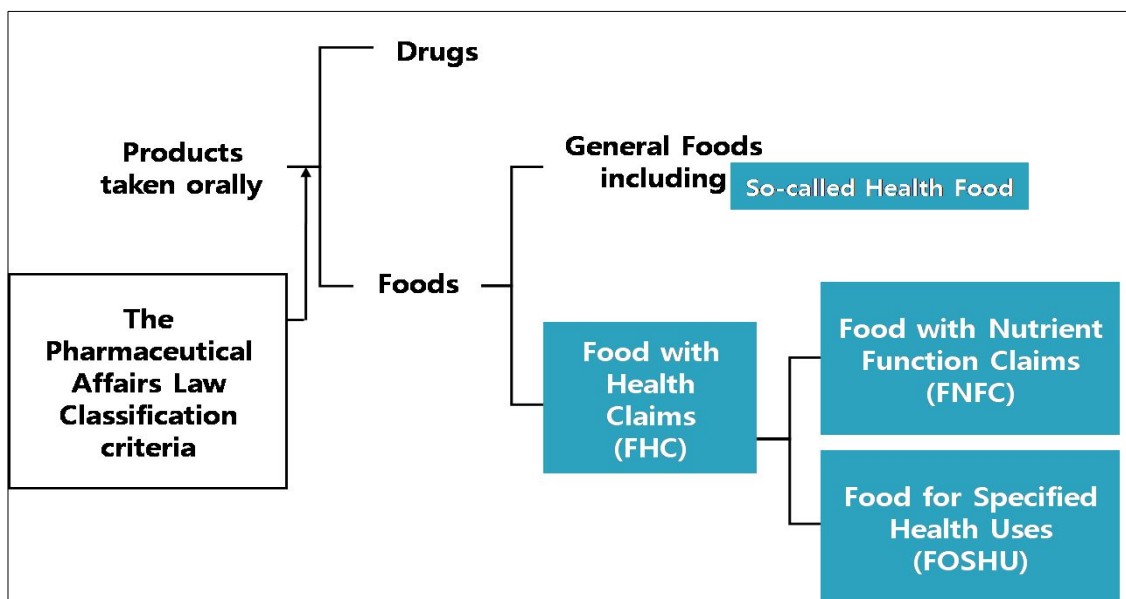


그림 6. 일본 식품법의 개요

특정보건용식품이란 「식생활에 있어서 특정 보건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 그 섭취에 의해 당해 보건의 목적이 기대되는 내용을 표시한 식품」으로,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이나 보건의 용도에 기여하는 식품을 말한다. 특정보건용식품제도는 1991년 7월 11일 「영양개선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후생성령 제41호)에 의거 도입된 표시허가·승인제도로 종래부터 영양개선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특별용도식품의 하나로서 정의되어 왔다. 2001년 4월 보건기능식품제도의 창설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후생노동성령 제43호)에 따라 새롭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 및 허가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생리적 기능이나 특정의 보건기능을 나타내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인정받은 후 제품에 허용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정보건용식품 중 관여성분과 질병위험 감소효과의 관계가 의학적·영양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질병위험 감소표시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허가된다. 현재 허가된 관여성분은 칼슘과 엽산 2종뿐이다.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은 이미 허가된 특정 보건용 식품과 같은 성분이면, 그 성분에 관한 제품의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 표시의 허가실적이 100건 이상이며, 최초의 승인으로부터 6년이 지났고, 그 허가 받은 기능성 성분이 이미 두 회사 이상의 생산업체에 의해 생산·판매되었을 경우 허가된다.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은 임상실험에 의한 기능성효과의 입증은 요구되지 않으나, 그 제품의 안전성의 입증은 요구된다.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로 요구되고 있는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식품 중 일정 이상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에 대해서 특정의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조건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식품을 말한다. 특정보건용식품의 법적인 근거는 건강증진법(Health Promotion Law)과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에 기초한다.

나) 기능성식품의 정의

식품이 기능성을 갖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성식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천연물질이어야 하고 둘째, 맛이 없는 성분의 제거와 좋은 성분의 보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식품에 첨가된 성분이어야 한다. 일본의 특정 보건용 식품은 특정성분의 첨가, 증강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의 원인물질이 되는 특정성분을 제거한 것도 보건상의 효과가 기대됨으로 이런 식품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특정 보건용 식품은 일본 후생성의 기능성식품의 일반적인 정의 즉 천연물질이어야 하고, 매일 섭취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화되어 특별한 기능 즉, Biological defence mechanisms를 증대시키고, 특정 질병을 예방(심장병, 암, 고혈압 또는 비만)하며, 생리 및 정신적인 상태를 제어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

다) 기능성식품 관련 제도 및 법규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은 소비자청의 관리 하에 특정보건용식품(Foods for specific Health Use, FOSHU)과 영양기능식품(Foods with Nutrient Function Claim, FNFC)으로 분류한다. 영양기능식품은 규격기준형이며, 이외의 것은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기능성을 부여받는다.

기능성 축산물의 경우 보건기능식품 중 특정보건용식품에 속해있다. 특정보건용식품이란 ‘생활 습관과 관련한 병의 일차 예방을 위하여, 부실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의 지정은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심사를 거쳐서 인증하는 개별허가형 식품군이다.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 및 허가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생리적 기능이나 특정의 보건기능을 나타내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인정받은 후 제품에 허용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정보건용식품 중 관여성분과 질병위험 감소효과의 관계가 의학적·영양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질병위험 감소표시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허가된다. 현재 허가된 관여성분은 칼슘과 엽산 두 종류 뿐이다.

최근의 완화정책으로 인한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이란 ‘조건부로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허가하는 제도이다. 특정보건용식품에 비해 작용기전 유효성을 확인하는 시험방법 등의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에는 새롭게 정해진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 허가 마크가 붙는다. 규격 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중 허가실적이 충분하고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경우 허가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만 심사하여 인정한다. 규격 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은 보건용도의 허가 수가 합계 100건을 넘을 것, 관여 성분이 허가 받은지 6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을 것, 복수의 기업이 해당 보건용도를 가진 해당 관여 성분에 대하여 허가를 취득하고 있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정보건용식품의 법적 근거는 건강증진법(Health Promotion Law)과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에 기초한다(그림 7).



그림 7. 일본의 기능성 식품 분류

1) 건강보조식품

일본은 건강식품을 보건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재)일본 건강 영양 식품 협회(JHFA)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다음 식품군을 대상으로 60 종류의 건강 보조 식품의 규격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 보조식품의 안전, 위생 면은 물론, 표시내용 등에 대해서도, 의학, 영양학 등의 학식 경험자의 지도의 기초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품목별 규격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JHFA 인정 마크의 표시를 허가하고 있다. 다음 표는 “JHFA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식품군이다(표 17).

표 17. 일본 건강 영양 식품 협회(JHFA) 규격 기준

	1일 권장량	기능
단백질류		
단백 식품	20g	콩 우유 계란 등 단백질을 원료로 열량을 강화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
단백질 효소 분해물 식품	○ 단백질 효소 분해물 가공 식품: 건조물 환산으로 10 ~ 20g ○ 단백질 효소 분해물 함유 식품: 건조물 환산으로 1 ~ 6g	천연 단백질을 효소 분해로 저분화 흡수에 좋은 수용성 펩타이드

굴 추출물 식품	추출 엑기스분말로 6g	글리코젠, 아연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 건강 지원
가막조개추출물 식품	추출 엑기스분말로 3g	양질의 단백질, 글리코젠, 무기질, 비타민 영양 균형을 유지한다.
초록조개식품	10g	미네랄, 글리코젠 등을 포함일상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 증진
자라분말식품	○ 자라 건조물로 660mg ○ 추출 엑기스로 160mg	자라의 영양 성분 공급
잉어 엑기스 식품	잉어 건조 분말 12g 추출물 엑기스로 10g	
지질류		
감마리노렌산 함유 식품	감마리노렌산으로 3g	식사에서 섭취 어려운 불포화 지방산.
EPA 함유 정제 생선 식품	EPA로 750mg	지방산 균형을 정돈, 생선의 섭취기회가 적은 사람에게 적합
DHA 함유 정제 생선 식품	DHA로 300 ~ 750mg	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에 함유된 필수 지방산
대두 레시틴 식품	대두 레시틴으로 10g	phospholipids 등이 보급, 노화방지
달맞이꽃유	달맞이꽃유로서 3g	간마리노렌산을 풍부하게 포함
자라 오일 식품	자라 기름으로 1.5g	
비타민		
쌀배아유	비타민 E (d - α - 토코페롤 당량으로) 300mg 이하	비타민 E와 필수 지방산을 다량함유
밀배아유	비타민 E (d - α - 토코페롤 당량으로) 300mg 이하	
보리배아유	비타민 E (α - 토코페롤)로 300mg 이하	
비타민 E 함유 식물유	비타민 E (α - 토코페롤)로 300mg 이하	
비타민 C 함유 식품	비타민 C로 2,000 mg 이하	야채와 과일의 섭취가 부족한 분
베타카로틴 함유 식품	베타카로틴으로 20mg	녹황색 야채 부족한 분
당류		
글루코사민 식품	글루코사민으로 0.5 - 1.5g	글루코사민의 생성
올리고당류 식품	* fructooligosaccharide 1 - 8g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장내의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용한 균류를

	isomaltooligosaccharide 4 - 20g * galactooligosaccharide 1 - 5g * soyoligosaccharide 1 - 19g	특이적 생성
뮤코다당 식품	뮤코다당으로서 3g	고령화 사회
키토산 식품	키토산으로 0.3 - 1.0g	다기 능성 섬유 키토산을 배합
미네랄류		
칼슘식품	칼슘으로서 150 - 450mg	뼈를 만들고 몸의 기능 조성
발효 미생물류		
효모 식품	건조 효모량으로 8g	고품질 비타민 B 복합체를 포함
유산균 (생균) 사용 식품	규격 벌크성분으로서 5g	장내건강유익
해조류		
클로렐라	클로렐라 벌크성분으로서 8g	단백질, 비타민 B ₂ , 철분 풍부. 녹황색 야채 부족한 분
스피리루나	스피리루나 벌크성분으로서 8g	녹황색 야채의 대안
허브 및 식물성분등		
대두 이소플라본 식품	대두 이소플라본으로 10 - 90mg	점점 더 건강하게 활약하는 여성을 위한
콩 사포닌 식품	콩 사포닌으로 100mg	
그 외		
프로폴리스	○ 프로 폴리스 가공 식품, 프로 폴리스 함유 식품 프로 폴리스로 150 - 800mg ○ 프로 폴리스 가공 식품, 프로 폴리스 함유 식품 프로 폴리스로 100 - 500mg	중년의 건강 증진 각종 플라보노이드 화합물(Vit. P) 농축

(1)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기준

- ① 영양성분의 표시내용 : 열량, 단백질, 지방질, 당질 및 나트륨의 함유량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단, 표시단위는 100g 또는 100ml, 1식분, 1포장, 1매, 1알 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② 강화표시 : 기준치 이상의 함유량이 아니면 “강화”등의 표시는 할 수 없다. 식물 섬유,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D에 대해서 “강화” 또는 “高”, “多”, “포함한” 과 같은 용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③ 저, 제로 등의 표시 : 기준치 이하의 함유량이 아니면 “저”, “제로”등의 표시는 할 수 없다. 열량, 지방질,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에 대해서는 “cut”, “zero”, “non”, “저”, “low”, “off”를 강조해 표시하는 경우는 기준치 이하의 함유량인 것에 한한다.

* 무당, 저당이나 당류(포도당, 자당, 유당 등)에 대해서 표시할 경우에는, 섭취하면 비만이 나 충치 등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특히 당류의 양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④ 비교대상의 기재의 기준 설정 : 어떤 대상과 비교했는지, 어느 정도의 양이나 비율로 늘렸든가 줄였든가를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기준이 결정되어 있다.

(2) 강조표시 기준치 일람표 : 표시내용이 고(많다), 저(적다)등의 강조표시를 행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절대표시와 상대표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표 18-20).

표 18. 강조표시 기준치 일람표

절대표시	상대표시
강조해 표시하려고 하는 열량, 영양성분의 함유량	
기준치 이상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기준량 이상의 증가
기준치 이하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기준량 이상의 감소
저칼로리 식품섭유 풍부	자사 OO보다 지방 45% 저감

표 19. “영양보급을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표시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기준치 일람표

영양소	[제 1 섹션] 높은 취지를 표시하려면 다음 기준치 이상일 것		[제 2 섹션] 포함 취지 또는 강화되었다는 표시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치 이상일 것	
	식품 100g 당 () 안은 일반적으로 음료를 제공해주는 액상 식품 100ml당	100kcal 당	식품 100g 당 () 안은 일반적으로 음료를 제공해주는 액상 식품 100ml 당	100kcal 당
단백질	15g (7.5g)	7.5g	7.5g (3.8g)	3.8g
섭유	6g (3g)	3g	3g (1.5g)	1.5g
아연	2.10mg (1.05mg)	0.70mg	1.05mg (0.53mg)	0.35mg
칼슘	210mg (105mg)	70mg	105mg (53mg)	35mg

철	2.25mg (1.13mg)	0.75mg	1.13mg (0.56mg)	0.38mg
구리	0.18mg (0.09mg)	0.06mg	0.09mg (0.05mg)	0.03mg
마그네슘	75mg (38mg)	25mg	38mg (19mg)	13mg
니코틴산	3.3mg (1.7mg)	1.1mg	1.7mg (0.8mg)	0.6mg
판토텐산	1.65mg (0.83mg)	0.55mg	0.83mg (0.41mg)	0.28mg
비타민B 복합체	14µg (6.8µg)	4.5µg	6.8µg (3.4µg)	2.3µg
비타민 A	135µg (68µg)	45µg	68µg (34µg)	23µg
비타민 B ₁	0.30mg (0.15mg)	0.10mg	0.15mg (0.08mg)	0.05mg
비타민 B ₂	0.33mg(0.17mg)	0.11mg	0.17mg (0.08mg)	0.06mg
비타민 B ₆	0.30mg 0.15mg)	0.10mg	0.15mg (0.08mg)	0.05mg
비타민B ₁₂	0.60µg (0.30µg)	0.20µg	0.30µg (0.15µg)	0.10µg
비타민 C	24mg (12mg)	8mg	12mg (6mg)	4mg
비타민 D	1.50µg (0.75µg)	0.50µg	0.75µg (0.38µg)	0.25µg
비타민 E	2.4mg (1.2mg)	0.8mg	1.2mg (0.6mg)	0.4mg
엽산	60µg (30µg)	20µg	30µg (15µg)	10µg

표 20. “적절한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표시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기준치 일람

구 분	[제 1 섹션]		[제 2 섹션]	
영양성분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기준치 이하 [무, 영, non, 리스]		낮은 취지를 표시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기준치 이하	
	식품 100g 당	일반적으로 음료에 제공하는 액상의 식품 100ml 당	식품 100g 당	일반적으로 음료를 제공해주는 액상의 식품 100ml 당
열 량	5kcal	5kcal	40kcal	20kcal
지 질	0.5g	0.5g	3g	1.5g
포화지방	0.1g	0.1g	1.5g	0.75g
			포화 지방 유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10 %	
콜레 스테롤	5mg	5mg	20mg	10mg
	1.5g	0.75g	1.5g	0.75g
	포화 지방 유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10 %		포화 지방 유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10 %	
당류	0.5g	0.5g	5g	2.5g

나트륨	5 mg	5 mg	120 mg	120 mg
-----	------	------	--------	--------

2) 특정보건용식품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관여하는 특정의 보건기능을 가지는 성분을 섭취하는 것에 따라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의 보건용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식품이다. 즉, 특정보건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게 해당 보건목적에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한 식품이다.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 및 허가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생리적 기능이나 특정의 보건기능을 나타내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인정받은 후 제품에 허용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정보건용식품 중 관여성분과 질병위험 감소효과의 관계가 의학적·영양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질병위험 감소표시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허가된다. 현재 허가된 관여성분은 칼슘과 엽산 2종뿐이다.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은 이미 허가된 특정보건용식품과 같은 성분이면, 그 성분에 관한 제품의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 표시의 허가실적이 100건 이상이며, 최초의 승인으로부터 6년이 지났고, 그 허가 받은 기능성 성분이 이미 두 회사 이상의 생산업체에 의해 생산·판매되었을 경우 허가된다.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은 임상실험에 의한 기능성효과의 입증에 요구되지 않으나, 그 제품의 안전성의 입증은 요구된다.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로 요구되고 있는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식품 중 일정 이상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에 대해서 특정의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조건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식품을 말한다.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에 있어서 지표물질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9가지로 분류되며, 질병위험 감소표시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 현재 허가된 관여 성분은 calcium과 folic acid 두 종뿐이며 calcium은 「뼈의 건강과 관련하여 골다공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folic acid는 「신경관 폐쇄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표시가 가능하다.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승인된 관여성분은 장의 상태와 관련되며 크게 식이섬유류와 올리고당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21-23).

표 21. 특정보건용식품의 지표물질

특정보건용도	지표물질
장의 상태 조절과 관련된 식품	Oligosaccharides, lactose, bifidobacteria, lactic acid bacteria, dietary fiber 8 indigestible dextrin, polydextrol, guar gum, psyllium seed coat, etc.
혈중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식품	Chitosan, soybean protein, degraded sodium alginate
혈당 조절과 관련된 식품	Indigestible dextrin, wheat albumin, guava tea polyphenol, L-arabiose, etc.
혈압 조절과 관련된 식품	Lacto-tripeptide, casein dodecanepptide, tochu leaf glycoside(geniposidic acid), sardine peptide, etc.
치아 건강과 관련된 식품	Paratinose, maltitiose, erythrytol, etc.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장의 상태의 조절과 관련된 식품	Degraded sodium alginate, dietary fiber from psyllium seed husk, etc.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Calcium citrated malate, casein phosphopeptide, heme iron, fructo-oligosaccharide, etc.
뼈의 건강과 관련한 식품	Soybean isoflavone, MBP (Milk Basic Protein), etc.
중성지질과 관련한 식품	Medium chain fatty acids, etc.

표 22.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의 지표물질

구분	지표물질	1일 섭취량
식이섬유류	Indigestible dextrin	3-8 g
	Polydextrose	7-8 g
올리고당	Guar gum degradation product	5-12 g
	Soy-oligosaccharide	2-6 g
	Fructo-oligosaccharide	3-8 g
	Oligosaccharide formed with galactose, glucose and fructose	2-8 g
	Xylo-oligosaccharide	2-5 g
	Isomalto-oligosaccharide	1-3 g
	Galacto-oligosaccharide	10 g

표 23. 허가에 따른 특정보건용 식품의 분류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	개별적으로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식품
질병위험 감소표시 특정보건용식품	관여 성분과 질병위험 감소효과의 관계가 의학적·영양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식품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이미 허가된 특정보건용식품과 같은 성분일 경우, 그 성분에 관한 제품의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 표시의 허가 실적이 100건 이상이며, 최초의 승인으로부터 6년이 지나고, 그 허가 받은 기능성 성분이 이미 두 회사 이상의 생산업체에 의해 생산·판매되었을 경우 허가되는 식품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로 요구되고 있는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중 일정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에 대해서 특정의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 근거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서 인증 받은 특정보건용식품

(1)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 요건

일본에서는 1991년부터 영양개선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용도식품 중 특정보건용식품에 특정의 보건기능을 갖는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될 경우, 특정보건용도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 허가요건으로는 특정보건용식품 취급 통지에 따라 다음 8개의 사항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행해진다.

- ①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며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
- ② 식품 또는 관련성분에 대하여, 보건용도의 근거가 의학적·영양학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 ③ 식품 또는 관련성분에 대한 적절한 섭취량이 의학적·영양학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 ④ 첨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식품 또는 관련성분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
- ⑤ 관련성분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 (ㄱ)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상 및 그 시험방법
 - (ㄴ) 정성 및 정량 시험방법
- ⑥ 동종의 식품이 일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의 조성을 현저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
- ⑦ 가끔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일 것.

⑧ 식품 또는 관여성분이 무승인·무허가 의약품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별지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의 별첨2에 따라 「오직 의약품으로서 사용되는 성분(원재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2001년 3월 27일 일부 의약발 제243호 개정).

(2)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

특정보건용식품은 “식품의 보건효과는 각각의 식품의 조성, 성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허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상품마다 의약품과 같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허가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품견본을 첨부하여 상품명, 원재료의 배합비율 및 해당제품의 제조방법, 성분분석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특별용도표시의 내용,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그 과학적 근거자료를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그 기능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의해 심사되며, 그 식품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위원회에 의해서 별개로 심사받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그림 8과 같다.

특정보건용식품은 기업이 제출한 유효성,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기초로 국가가 표시내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가한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개발한 식품을 섭취 시 기능적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나타내는 식품성분이 무엇인지, 그 성분이 어떤 작용기작에 의해 유효성을 발휘하는지를 *in vitro* 시험 및 동물 시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험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하면 그 작용이 나타나는지 등의 인체에서 유효성이 나타나는 섭취량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는 섭취경험 등으로 판단하여 기능성 성분은 물론 식품 그 자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의 섭취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라도 그 가공방법이나 섭취방법(섭취량 포함)이 다르면 다시 동물시험을 통한 급성, 만성 등의 독성시험 및 변이원성 시험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식품 그 자체를 사용하여 인체에 대한 과잉섭취시험도 실시해야 한다. 이 결과에 따라 섭취시의 주의환기 표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품질 측면에서는 관련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품질보존기간까지 유지하려면 식품 자체의 품질이 유통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관련성분에 대한 안전성 및 식품 자체에 대한 특정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성 또는 정량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확립해야만 하며, 보존 과정 중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장 등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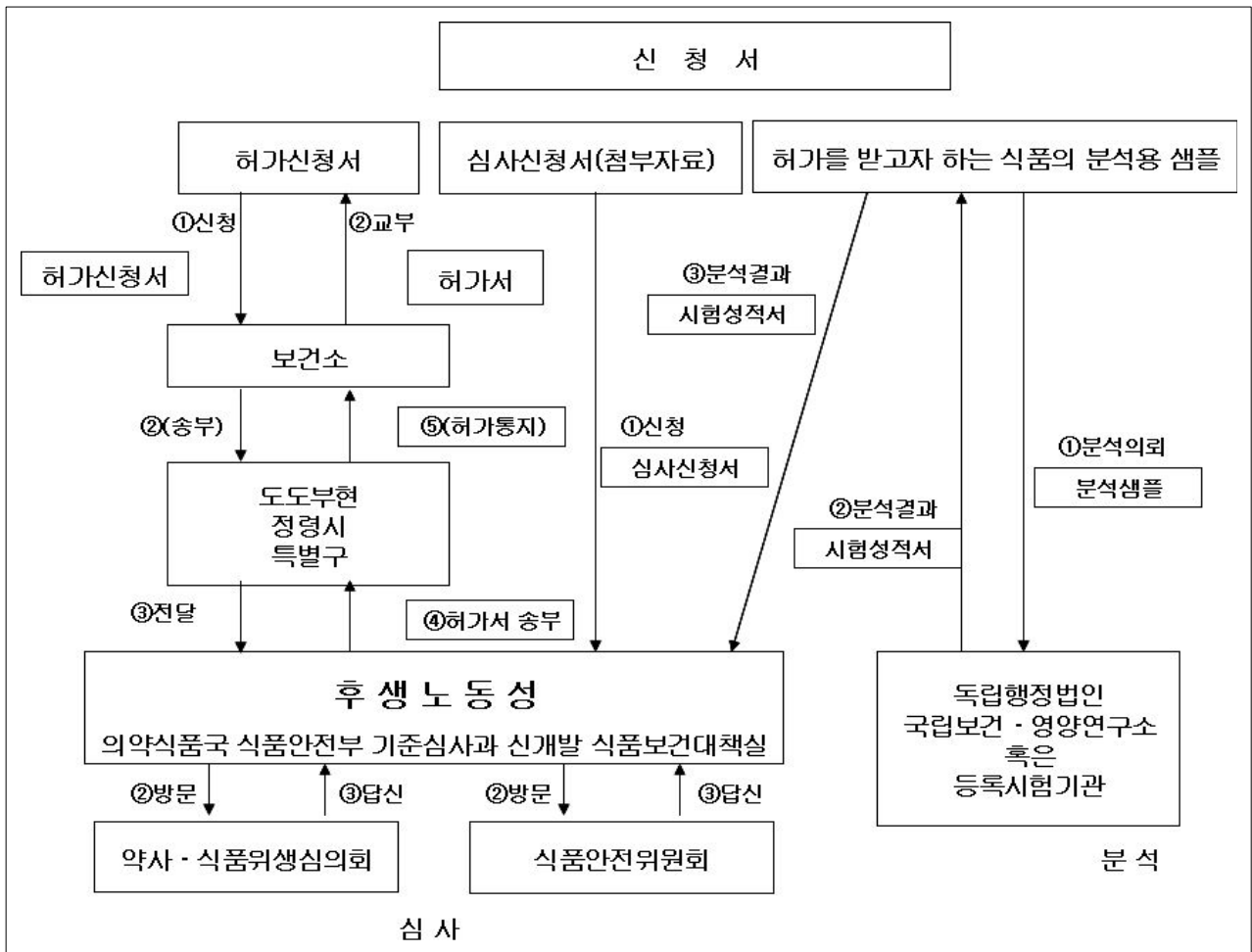


그림 8. 일본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 절차

(3) 특정보건용식품의 기능성 물질과 표시에 대한 규격기준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허가 품목은 보건용도별로 장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식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 식품, 혈당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 등 크게 11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24).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허가되었을 경우 건강기능표시와 특유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에 주의환기표시도 같이 해야만 한다.

표 24. 특정보건용식품의 11가지 표시기준

<p>위장의 상태를 조절하는 식품</p>	<p>배변을 도우며 위장중의 환경을 조절하여, 식생활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관련된 병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게 나누면, 대두 올리고당 등의 올리고당을 포함한 식품, 비피더스균 등의 유산균을 함유한 식품, 저분자 알긴산나트륨 등의</p>
------------------------	---

	식물섬유를 포함한 식품으로 분류된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키토산, 대두단백질 등으로 동맥경화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생활습관병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과 위장의 상태를 조절하는 식품	저분자 알긴산 등의 식이섬유 등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과 위장의 상태를 조절하는 식품의 2가지 용도를 합친 식품도 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혈압을 높이는 요인을 억제하여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생활습관 병의 일차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혈당치가 걱정되기 시작한 사람을 위한 식품	소맥알부민 등이 있으며,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주의가 필요하다.
식후의 혈중중성지방치의 상승을 억제하며, 체내에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식품	디아실글리세롤이 있다.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재합성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신장기능이 나쁜 사람이나 저영양상태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미네랄의 흡수를 돕는 식품	미네랄 성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칼슘, 구연산 등이 배합되어 있어, 칼슘이 흡수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다.
미네랄의 흡수를 도우며, 위장의 상태를 조절하는 식품	프락토올리고당이 미네랄의 흡수를 도우며, 위장의 상태를 돕는 2가지 기능을 가진 식품이다.
뼈 상태가 걱정이 되는 사람을 위한 식품	대두이소플라본, 프락토올리고당, 유염기성단백질 등을 포함하여 뼈의 형성이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충치가 되지 않게 하는 식품	환원파라티노스 등 당알코올과 차의 성분인 폴리페놀 등이 있다.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식품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와 비결정인산칼슘의 복합체와 같이 치아의 재석탄화를 통해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식품이 있다.

① 위장의 상태를 조절해주는 식품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변이 양호한 상태로 매일 규칙적으로 배설하게 하고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식품으로 [장의 상태를 조절한다]고 하는 표시를 허가받아 시장에 출하된 식품군은 유산균·식이섬유·올리고당 함유 식품이 있다(표 25).

표 25. 위장의 상태를 조절해주는 식품

보건용도	표시허가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정장1 (유산균)	본 음료는 락토오스를 원료로 하여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적정으로 증가시켜 장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켜주는 음료입니다.	지나치게 마시면 체질·몸의 상태에 따라 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장2 (식이섬유)	본 제품은 식이섬유의 구아검 분해물로 하여 장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도록 연구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과식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팽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주십시오.
정장3 (올리고당)	비피더스균을 증가시켜 장내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위 상태에 염려가 되는 분께 적합합니다.	음용이 지나치면 체질·몸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을 가감하여 주십시오.

②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콜레스테롤이 흡수되기 어렵도록 고안한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표시를 허가받은 식품군은 대두단백질, 저분자화 알긴산, 키토산함유식품이 있다(표 26).

표 26.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보건용도	표시허가내용	섭취시 주의사항
콜레스테롤 관련	[매나드콜레돌비]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어렵게 하는 키토산을 소정량 배합한 비스킷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혹은 주의하고 있는 분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합니다.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수분을 같이 드시어 주십시오.

③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혈압을 높이는 요인을 억제하는 식품으로 [혈압이 높은 분에게 적당한 식품이다]고 하는 표시를 허가받은 식품군은 두충엽 배당체, 카제인도데카펩타이드, 락토티리펩타이드 함유식품이 있다(표 27).

표 27.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보건용도	표시허가내용	섭취시 주의사항
혈압관련	본 음료는 두충엽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은 분에게 적당한 식품입니다.	본 제품은 고혈압증의 예방약 내지 치료약이 아닙니다.

④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칼슘, 철 등의 미네랄 성분을 보급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흡수 이용되도록 설계된 식품으로 [칼슘의 흡수성을 높이고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섭취하는데 적당하다]고 하는 표시허가된 CCM을 함유한 식품과 CCP함유식품이 있으며 [철의 보충이 필요한 빈혈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하다]고 하는 헴철 함유식품이 있다(표 28).

표 28.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보건용도	표시허가내용	섭취시 주의사항
미네랄 보급	[헴철음료 Fe]는 철의 보급을 필요로 하는 빈혈기미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본 제품은 철의 보급을 필요로 하는 빈혈기미가 있는 사람의 식사의료요법의 소재로 적당하지만 많이 섭취함에 의하여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 식품

충치균의 영양원이 되지 않는 감미료를 이용한 것,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성분을 가하거나 또는 양쪽성분을 병용한 식품으로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표시가 허가되어 있다(표 29).

표 29.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 식품

보건용도	표시허가내용	섭취시 주의사항
충치관련	키스민트껌 화이트는 충치를 일으키지 않는 말티톨, 환원 파라티노즈, 에리스리톨과 차 폴리페놀을 원료로 하여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 껌입니다.	섭취가 지나치면 체질·몸의 상태에 따라 변이 뭉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껌을 섭취함으로써 충치가 치료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⑥ 혈당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


혈당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혈당치에 신경이 쓰이는 분에게 적당한 식품이다]고 하는 표시를 허가받은 식품은 난소화성텍스트린, 폴리페놀, 밀알부민 등을 함유한 식품이다(표 30).

표 30. 혈당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

보건용도	표시허가내용	섭취시 주의사항
혈당관련	본 음료는 당의 흡수를 온화하게 하는 성분(난소화성덱스트린)을 포함하여 혈당치에 신경쓰이는 분의 식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있습니다.	본제품은 당뇨병의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아닙니다.

표 31. 일본 특정보건용식품의 기능성강조표시와 주의·환기표시 및 마크

허가종류	기능성 강조표시 예	주의·환기표시 예	마크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 식품	「OO(관여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의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합니다」를 비롯한 12가지 기능과 관련된 제품 개별적인 표시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혹은 체질·컨디션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OO(관여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섭취시 헛배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안심하고 드십시오」, 「다량 섭취하여도 질병이 치유되거나 보다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고혈압증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분, 임신 중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 및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 주세요」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 식품	「OO(관여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의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OO(관여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비피더스균을 늘려 장내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므로, 장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혹은 체질·컨디션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량 섭취하여도 질병이 치유되거나 보다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식품으로부터의 섭취량을 생각해 적당량을 섭취해 주세요」	

<p>질병위험 감소표시 특정보건용 식품</p>	<p>「이 식품은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합니다. 평소의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포함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튼튼한 뼈를 유지하여 나이가 들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식품은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합니다. 적절한 양의 엽산을 함유한 식사는, 여성에게 2번 척추 등의 신경관폐쇄 장애를 가지는 아이를 낳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p>	<p>「일반적으로 질병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되는 것이어서,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리는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병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되는 것이어서, 엽산을 많이 섭취해도 신경관 폐쇄 장애를 가지는 아이가 태어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p>	
<p>조건부 특정보건용 식품</p>	<p>「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는 반드시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의 보건 용도에 적절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입니다」</p>	<p>「본 제품은 고지혈증의 예방약, 치료약이 아닙니다. 덧붙여 본 제품에는 당분의 흡수를 온화하게 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나 당뇨병의 의혹이 있는 분은, 미리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후 섭취해주세요」</p>	

3) 특별 용도 식품

특별용도식품은 “특정질병의 식사요법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보건용식품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 특별용도 식품의 분류

1. 환자용 단일식품: 기본적인 허가기준은 영양분 조성의 가감상태, 특수한 가공, 복수의 식품편성, 의학적, 영양학적 견지로부터 특별한 영양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병자에게 적절한 식품, 특별한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병자용의 식품으로서 적격인 제품(표 32).

- 1) 저나트륨 식품
- 2) 저칼로리 식품
- 3) 저단백식품
- 4) 저(무)단백질 고칼로리 식품
- 5) 고단백질 식품

- 6) 알레르기 제거 식품
- 7) 무유당 식품
- 2. 환자용 종합식품 : 적정인 시험방법에 의해 성분 또는 특성이 확인, 허가제도에 대해서 식이요법상의 효과가 인정된 개개의 식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학계 경험자에 의한 평가로서 검토회에서 심사
- 3.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 4. 유아용 조제분유
- 5. 고령자용 식품
- 6. 특정보건용식품

표 32. 제품의 기준

식품군	제품의 기준	표시
저나트륨식품	통상 동종의 50%이상	나트륨의 섭취 제한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 적절하다는 취지의 표시 : 고혈압, 전신성 부종 질환(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저칼로리 식품	에너지량은 통상 동종의 50% 이하, 곡류제품에 대해서는 75% 이하 수분함량은 동일한 정도	에너지의 섭취제한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 적절하다는 취지의 표시 : 당뇨병, 비만증 등
저단백질 식품	통상 동종의 50% 이하 에너지량은 동일한 정도	단백질의 섭취 제한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 적절하다는 취지의 표시 : 신장 질환
고단백질 식품	통상 동종의 2배 이상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질환에 적절하다는 취지의 표시 : 간장 질환, 위궤양 등의 환자 식
알레르기제거 식품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을 제거한 식품	특정의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적절하다는 취지의 표시

4) 영양기능식품

영양기능식품이란 특정 영양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표시를 한 것(신선식품, 계란 제외)을 말한다. 즉,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식품이며, 고령화 및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1일 필요 영양성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이다.

현재 비타민 12종과 미네랄 6종에 대한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보건용도표시를 할 수 없으며, 영양기능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에 주의환기표시를 같이 해야만 한다(표 33). 영양성분은 영양소요량이 설정되고 있는 미네랄 및 비타민으로 하고 1일 섭취기준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상·하한치 규격기준은 의약부외품의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하였으며, 하한치 규격기준은 과학적으로 유효한 수치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일의 섭취량이나 섭취방법 표시에 필수 조건이 되는 영양소요량의 1/3을 충족시킨 분량을 하한치로 설정하였다.

표 33. 영양기능지표물질

지표물질	일일 섭취량	영양기능표시	지표물질	일일 섭취량	영양기능표시
Niacin	3.3-60 mg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Vitamin C	135-600 µg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며 산화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Pantothenic acid	1.65-30 mg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Vitamin D	1.5-5.0 µg	소장으로부터의 칼슘흡수를 돕고 뼈의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Biotin	14-500 µg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Vitamin E	2.4-150 mg	체내의 지방산화를 방지하고 세포의 건강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Vitamin A	135-600 µg	야간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Folic acid	60-200 µg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며,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에 기여합니다.
β-Carotene	1620-7200 µg	야간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Zinc	2.1-25 mg	정상적인 미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핵산과 단백질 대사에 기여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Vitamin B1	0.30-25 mg	탄수화물로부터의 에너지생성과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alcium	210-600 mg	뼈와 치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Vitamin B2	0.33-12 mg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Iron	2.25-10 mg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Vitamin B6	0.3-25 mg	단백질로부터의 에너지생성과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opper	0.18-6 mg	적혈구 생성, 뼈의 생성에 도움을 주며 체내 효소가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Vitamin B12	0.60-60 µg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Magnesium	75-300 mg	뼈와 치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바람직한 혈액순환과 체내효소의 기능과 에너지생성에 도움 줍니다.




라) 일본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현황





일본소비자청 “특정보건용식품” 허가품목일람 통계결과 2012년 12월 17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1023건이 허가되었다. 현재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승인된 품목을 살펴보면 육제품에서 개별 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이 16종, 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식품이 3종, 재허가 특정보건용식품이 5종이고, 육제품 중에서는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이 80종, 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식품이 2종, 재허가 특정보건용식품이 21종이다. 표 34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의 기능성축산물 표시 및 광고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34. 특정보건용 식품 허가(승인)품목 (2012년 12월 17일 기준)

구분	육제품 건수	유제품 건수	총 허가 건수
● 특정보건용식품(개별허가형)	16	80	540
●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	.	1
● 특정보건용식품(규격기준형)	.	.	55
● 특정보건용식품(질병위험저감표시)	3	2	15
● 특정보건용식품(재허가)	5	21	412
합계	24	103	1023

표 35. 일본의 기능성축산물 표시 및 광고 현황

제품명	관여성분	허가된 표시내용	제품사진
GG!	ラクトバチルスGG (L. rhamnosus GG)	본제품은 살아서 장까지 가는 유산균 라クト바치ルス(라쿠토바치루스)GG株의 움직임에 따라 배 안에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양호하게 하기위해 배의 상태를 정돈하는 식품입니다.	
ヤクルト (야쿠르트)	L.카ゼ이 YIT 9029 (시로타)株 (L. casei Shirota)	살아서 장에 도달하는 유산균 シロタ(시로타)株(L.카ゼ이(카제이)YIT 9029)의 움직임으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ジョア (죠아)	비타민D L.카ゼ이 YIT 9029 (시로타)株 (L. casei Shirota)	살아서 장에 도달하는 유산균 シロタ(시로타)株(L.카ゼ이(카제이)YIT 9029)의 움직임으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ブルガリア (불가리아)	L.bulgaricus203 8株 10억 개 이상과 S.thermophilus1 131株	LB81 유산균의 활동에 따른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배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합니다.	

제품명	관여성분	허가된 표시내용	제품사진
ソフール (소후-루)	L.카ゼ이 YIT9029 (シロタ株 (L. casei Shirota)	살아서 장에 도달하는 유산균 シロタ 시로타)株(L.카제이 (카제이) YIT 9029)의 움직임으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 선하고, 배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ビヒダス (비히다스) (비피더스)	<i>Bifidobacterium</i>	이 요구르트는 살아 있는 비피더스균 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체내에 비피더 스균이 증가해, 체내의 환경을 양호하 게 하고, 장 내의 상태를 편안하게 합 니다.	
ヤクルト (야쿠르트) 300V	비타민C	비타민E는 항산화작용에 따른 체내의 지방을 산화로부터 지켜, 세포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입니다.	
明治ラブ (메이지 러브)	철 엽산	지방을 65% 줄임, 엽산이 들어있습니 다.	

제품명	관여성분	허가된 표시내용	제품사진
모리나가 칼슘의 달인	칼슘	본 제품은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평소시의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프레티오	GABA (γ-Aminobutyric acid)	본 제품은 GABA (γ-Aminobutyric acid)를 포함하고 있어 혈압이 높은 분에게 적합한 음료입니다.	
칼피스유 산아미르 S 마시는 요구르트	Lactotriptide (VPP, IPP)	본 제품은 Lactotriptide (VPP, IPP)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미로 L	Fructo-oligosaccharide	본 제품은 fructo-oligosaccharide 작용에 의해, 건강한 뼈를 만드는 칼슘의 흡수가 촉진되도록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Dr. 마시는 요구르트	난소화성 텍스트린 (식이섬유)	제품은 식물섬유로서 식사 시 당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난소화성 텍스트린 (식이섬유)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혈당치가 염려되시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제품명	관여성분	허가된 표시내용	제품사진
서포트 요구르트	난소화성 덱스트린 (식이섬유)	본 제품은 난소화성 덱스트린 (식이섬유)의 작용에 의해, 당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므로 혈당치가 염려되는 분의 식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원데이 벨런스 포크 원나	대두 단백질	본 품은 분리 대두 단백질을 원료에 첨가하여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대두 단백질을 섭취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염려되는 분의 식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가 잡을 보로니아 소시지	난소화성 덱스트린 (식이섬유)	본 제품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식이 섬유를 보충, 배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건강 선언 헬시 버거	대두단백 질	이 제품은 식사 후 콜레스테롤이 흡수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혈청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마루하 피쉬 소세지	칼슘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DHA 들어있는 리사라 햄버거 타입	DHA EPA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 불포화지방산(EPA)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제품명	관여성분	허가된 표시내용	제품사진
DHA들어간 리사라 소시지	DHA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EPA)을 포함하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EPA		
섬유 잡은 로스햄	난소화성 텍스트린 (식이섬유)	본 제품은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식이 섬유를 보충, 배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마늘맛	DHA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EPA)을 포함하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EPA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바질맛	DHA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EPA)을 포함하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EPA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레몬&파슬리맛	DHA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EPA)을 포함하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EPA		

3.1.3 CODEX

가) 관련 규정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설립된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으로, 170개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로서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기구가 수행한 모든 식품규격 관련 작업과의 조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 영양표시와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CCFL)가 맡고 있다. 기능성정보 관련표시와 관련한 규격·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포장식품의 표시를 위한 기준」, 「영양표시에 관한 기준」, 「특수용도식품의 표시와 강조표시를 위한 기준」이 있으며, 지침으로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지침」,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보충제」 대한 지침이 있다.

1)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on Claims)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지침」은 1991년에 전면 개정되고 2009년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모든 식품에 표시되는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강조표시의 정의, 금지되는 강조표시, 잠재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강조표시, 허용되는 강조표시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표 36과 같다. 불충분한 비교와 최상의 표현 등을 포함한 무의미한 강조표시, 건강한(healthful), 건강에 좋은(wholesome), 건전한(sound) 등과 같은 강조표시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재료 목록에서 물질을 언급한 것, 영양표시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영양소를 언급한 것,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특정 영양소나 원재료의 양 또는 특성에 관한 표현, 해당식품이 어떤 영양소를 감소 또는 제거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영양적 성질을 갖게 되었다는 표현, 자연, 순수, 신선, 가정에서 만든, 유기 재배된 등의 표현은 강조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표 36.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CODEX의 규정

구분	구분	내용
강조표시	범위 및 일반 원칙	제1조. 어떠한 식품도 허위, 오도, 기만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성질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 혹은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	제2조. 강조표시(claim)란 식품의 원산지, 영양적 특성, 자연, 생산, 처리, 구성 또는 기타의 품질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상태, 제안 또는 암시와 같은

에 관 한 일 반 지 침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금지된 강조표시	제3조. 다음의 강조표시를 금지한다. ① 주어진 식품이 모든 필수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강조표시 ② 균형 있는 식이 또는 일반적인 식품은 모든 영양분의 적정 섭취량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암시하는 강조표시 ③ 실증화 할 수 없는 강조표시 ④ 질병, 장애 또는 특정 생리 조건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사용되기 에 이 식품 이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조표시
	잠재적으 로 오인하게 하는 강조표시	제4조. 다음과 같은 예는 오인하게 하는 강조표시이다. ① 불충분한 비교와 최상급을 포함한 의미 없는 강조표시 ② ‘건강에 좋은(wholesome)’, ‘건전한(sound)’, ‘건강한(healthful)’등과 같은 강조표시
영 양 및 건 강 강 조 표 시 사 용 지 침	범위	제1조.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가 된 모든 식품에 적용되나, 특수용도 식품과 특정의료용 식품에 관한 CODEX규격이나 지침의 특별 규정은 예외로 하며 영·유아용 식품에 사용될 수 없다.
	정의	제2조.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로 구분된다. 영양강조표시는 영양소함량강조표시, 비교 강조표시로 구분되며 건강강조표시는 영양소기능강조표시, 기타기능강조표시, 질병위험감소표시로 구분된다.
	영양 강조표시	제4조. 영양표시에 관한 지침에 영양소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및 그 구성성분, 식이섬유, 나트륨, 비타민 및 미네랄에 관련된 사항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영양소함량에 관하여서는 ‘영양소 표시 지침서(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를 따라야 한다.
	영양소함 량 강조표시	제5조. 본 지침의 표에 기술된 영양소함량강조표시나 이와 유사한 강조표시를 할 경우 표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강조표시를 하는 영양소가 그 식품에 원래 적거나 없는 경우, 영양소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는 제품명 바로 앞에 올 수 없으며 ‘low OO식품’,또는 ‘OO-free식품’의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비교 강조표시	제6조. 비교식품 간의 열량이나 영양소 함량의 상대적인 차이가 최소 25%여야 하나, 미량영양소인 경우 영양소기준치의 10%를 적용할 수 있다. 함	

		<p>량의 절대적인 차이는 본 지침의 표의 ‘저’나 ‘급원’에서 규정된 수치보다 작아야 한다.</p>
	건강 강조표시	<p>제7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p> <p>① 반드시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그 근거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평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서 표시된 효과 및 건강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적 증거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재검토되어야 한다.</p> <p>② 강조표시에 대한 효과는 건강한 식생활을 통하여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적절한 양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나야 한다.</p> <p>③ 강조표시 된 효과가 해당 식품 내의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성분에 기인된 경우 해당성분의 ‘급원’ 수준이거나 다량 함유해야 한다.</p> <p>④ 강조표시 된 효과가 해당 식품의 구성성분에 기인하는 경우, 그 표시의 근거가 되는 식품성분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검증된 측정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p> <p>⑤ 강조표시를 하는 식품의 영양소 또는 다른 성분에 대한 함량, 식품 혹은 식품 성분을 통하여 적절히 섭취하는 방법, 건강한 식이가 중요하다는 내용 등을 표현한다.</p> <p>⑥ 필요한 경우 대상 집단, 취급방법 및 기타 생활양식 또는 다른 식이급원, 취약집단에 대한 취급방법의 조언, 최대 안전 섭취량을 표현한다.</p>
	식사지침 및 건강에 좋은 식사에 관한 강조표시	<p>제8조. 다음 조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p> <p>① ‘건강에 좋은 식사’ 혹은 이와 유사한 용어에 관한 강조표시는 식사지침의 식생활 양식에 관한 강조표시로 간주되며 그 식사지침과 일치하여야 한다.</p> <p>② 식품을 ‘건강에 좋은’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식품이 그 자체로 혹은 저절로 건강을 유지해줄 것처럼 암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p> <p>③ 식품을 ‘건강에 좋은 식사’의 일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에 해당하는 식품과 식이지침의 식생활 양식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구를 넣어야 한다.</p>
비 타 민 과	정의	<p>제2조.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보충제란 정상적인 식단에서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일반식품 형태가 아닌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으로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p>
	구성성분	<p>제3조.</p>

미 네 랄 식 이 보 충 제 에 대 한 지 침		<p>①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간에 대한 영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FAD와 WHO에 의해 권장된 비타민/프로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p> <p>② 자연적이거나 합성된 비타민과 미네랄 모두 허용되나 안전성과 생체이용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최소 함량은 FAO/WHO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의 15%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함량은 과학적인 위험 평가에 의해 수립된 안전 상한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p>
	표시	<p>제5조. 표시에 관하여서는 「포장식품의 표시를 위한 기준(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를 따르고, 영양소함량에 관하여서는 「영양소 표시 지침(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을 따라야 한다.</p> <p>① 제품 사용(용량, 섭취횟수, 특수한 상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p> <p>② 소비자로 하여금 하루 최대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야 한다.</p> <p>③ 표시에서 식사대용이나 다양한 식이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표현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p> <p>④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p>

2)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 지침(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1980년대 말부터 논의하여 2004년 기존의 영양정보표시지침을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 지침」으로 개정하였다.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은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 지침」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범위, 정의, 영양표시, 영양 강조표시,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비교강조표시, 건강강조표시, 식이지침 및 건강에 좋은 식사에 관한 강조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 36). 국가보건정책과 목표를 지지하는 건강강조표시만을 허용하고 있고, 정보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여러 종류의 경고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CODEX의 식품표시분과위원회(CCFL)는, 건강강조표시의 조건으로 식품 또는 식품의 성분에 대한 표시는 전체 식이(total diet), 즉 개별식품보다 전체 식사의 맥락에서 언급할 것, 표시되는 효과를 발휘하기위한 식품이나 식품성분의 양은 일상식단 내에서 섭취가능한 양일 것, 나아가 좋은 식사습관을 비난하거나 특정 식품의 과다섭취를 장려 또는 묵과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가 표시된 식품에는 건강상의 혜택이 있는 식품의 영양소 또는 다른

성분의 함량에 대한 내용, 식품 또는 성분을 전체 식단에서 적절히 섭취하는 방법, 건강에 좋은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대상 집단, 보관방법, 사용방법, 취약집단, 최대 안전 섭취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3)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보충제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Vitamin and Mineral Food Supplements)

2005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보충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특수용도식품을 제외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보충제에만 적용된다(표 36).

나) 기능성 관련 정보표시의 정의 및 허용 기준

1) 기능성 관련 정보표시의 정의 및 허용 대상

강조표시는 식품의 원산지, 영양적 특성, 자연, 생산, 처리, 구성 또는 기타의 품질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상태, 제안 또는 암시와 같은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 지침서」에서는 강조표시를 영양 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로 나누고 있다(표 37). 영양 강조표시는 “어떤 식품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뿐만 아니라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함량을 포함한 특별한 영양적 특성을 말하거나 암시, 내포하는 표시”이다. 건강강조표시는 “어떤 식품 또는 식품의 구성 성분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말하거나, 암시, 내포하는 표시”를 의미한다.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의 적용 대상은 특수용도식품 및 특정 의료용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식품 또는 식품성분으로 전체 식품, 식품 카테고리,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보충제까지 포함)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일반식품과 기능성 식품의 분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시의 관점에서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과 할 수 없는 식품으로 구분된다.

2)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의 허용 기준

영양소 중 영양소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및 그 구성성분, 식이 섬유, 나트륨, 비타민 및 미네랄에 관련한 사항에만 영양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강조표시는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영양소비교 강조표시가 있으며 세부규정은 표 37과 같다. 영양소함량 강조표시는 강조표시를 하는 영양소가 그 식품에 원래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제품명 앞에는 바로 표시할 수 없고 ‘저[영양소명]식품’, “[영양소명] - 무 식품”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양소비교 강조표시는 해당식품과 유사한 식품이고 비교되는 식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영양소 함량의 양적 차이에 관한 문구를 명시하고 동일한 무게에서의 차이는 비율

이나 분수로 표시한다. 비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기술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열량이나 영양소 함량의 경우, 비교 식품 간에 최소 25%이상의 상대적인 차이가 있어야 하며(미량 영양소일 경우 영양소기준치의 10%차이), 「영양소함량 조건표」의 ‘저’나 ‘급원’표시 조건에 준하는 최소한의 절대적 차이가 있어야 표시 가능하다.

표 37. CODEX의 영양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구분		정의 및 표현
영양강조 표시 (Nutrition claim)	영양소함량강조표시 (Nutrient content claim)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수준을 표현 (예: “칼슘 급원”, “고섬유소, 저지방”)
	영양소비교표시 (Nutrient comparative claim)	두 개 이상의 식품에서 영양소나 열량의 수준을 비교 (예 : “감소”, “미만”, “덜”, “증가”, “초과”)
건강강조 표시 (Health claim)	영양소기능표시 (Nutrient function claim)	신체의 성장, 증진 및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해당 영양소의 생리학적 역할을 나타내는 표시(예 :영양소 A는 체내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생리학적인 역할을 하는데, 식품 X는 영양소 A를 함유하고 있음/풍부함)
	기타 기능강조표시 (Other function claim)	전체 식이(total diet)내에서 식품 혹은 식품의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 또는 생물학적 활동에 미치는 특정한 영향에 관한 정보표시. (예 :물질 A는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인 기능 또는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식품 Y는 이 물질 A를 Xg 함유하고 있음)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 (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	전체 식이(total diet)중 식품 혹은 식품의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질병 발생 혹은 건강과 관련한 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된 표시 (예: 영양소 혹은 물질 A를 많이 섭취하는 건강 식이는 질환 E의 위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식품 X는 그 영양소 혹은 물질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음)

표 38. CODEX의 영양성분강조표시를 위한 성분기준

성분	강조표시	조건 : 이상
열량 (Energy)	저(Low)	고체 100g 당 40kcal (170kJ) 또는 액체 100ml 당 20kcal (80kJ)
	무(Free)	액체 100ml 당 4kcal
지방 (Fat)	저(Low)	고체 100g 당 3g 액체 100ml 당 1.5g
	무(Free)	고체 100g 또는 액체 100ml 당 0.5g
포화지방 (Saturated Fat)	저(Low)	고체 100g 당 1.5g 또는 액체 100ml 당 0.75g 그리고 energy의 10%
	무(Free)	고체 100g 또는 액체 100ml 당 0.1g
콜레스테롤 (Cholesterol)	저(Low)	고체 100g 당 0.02g 또는 액체 100ml 당 0.01g
	무(Free)	고체 100g 또는 액체 100ml 당 0.005g
		고체 100g 당 1.5g saturated fat 또는 액체 100ml 당 0.75g saturated fat 그리고 10% of energy of saturated fat
당류 (Sugars)	무(Free)	고체 100g 또는 액체 100ml 당 0.5g
나트륨 (Sodium)	저(Low)	100g 당 0.12g
	최저 (Very Low)	100g 당 0.04g
	무(Free)	100g 당 0.005g
조건 : 이상		
단백질 (Protein)	급원 (Source)	고체 100g 당 10% of NRV* 액체 100ml당 5% of NRV* 또는 100kcal (1MJ 당 12% of NRV) 당 5% of NRV* 또는 serving 당 10% of NRV*
	고(High)	"급원 (source)"기준의 2배
비타민과 무기질 (Vitamins and Minerals)	급원 (Source)	고체 100g 당 15% of NRV* 액체 100ml당 7.5% of NRV* 또는 100kcal (1MJ 당 12% of NRV) 당 5% of NRV* 또는 serving 당 15% of NRV*

	고(High)	“급원 (source)”기준의 2배
--	---------	---------------------

NRV*: Nutrient Recommendation value(영양소 권장량 기준치)

3) 건강강조표시의 허용 기준

영양강조표시가 영양소 함량에 대한 강조표시라면, 건강강조표시는 영양소 및 식품 또는 식품의 구성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조표시이다. 건강강조표시는 표 37와 같이 ①질병위험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 ②영양소기능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 ③기타기능강조표시(other function claim)로 구분되며,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는 영양소 및 기타 성분(식품 포함)이 질병발생 위험과 관련되어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 사용가능하다. 영양소기능표시는 영양소가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했을 경우 사용 가능하고, 기타기능강조표시는 영양소 외의 성분(식품포함)이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영양소란 「영양표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에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된 영양소를 의미한다(표 39). 모든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허용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담당기관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표시된 건강상의 혜택은 건강한 식생활 속에서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식품이나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 ③ 표시된 건강상의 혜택이 영양소기준치(NRV)가 설정된 영양소에 의한 것일 때는 영양정보 강조표시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④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식생활지침에 반하거나 특정식품을 과대 섭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개별 정보표시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를 하기위한 과학적 입증의 방법으로 표 38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안전성에 관하여 「정부의 식품안전성 적용을 위한 위해 분석(Risk Analysis for Food Safety for Application by governments. CAC/ GL 62-2007)」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39. CODEX의 영양소의 단위 및 수치

Nutrient(영양소)	Unit(단위)	Value(수치)
Protein	g	50
Vitamin A	μg	800
Vitamin D	μg	5
Vitamin C	mg	60
Thiamine(B ₁)	mg	1.4
Riboflavin(B ₂)	mg	1.6
Niacin(B ₃)	mg	18
Vitamin B ₆	mg	2
Folic acid(B ₉)	μg	200
Vitamin B ₁₂	μg	1
Calcium(Ca)	mg	800
Magnesium(Mg)	mg	300
Iron(Fe)	mg	14
Zinc(Zn)	mg	15
Iodine(I)	μg	150
Copper(Cu)	Value to be established(미정)	
Selenium(Se)	Value to be established(미정)	

3.1.4 미국의 기능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법규 및 실태

가) 관련 규정

미국은 기능성식품에 대한 특별한 법률과 규제가 없고 식품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법률이 동일하게 기능성식품에도 적용된다. 단지 기능성정보를 제공하는 강조표시(claim)에 의해 규제된다. 미국 연방법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에 의해 관리된다. 기능성정보 관련 표시에 관련한 법률로 「영양표시 및 교육법(NLEA)」, 「식이보충제건강교육법(DSHEA)」, 「FDA 현대화법(FDAMA)」이 있다. 1990년에 「영양표시 및 교육법(NLEA)」이 제정되면서 식품에서의 '건강강조표시'가 가능하게 되었고, 1994년 「식이보충제건강교육법(DSHEA)」이 발효되어 식이보충제의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s)'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7년 「FDA 현대화법(FDAMA)」이 제정되어 유권적 평가에 입각한 건강강조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법률의 기본 방향은 식품의 선택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식품제조업자 간에 경쟁을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미국인이 보다 좋은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일생동안 건강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민건강증진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정책 중 식품과 영양 분야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건강강조표시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40. 미국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입증(scientific substantiation)과 관련되는 세부사항

구분	내 용	
정의	① 식품 또는 식품성분은 열량, 영양소, 관련 물질, 원료를 의미하고 건강강조표시의 기반이 되는 식품의 다른 특성, 전체 식품, 식품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② 건강효과는 영양 및 건강표시 사용지침에서 정한 건강강조표시 기준에 따른다.	
과학적 입증	입증 과정	(a)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건강 효과간의 제안된 관계를 증명할 것 (b)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건강 효과에 적절한 유효량을 밝힐 것 (c) 모든 관련 과학적 자료를 확인하고 분류할 것 (d) 과학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각 연구에 대한 관련성을 해석할 것 (e) 관련된 과학적 근거의 총체와 근거의 양을 평가하고, 주장의 관계가 입증되었는지 확인할 것

<p>입증 기준</p>	<p>(a) 건강강조표시는 우선적으로 잘 설계된 인체시험에 의해 제공된 근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인체시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건강강조표시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근거의 종합적인 평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실험 결과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건강효과간의 관계를 보충하는데 제공될 수 있지만 건강강조표시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p> <p>(b) 주장된 효과를 지원하는 증거, 주장된 효과와 반대되는 증거, 모호 하거나 불분명한 근거를 포함한 근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확인되어야 하고 검토되어야 한다.</p> <p>(c) 인체시험에 근거한 증거는 식품 또는 식품 성분과 건강효과간의 일관된 연관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반대되는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다른 점과 함께).</p>
<p>고려 할 사항</p>	<p>①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건강효과의 주장의 경우 관련된 바이오마커(지표물질)를 이용할 수 있다(예: 심혈관질병 위험에 관하여서는 혈중콜레스테롤 농도)</p> <p>② 과학적 근거는 건강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적절한 특성을 제공해야 한다(저장조건, 품질 수명, 생산조건 분석방법, 안정성 연구 등 포함).</p> <p>③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흡수가 필수적이지 않은 효과(예를 들어 식물스테롤, 식이섬유, 유산균)인 경우, 성분이 대상 부분에 도달했다는 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흡수 또는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p> <p>④ 각 연구 유형의 방법론적 질은 연구의 설계 및 통계분석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a) 인체 시험의 디자인은 특히 적절한 대조군 그룹과 연구 집단의 식생활 배경의 특성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의 측면, 충분한 기간, 식품 또는 식품 구성의 섭취 수준을 포함해야 하고 건강효과에서 식품의 영향과 총 식이의 맥락을 평가해야 한다.</p> <p>(b) 자료의 통계분석은 과학 커뮤니티에서 연구에 대한 적절한 인정 방법으로 실시하고, 통계적 의미를 갖는 적절한 해석으로 실시한다.</p>

		<p>⑤ 만약 식품이나 식품성분과 건강효과에 적합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 주요 설계 결함, 건강강조표시의 대상 인구집단에 적용되지 않는 연구인 경우 그 데이터는 관련된 과학적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p> <p>⑥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과학 자료나 근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체계적인 리뷰는 다음의 정도까지 입증해야 한다.</p> <p>(c) 식품이나 식품 성분의 주장 효과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p> <p>(d) 강도, 일관성, 특이성, 용량에 따른 반응과 같은 식품</p> <p>(e) 강조표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양과 소비 패턴은 강조표시가 의도하는 대상 인구집단에서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으로 상당히 도달할 수 있다.</p> <p>(f) 근거가 확보된 특정 연구 그룹은 강조표시가 의도하는 대상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p> <p>⑦ 주장된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이런 평가 및 입증 기준에 따라 관할당국은 결정할 수 있다.</p>
<p>특정 안전성 관련</p>	<p>① 건강위험에 소비자를 노출시키지 않는 섭취량을 설정하며, 성분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p> <p>② 소비 기대수준은 식품성분 섭취량의 상한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p> <p>③ 노출량 평가는 일반 인구와 관련성 높은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평소 총 섭취량 분포에 대한 평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p>	
<p>재평가</p>		<p>관련 국가당국은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건강효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전의 결론을 변경할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건강강조표시를 재평가해야 한다.</p>

*출처: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AC/GL 23-1997,Revised 2004.Amended 2010)

1) 영양표시교육법(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1990)

「영양표시교육법(NLEA)」은 소비자에게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식품에 관한 의무적 영양표시의 요건을 확립하였고, 영양함량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실정 법적틀을 만들었다. 동법은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및 일반식품(conventional foods)의 표시사항으로서 건강강조표시를 허가

하는 권한을 FDA에게 부여하였으며, 건강강조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FDA의 시판 전 승인이나 인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 「영양표시교육법」의 제정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반식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해 건강강조표시를 인정한 국가가 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 함
- ② 식품의 영양소함량 강조표시를 함
- ③ 특정질병과 특정영양소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음
- ④ 과학적 과정과 원리로 고안된 연구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FDA 사전허가 사항임
- ⑤ 건강강조표시를 허용 함

2) 식이보충제건강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1994)

「식이보충제건강교육법」은 기존의 「영양표시교육법」이 규율하는 영양표시법으로 식이보충제에 대한 영양정보를 표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동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식품에 적용되는 영양정보(Nutrition Facts)와 식이보충제에 적용되는 보충제법안(Supplement acts)이 분리 되었고, 기준섭취량(reference daily intake, RDA)또는 하루 기준값(daily reference value, DRV)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하여 그 특성을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FDA, 997). 동법은 식이보충제의 안전 및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되며, 세계 최초로 식이보충제라는 용어를 법정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적용대상은 비타민, 미네랄, 또는 그 밖의 식물성분, 아미노산, 총 식이를 증가시킴으로써 식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해 식용되는 식이물질(예: 효소), 농축액, 신진대사물질, 구성물질 또는 추출액 및 혼합물 등이다.
- ② 형상은 정제, 캡슐, 분말, 액상 등으로 일반식품의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만약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식품이나 식단의 단일 품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③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과 이에 대한 장점 표현이 가능하다.
- ④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
- ⑤ 인체의 구조 기능적 영향의 작용기전에 대한 표현은 가능하다.
- ⑥ 일반적인 건강증진에 대한 표현은 가능하다.
- ⑦ 질병의 치료, 예방 등에 대한 표시는 금지한다.
- ⑧ 생산자는 표시된 유용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⑨ 판매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FDA에 사후신고를 해야 한다.

나) 기능성 관련 정보표시의 정의 및 허용 기준

1) 기능성 관련 정보표시의 정의 및 허용대상

강조표시는 영양소함량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s)로 구분된다. 영양소함량강조표시는 “식품의 영양소 함량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로 정의되며 기술(descriptor)로도 불린다. 건강강조표시는 “식품, 식품의 성분 또는 식이보충제 성분과 질병 발생 위험 또는 건강관련 상태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구조/기능강조표시는 “인간의 정상적인 구조 또는 기능의 구조와 기능과 같은 유지에 효과가 있는 영양소나 식품 원료에 대한 묘사”로 정의된다. 이들 강조표시 중 어떤 식품이 기초 영양의 가치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어떤 건강 효과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강조표시는 ‘건강강조표시’이다.

미국에서는 강조표시의 대상으로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강조표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의 수준과 국가의 허가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오인을 차단할 목적으로 부분적인 보완규정을 두어 구분하고 있다. 단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FDA에서는 간혹 식품의 형태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표시 제도를 식품의 형태에 따라 나누고 있지 않음을 FDA는 각 표시의 규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영양소함량강조표시의 허용 기준

영양소의 함량 및 비교와 관련된 강조표시의 경우, 미국은 영양소함량 강조표시라는 개념 안에 CODEX에서 말하는 영양소 함량과 영양소 비교를 모두 담고 있다(표 40). 일반적인 허용조건으로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에 대해서는 21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연방규정) 101.13(h)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좋은 공급원’이란 강조표시는 RDI(Recommended Daily Intake, 1일 섭취권장량) 또는 DRV(Daily reference value)의 10-19%, ‘고’란 강조표시는 RDI 또는 DRV의 20%이상 함유된 경우에 사용가능하다. 1일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소들은 강조표시를 할 수 없으며, 1일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소들은 단지 “1일 섭취권장량으로 omega3지방산을 00g함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표시 가능하다.

3) 건강강조표시의 허용 기준

건강강조표시는 FDA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식품 또는 식이보충제에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이나 성분의 강조표시나 어떤 식품이 건강한 식이요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하는 것은 암시적 강조표시로서, FDA 규정에 의거 별도로 허가된 경우가 아

년 한 금지된다. 또한 '건강에 좋은'이란 단어를 사용하려면 일정 해당 식품이 지방과 포화지방이 모두 '저'요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에 대해서는 21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1.13(h)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어떤 특정 영양소에 대한 함량 강조표시의 정의와 요건에 맞아야 한다. 모든 건강강조표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건강강조표시는 산만하지 않도록 한곳에 표시해야 한다.
- ② 일상식생활에서 특정 식품의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이라는 강조표시에 한하여 질병이나 건강 관련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 ③ 소비자가 제공된 강조표시의 내용과 식생활에서 그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 ⑤ 네 가지 부적격 영양소(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함량이 정해진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 ⑥ 영양소를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가지 영양소(비타민 A, C, 철, 칼슘, 단백질, 섬유소) 중 적어도 한 가지가 일일량의 10%이상 함유된 식품이어야 한다.
- ⑦ 영아와 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 ⑧ 성분과 질병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may”나“might”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⑨ 질병 위험 감소율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
- ⑩ 질병에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연방정부규정(CFR)에 의하면 건강강조표시는 기능성 성분과 기대효과로 구성되며, 기능성 성분은 해당표시에 대해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소비 단계에서 그 특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 41과 같이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식품에는 별도의 FDA승인 절차 없이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 표시·광고 사전 심의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건강강조표시일 경우 표시가 가능한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목록에 없더라도 미국 정부의 과학기관이 유권적으로 언급(authoritative statement)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FDA에 통보하고 표시 할 수 있다.

표 41. 미국의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및 표시조건

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Energy)	저(Low)	기준량 당 40kcal 또는 100g당 120kcal(한끼용과 주식)
	무(Free)	액체 100ml 당5kcal

	줄어든 (Reduced/Less)	해당 기준 식품보다 기준량 당 칼로리가 최소 25% 이상 적음
지방 (Fat)	저(Low)	기준량 당 3g 또는 100g(한끼용과 주식) 당 3g 및 지방에 의한 칼로리의 30% 미만
	무(Free)	기준량 당 0.5g
	줄어든 (Reduced/Less)	해당 기준 식품보다 기준량 당 지방이 최소 25% 이상 적음
포화지방 (Saturated Fat)	저(Low)	고체 100g당 1g 또는 액체 100ml 당 0.75g 그리고 energy의 10%
	무(Free)	기준량 당 0.5g
	줄어든 (Reduced/Less)	해당기준 식품 보다 기준량 당 포화지방이 최소25% 이상 적음
콜레스테롤 (Cholesterol)	저(Low)	기준량 당 0.02g
	무(Free)	기준량 및 1회 섭취 표기량 당 0.02g
	줄어든 (Reduced/Less)	해당 기준 식품보다 기준량 당 콜레스테롤이 최소 25% 이상 적음
당류 (Sugars)	무(Free)	기준량 당 0.5g
	줄어든 (Reduced/Less)	해당기준 식품보다 기준량 당 당분이 최소 25% 이상 적음
나트륨 (Sodium)	저(Low)	기준량 당 0.14g
	무(Free)	기준량 당 0.005g
	줄어든 (Reduced/Less)	해당기준 식품보다 기준량 당 나트륨이 최소 25% 이상 적음
영양소 (Nutrient)	고함량 (High potency claims)	기준량보다 RDI가 100% 이상 함유된 개별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을 가리키는 식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2/3이상이 RDI(영양 권장 섭취량)와 DRV(1일 기준량)의 10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 식품, 그리고 제품 안에 RDI의 2% 이상이 들어있는 식품
	고(High claims)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또는 칼륨이 RDI 또는 DRV 기준량보다 20% 이상 함유한 식품.
	좋은 공급원 (Good source)	기준량 당 RDI 또는 DRV의 10~19%를 함유한 식품

	claims)	
	더욱(More claims)	기준량 당 RDI 또는 DRV의 10% 이상을 함유한 식품. 단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및 칼륨성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선된 (Modified)	상대적인 강조표시(예를 들면, “당사의 일반 치즈보다 지방 성분이 35%나 적게 함유된 개선된 지방 치즈 케이크“)인 제품의 식별 표시에 사용할 수 있다.
	식이섬유 강조표시 (Fiber claims)	총 지방이 낮지 않은 식품은 총 지방 함량을 “더 많은 섬유질 성분”이라는 강조표시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출처: Title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101.13과 101.54

4) 구조/기능강조표시 허용 기준

FDA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식이보충제의 구조/기능강조표시는 향후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한다. FDA의 사전승인을 거치는 건강강조표시의 경우에는 FDA가 제시한 표시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사전 표시·광고 사전 심의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구조/기능강조표시는 다음 3가지로 구분 된다.

- ① 인체의 일반적인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나 식이성분의 역할(예: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 ② 인체의 일반적인 구조나 기능을 유지하는 영양소나 식이성분의 역할(예: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유지 한다, 항산화제는 세포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 ③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양결핍증과 관련된 이익(예: 괴혈병에 대한 비타민 C 효과)에 관한 표시이다. 다만, “FDA가 이 정보 표시를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식이보조제가 “질병을 진단(diagnose), 처치(treat), 치료(cure), 예방(prevent)할 수 없다”는 표시도 하여야 한다. 일반식품의 구조/기능강조표시는 별도의 규정 없이 표시는 ‘진실해야 하고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FDA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식이보충제의 경우 구조/기능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가 비영양적(non-nutritive)효과와 영양적 효과 모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반식품은 주로 영양적 가치에서 유래된 효과에 집중된다.”또한 FDA는 일반식품에 대한 구조/기능표시와 건강정보표시의 구분을 식이보충제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품목제조를 신고하는 제도는 없지만,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식이보조제를 판매하는 경우 FDA에 통보 하여야 한다.

표 42. 표시대상 식품에서 질환관련 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의 예시문구

구 분	내 용
표 시	비타민 B와 혈관질환
질환관련 건강강조표시의 예시문구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낮으면서 잘 균형 잡힌 식사의 일환으로, 엽산과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FDA에서 내린 평가를 보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이가 심장질환과 다른 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강조표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증된 것은 아니다.
표시대상 식품	엽산이나 비타민 B6, B12, 엽산(folic acid)함유된 식이보충제
표시대상의 준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즉, FDA가 이에 대해 ... 밝혔다.)은 반드시 강조표시 사이에 분리하는 방해물질 없이 첫 번째 강조표시 바로 아래에 위치해야 하고, 두 번째 문구는 첫 번째 문구의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대조되게 표시해야 한다. • 4세 이상의 어린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중 엽산을 DV(400μg)의 100% 이상 함유한 제품은 반드시 DV(Daily value)에 대한 일일 안전한계치를 표시해야 한다. 엽산의 안전 한계치인 1000μg(1mg)을 괄호로 나타낼 수도 있다. • 강조표시는 21CFR 101.14의 일반적인 건강강조표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강조표시가 SSA(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충분한 과학적 합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승인 법률의 요구사항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2)강조표시 된 효과를 얻는데 필요한 일일 식이 섭취량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것. • 엽산을 포함한 식이보충제는 붕해도와 용해도에 대한 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standard를 따라야 한다. 단, 만약 적용할 수 있는 USP 기준이 없다면, 식이 엽산 보충제는 반드시 제품 사용법에 따른 생체이용율을 표시해야 한다.

*출처: <http://www.fda.gov/Food/labellingNutrition/LabelClaims/QualifiedHealthClaims/ucm073992.htm>

다)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건강강조표시는 「영양표시교육법」에 의한 건강강조표시, 「FDA 현대화법」에 의한 건강강조표시,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s)로 구분된다. 「영양표시교육법」에 의한 건강강조표시는 청원자는 그 강조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FDA는 SSA의 standard를 이용하여 건강강조표시를 인정한다. SSA(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는 ①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질병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에서 얻은 역학 데이터(epidemiology), ② 식품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한 화학적·세포학적·동물학적 모델로부터 얻은 생물학적 데이터(biological mechanism), ③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데이터(intervention trials)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SSA(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기준은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엄격한 척도로서,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사실에 의해 식품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재정의는 필요할 지라도 근본적인 타당성은 바뀌지 않음을 의미한다. SSA기준의 적용은 유효하고 적절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객관적이어야 하며,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종류의 다양성에 따라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연구 및 시험방법이 발전됨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의 재평가가 필요한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FDAMA)」에 의한 건강강조표시는 SSA 보다 단순화된 절차로, 공공보건이나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단체 즉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또는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 및 공적 책임을 지는 정부 산하단체의 '유권적 해석(authoritative statement)'에 의해서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다. FDA의 승인을 요하지 않지만 시판 120일 전에 청원자는 요건에 관한 자료를 FDA에 제출하여야 하고, 1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는 지금까지 SSA수준의 건강강조표시만 인정해 온 것과는 변화된 것으로, 충분한 과학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credible scientific evidence)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 표현으로 허용된다. 1999년 연방제2심법원이 “「영양표시교육법」의 SSA에 관해서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규제를 가하는 것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함에 따라, 2002년 FDA는 WOSE(weigh of the scientific evidence)기준을 이용하여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를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DA는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가 허용됨에 따라 「영양증진을 위한 소비자 건강정보발의(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근거의 수준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와 방법을 발전시켰다(FDA, 2003). 과학적 근거의 질과 양에 따라 제한적인 용어로 표현되도록 하였고, 표 39와 같

은 차등화 된 부연설명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SSA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high(A등급)'에 해당되고, 충분한 연구결과가 있으나 결정적인 결과가 부족한 경우 'moderate/good level(B등급)'이 부여되며, 낮은 질의 연구결과만 있거나 연구의 양이 부족하여 기능성 내용을 일반화하기 어려울 때 'low level of comfort(C등급)'에 해당된다. 일관성이 매우 낮거나 낮은 질의 연구결과만 있으면 'extremely low level of comfort(D등급)'이 부여된다.

2011년 5월까지 FDA에서 승인된 「영양표시교육법」에 의한 건강강조표시는 건강 강조표시는 총 12개로 ① 칼슘, 비타민 D와 골다공증, ② 나트륨과 고혈압, ③ 식이지방과 암, ④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심질환위험, ⑤ 섬유소함유 곡류, 과일 및 채소와 암, ⑥ 섬유소를 함유한 과일 채소 및 곡류제품과 관상동맥심질환 위험, ⑦ 과일 및 채소와 암, ⑧ 엽산과 신경관 결함, ⑨ 당알콜과 충치, ⑩ 몇몇 식품에서의 수용성 섬유소와 관상동맥심질환위험, ⑪ 대두와 심장관상동맥질환, ⑫ 스테롤/스타놀과 심장관상동맥질환 위험이며 「FDA 현대화법」에 의한 건강강조표시는 총 4개이다.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는 암 발생 위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인지기능, 당뇨병, 고혈압, 아토피성피부염, 태아신경관기형 등과 관련하여 총 16개가 허용되었으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건강강조표시마다 표 43과 같이 표현의 예, 표시대상 식품, 표시대상의 준수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 43. 한국과 미국의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에 허용된 문구비교

	구분	적용 대상	과학적 근거의 수준	허용된 문구
한국	질병위험감소 표시	건강기능 식품	SSA	"X는 Y라는 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로 표현됨
	생리활성기능 1등급	건강기능 식품	높음	"X는 Y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로 표현됨
	생리활성기능 2등급	건강기능 식품	보통	"X는 Y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로 표현됨
	생리활성기능 3등급	건강기능 식품	낮음	"X는 Y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합니다."로 표현됨
미국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일반식품 및 식이보충제	First level (SSA)	"X는 Y라는 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로 표현됨
			Second level	"이 표시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부연설명이 요구됨

		Third level	“일부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만 FDA는 이 증거가 제한적이고 결정적이지 않다고 결정 했습니다”라는 부연설명이 요구됨
		Fourth level	“매우 제한적인 과학적 연구가 제시되지만 FDA는 매우 소수의 증거들이 지원된다고 결정 했습니다”라는 부연설명이 요구됨
일반식품 및 식이보충제	“이 표시는 FDA에 의해 평가된 것이 아니며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하고 사전 FDA 허가 없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조업자가 표시하도록 함		

미국의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s)과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에 관한 기능성 표기 제도 분석 식품표시제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로 구분하고 법률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모든 제품에 대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1990년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특정 식품에 한해 건강에 관련한 강조표시를 허용하여 현재까지 14가지 건강강조표시(저나트륨 식품 : 고혈압, 칼슘 : 골다공증, 채소·곡류 : 심장병, 엽산 : 신경관계 결합저지방 식품 : 암, 과일·등)와 7가지의 제한적(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표시를 허가하였으며, 영양소함량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와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 및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로 구분하여 관리되어 지고 있다.

1) 영양소함량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

영양소함량강조표시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에 의해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NLEA)항목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FDA는 식품 속의 영양성분의 수준을 명백하게 또는 함축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표시는 ‘특정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free)’, ‘낮은(low)’, ‘높은(high)’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성분의 정도를 서술하였고, ‘더 많은(more)’, ‘감소한(reduced)’, ‘가벼운(light)’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성분을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기준량 및 일일참조섭취량인 DRV (Daily reference value)나 일일섭취 기준인 RDI (Reference daily intake)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시에 대한 인증을 부여한다.

(1) 영양성분 정도 기술 - 일일적정섭취량(Daily values, DV)과 비교

- 특정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free) - 영양분들이 아주 적게 들어 있거나 혹은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수준의 식품에 사용가능
- 낮은(low) - 일일 적정섭취량과 비교하여 영양분이 명확하게 적은양이 들어있는 식품에 사용가능
- 매우 좋은 원료(Good source/excellent source) - 일일 적정섭취량에 현저하게 기여하고, 높은 수준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가능

(2) 영양성분 정도를 비교하여 서술

- 감소한(Reduced), 더 많은(more), 가벼운(light) - 참고식품(reference food)으로부터 영양적 중요성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사용가능

(3) 그 밖의 영양분 표시

식품 또는 식품에 포함된 성분들에 대하여 확실한 양을 제시해 준다.

- 건강에 좋은(Healthy) - 그 밖의 다른 영양소 함유량에 관련하여 사용
- 결핍된(Lean and Extra Lean) - 육류, 가금류, 수산물, 수렵동물들의 지방함량을 서술하는데 사용가능

『지방(fat)의 예시』

영양소함량표시는 최근에는 칼로리,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비타민, 무기물, 섬유질, 단백질에 관하여 허가되었다. 총 탄수화물(당류와 섬유질 제외)에 관련된 영양소함량 표시는 FDA 허가를 아직 받지 못 하여, 그것에 관한 표시가 금지 되어 있으며, 2004년에는 많은 식품 제조회사들과 무역기구들이 FDA에 탄수화물에 관한 영양소함량표시와 탄수화물에 관한 ‘특정물질을 함유하지 않은(free)’, ‘낮은(low)’, ‘좋은 급원(good source)’, ‘매우 좋은 급원(excellent source)’표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FDA는 현재 그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일일 적정 섭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양소 또는 식품의 구성성분의 경우, 식품에 포함되는 영양소 양을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예로, ‘1회 식사량 중의 몇 mg’의 표시를 식품 라벨에 사용할 수 있으나 영양 성분의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즉, 성분이 높거나 낮다는 표현은 할 수 없으며, 그 예로서, ‘1회 제공량에 표시하는 경우 몇 mg’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 양에 관한 표시법은 반드시 측정 단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들을 쓰는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은 미국연방규정(CFR) 21번째 항목 중 101.13, 101.54-101.69(6)에서 규정하였다. 영양소함량표시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a) 30g이하의 권장섭취량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 영양소함량표시는 반드시 최종 제품에는 50g이 있다고 가정하고 표시

(b) '특정 성분에 관한 영양 정보를 보게 되면'같이 기재된 영양표시 중 지방이 13g, 포화지방 4g, 콜레스테롤, 60mg 나트륨 480mg의 함량이 초과했을 시에 소비자들이 그 식이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 또는 건강 관련 이상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 또한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NLEA)에서는 영양소함량표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FDA에서 허가된 용어이거나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류 표시에 영양소함량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저지방”, “고섬유질”, “무콜레스테롤”과 같은 용어의 오용 잠재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FDA는 영양소함량표시가 정확히 쓰여 질 수 있도록 규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영양소함량표시를 위해서 비교되는 참고식품(reference food)은 두 가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첫째, 그 종류의 식품을 대표하는 영양소를 광범위하게 가진 식품이어야 하며, 둘째 비교 식품과 유사하거나 비교 식품과 동일한 식품군이어야 한다.

『영양소함량표시에 관한 예시』

- 무 칼로리(CALORIE FREE) : 1회분 당 5칼로리 이하인 경우
- 저 칼로리(LOW CALORIE) : 1회분 당 40칼로리 이하인 경우
- 칼로리 감소(REduced/FEWER CALORIE) : 동일제품과 비교, 칼로리가 최소한 35%이상 감소된 경우
- 무 설탕(SUGAR FREE) : 1회분 당 당분이 0.5g 이하인 경우
- 설탕 감소(REduced/LESS SUGAR) : 동일제품과 비교, 칼로리가 최소한 35%이상 감소된 경우
- 무 나트륨(SODIUM FREE) : 1회분 당 나트륨이 5mg 이하인 경우
- 저 나트륨(LOW SODIUM) : 1회분 당 나트륨이 140mg 이하인 경우
- 무 지방(FAT FREE) : 1회분 당 지방이 0.5g 이하인 경우
- 저 지방(LOW FAT) : 1회분 당 지방이 3g 이하인 경우
- 무 포화지방(SATURATED FAT FREE) : 1회분 당 포화지방이 0.5g 이하인 경우
- 무 콜레스테롤(CHOLESTEROL FREE) : 1회분 당 콜레스테롤이 2mg 이하인 경우
- 저 콜레스테롤(LOW CHOLESTEROL) : 1회분 당 콜레스테롤이 20mg 이하인 경우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있다면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 규정 하에 식품업체들은 FDA에서 제시한 영양소함량 표시에 입각을 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영양소함량표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실제적인 데이터에 주의하여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음은 식품류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함량표시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 “높은(high in)”, “풍부한(rich in)”, “매우 좋은 급원(excellent source of)” 제품 1회 섭취 시 일일적정섭취량(DV)의 20%이상을 함유하는 경우에만 표지에 표시
 - “좋은 급원(good source)”, “함유(contains)”, “제공(provide)” 제품 1회 섭취 시 영양성분 일일적정섭취량(DV)의 10~19%를 함유하는 경우에만 사용
 - “더 많은(more)”, “첨가된(added)”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
- FDA 규정에 의하면 영양소함량표시는 일일적정섭취량(DV)가 정해진 성분에 한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2)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는 식품 속의 물질, 영양소의 기능 또는 우리 몸의 일반적인 구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우리 몸의 변화, 유지 또는 기능의 증진이나 그 기능성의 기작이 증명 되었을 경우에 한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들은 질병 또는 건강 관련 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구성하도록 도와준다’는 표시는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인데 반면, ‘칼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표시는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이다. 구조/기능강조표시의 중요 구성요소는 안전성, 과학적 근거, 영양학적 가치이다.

『구조/기능강조표시에 관한 예시』

-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Helps maintain normal cholesterol levels)
- 건강한 폐의 기능을 유지(Maintains healthy lung function)
- 일시적인 변비 완화(Provides relief of occasional constipation)
-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욕억제(Suppresses appetite to aid weight loss)
- 면역기능 유지(Supports the immune system)
- 소화불량 혹은 일시적인 속쓰림 완화(Relief of occasional heartburn or acid indigestion)
- 일시적인 불면증 완화(For relief of occasional sleeplessness)

- 성욕 자극(Arouses sexual desire)
- 기억력 증강(Improves memory)
- 체력 증강(Improves strength)
- 소화 촉진(Promote digestion)
- 스테미너 증대(Boosts stamina)
- 긴장 완화에 도움(Helps you relax)
- 근육 긴장 또는 근육성장 강화에 도움(Helps enhance muscle tone or size)
- 스트레스 완화(Relieves stress)
- 요로 건강 향상에 도움(Helps promote urinary tract health)
- 장내 세균 유지(Maintains intestinal flora)
- 노화에 따른 탈모를 위한 사용(For hair loss associated with aging)
- 주름 방지(Prevents wrinkles)
- 운동 후 근육통 완화(For relief of muscle pain after exercise)
- 밤중에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 또는 치료(To treat or prevent nocturnal leg muscle cramps)

구조/기능강조표시에 관해서 FDA의 시장에 판매 전 인증(pre market approval, PMA)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FDA는 식품/식이보충제 제조업자가 실질적이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절한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된 건강 기능 표시를 할 것과 반드시 정확한 기초에 입각하여 사실 그대로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이러한 표시들에서 FDA는 이 제품의 표시를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 제품은 어떤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부연 표시를 덧붙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제품과 다른 새로운 기능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은, 원본을 포함한 표시 관련 자료를 제품출시 하기 30일전에 FDA에 품목신고 해야 한다.

3)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는 물질의 구성성분(식품, 식품 구성성분 또는 식이보충제)과 질병, 건강관련이상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건강강조표시의 2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는 구성성분과 질병이다. 구조/기능강조표시와 달리, 건강기능표시는 반드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DA는 표시를 검토하기위해 과학적 타당성을 규명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행한다. FDA는 건강강조표시를 검토 하고 정식으로 허가한다. 다음 3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1) 과학적 합의에 의한 건강강조표시(Claims based on 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 자료가 확보된 경우,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NLEA)과 영양보충제 보건과 교육 협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에 의해서 식품, 식품성분, 식이 보충제 성분과 질병위험감소, 건강 상태의 관계에 대한 표시를 허용한다. FDA는 구성성분과 질병의 관계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과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학적 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SSA) 기준을 이용하여 이런 건강강조표시들을 정식으로 허가한다.

(2) 권위 기관의 진술에 의한 건강강조표시(Claims based on authoritative statement)

권위기관의 진술을 기초로 한 표시로써, 1997년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FDAMA)은 미국 정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E),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와 같은 권위기관이 성분과 질병간의 관계를 발표한 것에 근거로 하여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FDA 현대화법(FDAMA)에서는 식이 보충제에 위와 같은 표시의 사용을 불허한다. 이 표시는 FDA가 아닌 국립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권위 있는 기관의 진술을 기초로 한다면, FDA에 통보하여 120일 이내에 별도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3)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s)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s)는 「영양증진을 위한 소비자 건강 정보 발의(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 of FDA (2003))」에서 규정되었다. 식품성분과 질병과의 사이에 새로운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FDA의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의 일반 식품 또는 식이 보충제에 관한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의 사용을 규정하였다.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는 FDA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과학적 적합 기준(SSA standard)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단서문구(disclaimer)를 표시하여 일반식품 및 식이 보충제에 사용할 수 있다.

『질환관련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의 예시』

미국 FDA는 허가된 건강강조표시(authorized health claims)에서 요구사항 이었던 과학적 합의(SSA)에 비해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건강강조표시를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등급(grading)을 정하여 건강강조표시 성적표(health claim report card)를 발급하였다. 그 등급은 다음과 같다.

- “A” : 과학적 합의(SSA)기준에 합당한 경우
- “B” : 과학적 증거가 있으나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 “C” : 일부 과학적 증거 제시가 있으나, 한정적이며 비결정적일 경우
- “D” : 매우 한정적이며 기초적인 증거에 한함

일반적으로 건강강조표시는 질병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감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는 질병과 식품구성성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항상 ‘~일지도 모른다(may)’ 또는 ‘~할지도 모른다(might)’를 사용한다. FDA에 승인한 모든 건강강조표시는 독점적 사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FDA에 의한 질환관련 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s)에 부합하거나 SSA, FDAMA의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들은 전통식품이나 식이 보충제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건강강조표시가 된 식품들은 영양성분의 강화 없이 일일 적정 섭취량의 10% 또는 6가지 영양소(비타민A, 비타민C, 철분, 칼슘,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이상을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이 보충제는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면제된다.

4) 미국의 기능성 축산물 관리 현황

축산물은 미국의 경우 일반식품의 범위 안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능성을 강조하는 축산물의 경우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의 영양소 함량 표시, 신체강화 및 유지 표시, 건강강조표시 중 하나의 표시에 대한 인증을 제공 받아 축산물의 기능성을 광고 할 수 있다. 기능성 축산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의 대다수가 발효유를 비롯한 유제품이며, 이 역시도 일반식품과 같이 위의 세 가지 표시 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라) 미국의 기능성 축산물 표시 및 광고 현황

미국의 경우 축산물을 일반식품의 범위 안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능성을 강조하는 축산물의 경우 일반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영양소, 함량표시, 신체강화 및 유지 표시, 건강강조표시 중 하나의 표시에 대한 인증을 부여 받아 축산물의 기능성을 광고 할 수 있다. 기능성 축산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다수가 성분 조정우유와 발효유를 비롯한 유제품이며, 이 역시도 일반식품과 같이 위의 세 가지 표시 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기능성 축산물의 제품에 표시 되어 있는 문구를 보게 되면 성분 조정 우유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제품들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칼슘을 첨가하여 뼈를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비타민E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가 쓰이고 있다. “DHA와 omega3를 첨가한 제품은 두뇌개발에 도움을 준다.”거나 뇌, 심장, 눈에 유익하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요구르트의 제품의 설명을 보면 “식이섬유, 아스파탐, 비타민을 첨가하고 설탕함량을 줄여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육제품의 경우는 “기능성으로 표시되어 판매되는 상품들이 많지 않았으며 콜레스테롤과 칼로리를 낮춘다.”는 설명이 간략하게 표시 되어 있다. 계란제품의 경우에는 “omega3로 인해 건강을 개선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 표시되어 있다(표 44).

표 44. 미국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사례

제품명	구분	기능성 소재	제품 문구	제품사진
1% low fat milk (Smart Balance)	mi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plant sterols • sterols • omega3 • Vitamin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plantsterols 포함 콜레스테롤 감소를 도움 • 양질의 EPA, DHA, omega3가 심장건강을 도움, 콜레스테롤이 낮음 • 강화된 Vitamin E가 심장건강을 도움, • 전유(칼슘275g,단백질 8g)보다 다량의 칼슘(355g), 단백질(10g) 포함. • 호르몬제, 항생제 무첨가, 등급A 	
Fat-free milk (Lactaid)	mi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D • 콜레스테롤 • 칼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콜레스테롤과 무지방으로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 일반우유보다 다량의 칼슘(500g) 포함, Vitamin A, D를 강화 • 100% 락토프리로 소화 흡수용이. • 저온살균, 등급 A 	

<p>DHA omega-3 organic whole milk (THE ORGANIC COW)</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 심장, 눈에 유익함 • Vitamin D 첨가 • 저온살균 • 뉴잉글랜드 유기농 우유 	
<p>DHA omega-3 organic Reduced fat(2%) milk (THE ORGANIC COW)</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A,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유보다 지방함량을 38% 줄였음 • 뇌, 심장, 눈 건강에 도움을 줌. • Vitamin A, D 첨가 • 저온살균 • 뉴잉글랜드 유기농 우유 	
<p>Robivia Full Fat Laban Dairy Products (alrawabi)</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D3 • Carbohydrates • 칼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probiotic culture인 <i>L. acidophilus</i> LA-5를 첨가함으로써 인체에 이익을 줌 • <i>L. acidophilus</i> LA-5은 장내 건강의 균형을 유지 및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 	
<p>B-Activ Conjugated Linolic Acid Health Drink (alrawabi)</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 (conjugated linoleic ac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시는 저지방 요구르트는 체중 감소 프로그램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 • 임상 연구는 복합 Linoleic 산 (CLA)의 활성 성분이 안전하게 지방성분을 줄이고 건강한 신체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p>High Calcium Cereal Milk (RITA FOOD & DRINK COMPANY LIMITED)</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Cereal Milk는 당신의 뼈를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함 • 당신의 소화 및 대장 문제 도움 • 당신의 면역 체계를 증가 	
<p>Instant Goat Milk Drink (ASP s.r.o.)</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 Mg, Zn, Mn • micronutrients • folic acid • Vitamin A, B₁, B₂, B₁₂, C, D,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nt Goat Milk Drink는 우유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p>Unsweetened, high-calcium and low fat UHT Milk Flex (Vinamilk)</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ex는 건강과 활력, 에너지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상적인 영양소를 포함하는 식품입니다. 	
<p>KDD Long Life Full Cream Milk (The Kuwait Danish Dairy Co. KCSC)</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 Vitamin A, D, B₁, B₂, B₁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건강을 위한 칼슘요소의 최상의 공급원 	

<p>Selecta Fortified Filled (RFM Corporation)</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 Vitamin A, D,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ecta Fortified Filled Milk는 Vitamin A, D, B와 Calcium이 강화되어 있어 어떤 다른 우유보다도 영양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 	
<p>Similac GO&GRow Formula (Similac)</p>	<p>modified milk powd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D • Iron • 칼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뇌와 눈 성장을 위한 DHA와 ARA • 소화 건강을 위한 Prebiotics • 면역증진 Nucleotides 	
<p>Similac Sensitive Baby Formula (Similac)</p>	<p>modified milk powd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D • Iron • 칼슘 • 쌀녹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뇌와 눈 성장을 위한 DHA와 ARA 	
<p>Enfamil Gentlease LIPIL Baby Formula (Enfamil)</p>	<p>modified milk powd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D • Iron • 칼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뇌와 눈 성장을 위한 DHA와 ARA • 소화 건강을 위한 Prebiotics 	
<p>Babys only ORGANIC Formula (naturesone)</p>	<p>modified milk powd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D • Ir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뇌와 눈 성장을 위한 DHA와 ARA • 미국 농무성 유기농 인증 	
<p>Robivia Full Fat Yoghurt (Rawabi Dairy)</p>	<p>yogu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io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에 도움 및 장 건강을 유지 • probiotic 유산균(<i>Bifidobacterium</i> BB-12) 	

<p>Robivia Low Fat (Rawabi Dairy)</p>	<p>yogu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 Vitamin D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p>Probeauty (ATH Trading Co., Ltd)</p>	<p>yogu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C • 콜라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 있고 부드러운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과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는 ProBeauty 요구르트를 많이 드세요 	
<p>Fiber One (Yoplait)</p>	<p>yogu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이섬유 • 아스파탐 • Vitamin A • Vitamin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방, 식이섬유 함유로 체중감량에 도움 	
<p>Kids (Yoplait)</p>	<p>yogu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 DHA • Vitamin A • Vitamin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와 DHA 성분이 두뇌개발에 도움을 줌 • 일반 어린이 요구르트 보다 설탕 함량을 25% 줄임 	
<p>Compare Frozen Buffalo Meat (AFRIDI INTERNAT IONAL FROZEN FOODS)</p>	<p>m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 • Cu • Vitamin B • Calc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Buffalo Meat 는 Iron Copper, Vitamin B와 같은 영양성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콜레스테롤과 칼로리를 낮췄다. 	

Eggs Plus (Pilgrims pride Corporation)	eg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 omega6 • Essential fatty ac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탉에게 산화방지제가 들어가 있는 사료를 섭취하여 우리 몸에 유익한 omega3와 omega6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정상적인 세포성장과 뇌 발생을 도와줍니다. 	
Organic Egg (AGRODUR SAL S.R.L)	eg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 3,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6, 9를 포함하고 있는 Organic Eggs는 당신의 건강을 챙겨주고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Healthy white shell eggs (RAJ EXIM)	eg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과 건강 • 높은 영양 가치 • 식품 등급 포장 • 유해한 방부제 없음 	
Grade A eggs Large (EGG LAND'S BEST)	eg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 Vitamin E • 요오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가 100mg 함유, Vitamin E 첨가 • 일반 계란 보다 포화지방이 25% 낮음 • 루틴 200mg 함유 • 식물사료만 먹인 닭이 낳음 • 항생제, 호르몬제 무첨가, 등급A 	

3.1.5 유럽의 기능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법규 및 실태

가) 관련규정

EU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는 명확한 정의와 획일화된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여러 법규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여러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는 유럽의 기능성 식품 프로젝트인 Functional Food Science in Europe (FUFOSE)에 의해 제안된 “과학적으로 인체에 상당량 이상의 건강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식품으로, 그 효과가 증명된 식품이며, 일반식품 또는 일반 성분의 천연적인 효과와는 다르게 구분되며, 건강상태를 촉진하거나 혹은 질병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용어 정의 및 범위

EU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관련정의는 법규 서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CODEX의 정의를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강조표시(claim)」는“공동체나 국가 법률하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 메시지나 표현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그림이나 그래픽 혹은 상징적 표현이 포함되며, 어떤 형태로든지, 식품이 각기 다른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한다고 정의된다. 「영양소(nutrient)」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지침(Directive 90/ 496/EEC)의부 제3장 외국의 기능성 표시제 운영 부록(Annex)에 열거 되어 있는“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소, 나트륨, 비타민 및 무기질과 그군(category)에 속해있는 성분들이나 그런 군들 중 하나의 군에 있는 성분들”로 정의된다. 「기타성분(other nutrient)」이란“영양학적 및 생리학적 효과를 가진 영양소 이외에 어떤 성분”으로 정의 된다.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는“유익한 특성의 영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들”로 정의된다.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는“특정 식품군이나 특정 식품 또는 그 식품의 구성물 중의 하나와 건강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를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들”로 정의된다. 이 표시는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어린이 성장·건강 정보 표시와 기타 건강정보표시로 세분된다. 「질병위해감소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는“어떤 식품군이나 어떤 식품 혹은 어떤 식품의 구성물들 중의 하나가 인체질병의 발진과정에서 위험 인자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들”로 정의된다.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는 식품보충제 지침(directive on food supplement)64) 제2조에 따라 “일상 식단(normal diet)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양 또는 생리효과를 가진 영양소 또는 다른 성분을 농축한 것을 단일 또는 혼합하여 분량(dose) 형태로 판매되는 식품으로, 분량 형태는 캡슐, 파스틸레스(pastilles), 정제(tablets), 환약(pill)과 유사한 형태, 분말봉지

(sachets of powder), 액상 앰플(ampoules of liquids), 방울분주병(drop dispensing bottles)와 다른 유사한 액상 형태, 소량으로 섭취하도록 고안된 분말(powders designed to be taken in measured small unit quantities)”로 정의된다. 식품보충제는 지침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2) 적용범위

건강정보표시 법규는 일반적인 가공식품은 물론 식당이나 병원, 학교 등의 급식과 함께 과일, 채소류 등에 적용된다. 다만, 비상업적인 보도 내용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유럽의 기능성 축산물 표시 및 광고 현황

유럽의 경우 기능성 축산물에 대해 별도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일부 영양소가 강화된 육과 계란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미비한 편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쇠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생산하며, 기능성 물질을 급여한 사료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적색육의 기능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정 기능성 사료를 급여하기 보다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자체의 영양적인 기능성을 홍보하는데 주로 Iron(Fe), Zinc(Zn), Selenium(Se), omega3 Fatty acid, Vitamin B group, Vitamin D, High protein, Low-fat 등이 이용된다.


유럽의 판매되는 유제품의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사례를 보게 되면 성분 조정 우유와 요구르트가 가장 많았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표시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칼슘을 첨가하여 뼈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건강한 뼈조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문구와 “omega3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가 쓰이고 있다. 설탕과 탄수화물을 조절한 우유는 당뇨병에 무해하다는 문구와 *L. casei* 성분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문구가 있다(표 45).

표 45. 유럽의 기능성축산물 표시 및 광고 현황

제품명	구분	기능성 소재	제품 문구	제품사진
Fresh pasteurized cow milk ELBY Tonus (Puleva)	milk	calc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칼슘을 강화한 순수한 제품이다. • 이것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영양과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 이 제품은 칼슘 성분 하루 권장량 70%를 공급해주는 우유로써 뼈와 치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PULEVA Calcium Semi-Skim med (Puleva)	milk	calc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LEVA Calcium favours은 뼈에 칼슘을 비축함으로써 뼈를 강하게 하고 건강한 뼈 조직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PULEVA omega 3(Puleva)	milk	omega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심장혈관 조직의 건강유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 	
Danone Kefir (Danone)	yogurt	비타민 B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one 키퍼는 최고 품질의 기준을 충족 • 비타민 B12가 풍부한 Élőflórás의 유제품. • 살아있는 키퍼 배양균 사용 • 건강을 유지 시켜주는 유산균 	
Light&Fit (Danone)	yogu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수화물과 설탕 조절 • 당뇨병에 무해(diabetic friendly) • 일반 저지방 요구르트보다 설탕85%, 칼로리 55% 줄임 	

<p>DanActive (Danone)</p>	<p>yogurt</p>	<p><i>L. case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 casei</i> 성분이 면역력을 증가시킴 • 칼로리가 일반 유산균 제품보다 50% 낮음 	
<p>HiPP Organic 3 From 6 Months Onwards Follow on Milk (HiPP France)</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mix • oligosacchar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제품의 특별한 영양소는 당신의 아기 장속에 유익한 유산균의 성장을 유지시켜준다. • 우리 제품의 고품질 유기농 원료의 필수지방산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하다. 	
<p>HiPP Organic 1 From birth onwards First Infant Milk</p>	<p>mi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mix • oligosaccharides 	<p>아기가 강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비타민 미네랄 뿐 아니라 omega3, 6도 포함되어 있다.</p>	
<p>Dunn's River Nurishment Extra Banana Flavour Milk Drink (PALKK)</p>	<p>milk</p>	<p>Carrageenan, Carboxy Methyl Cellulose, Trisodium Citrate, Vitamins and Minerals</p>	<p>Nurishment extra는 당신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p>	

<p>Yazoo Chocolate Milk Shaken Up Milkshake</p>	<p>milk</p>	<p>calcium</p>	<p>Chocolate UHT milkshake의 Calcium과 단백질은 어린이의 정상적인 뼈 성장에 필요하다.</p>	
<p>CytoSport Muscle Milk 500 ml Banana Creme Ready-to- Drink Protein Shakes</p>		<p>vitamin calcium</p>	<p>Muscle Milk는 에너지를 유지시키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프리미엄 원료와 함께 최고급의 단백질이 32g이 함유하는 기능적인 배합의 제품이다.</p>	
<p>Maximuscle Maxi-Milk 330 ml Strawberry Ready-to- Drink Muscle and Recovery Shake</p>	<p>milk</p>	<p>glutamine leucine w h e y protein</p>	<p>MaXi milk는 살이 빠지거나 신체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원하는 최고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p>	
<p>Egg Eggs Chicken (Hen Hens)</p>	<p>eg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s • omega 	<p>우리 계란은 vitamin들과 omega로 가득 차 있으며 상점에서 판매되는 계란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맛이 좋다.</p>	

<p>OMEGA3 LARGE EGG</p>	<p>eg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 Vitamin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장주들은 암탉에게 아마씨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유기농 사료를 급여하여 키웠다. • omega-3 Organic Egg는 225mg의 omega3를 공급하며 Vitamin E의 좋은 공급원이다. 	
---------------------------------	------------	---	--	---

1) 기본원칙

건강기능강조표시 법규는 건강정보표시가 된 식품이 실제 이를 구매·섭취하는 사람에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표시된 식품을 구매·섭취한 소비자가 원하는 영양학적 또는 생리학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시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 최종제품 안에 충분히 들어있거나 적은 양으로 들어 있거나 없어야 한다. 둘째, 해당 성분이 우리 신체 내에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체내에서 알맞게 소모되어 원하는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과를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scientific substantiation), 강조표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식품사업자(the food business operators)에게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양 및 건강 원칙들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정보표시가 어떤 음식에 대한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거나 이를 묵과할 경우 또는 좋은 식이습관(dietary practice)을 비하하는 어떤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는 허용되서는 안 된다. 다섯째,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의 경우, 해당 질환이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유익한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강조표시가 된 식품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일상식단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과 관련해서 건강강조표시 법규는 영양소 기준(nutrient profile)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영양기준

소비자들은 강조표시를 한 식품이 해당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비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고 해당 식품을 가능한 많이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식품 섭취량의 증가는 오히려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에 지방, 나트륨 등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과량 함유된 경우이다. 이들 식품을 기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소 때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과거보다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함량 이상의 지방, 나트륨 등을 함유한 식품을 무조건 제한할 수도 없다. 치즈의 경우처럼 지방이나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지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양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영양기준(nutrition profile)이다. 다시 말해, 영양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능성이 있더라도 건강정보표시를 할 수 없다. 법규에서는 영양기준은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유럽식품안전기구(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자문을 거쳐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산, 염/나트륨, 당(sugars)과 같은 영양 또는 생리활성효과를 갖는 다른 영양성분과 물질의 함량을 고려해야 한다. 영양기준을 정할 때, 다른 식품 그룹(different categories of food)과 전체 식단에서 이들 식품의 위치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 및 식이습관(dietary habits)과 전통들의 다양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개개의 식품들이 전체 식이요법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참작해야 한다.

다) EU의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법규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1) 공동체내 라벨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식품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들에는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nutrition and health claims)가 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식품들은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이요법은 필수적이며 개별식품들은 총 식이요법(total diet)의 맥락에서 상대적중요성을 지닌다.

(2) 이러한 강조표시(claim)와 관련 국가 규정들 간의 차이점은 식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 조건들을 낳게 되어 내수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식품에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공동체 규칙(Community rules)을 채택하는 것은 필수이다.

(3) 일반적 표시(labelling) 규정은 식품 라벨 표시(labelling),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및 광고(advertising)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법률적 접근 방식에 대한 2000년 3월20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Directive 2000/13/EC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Directive 2000/13/EC에서는 통상적으로 구매자를 속이거나 식품에 약효 성분이 들어있다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규정(Regulation)은 Directive 2000/13/EC에 나와 있는 일반적 규범들을 보완하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특수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4) 본 규정(Regulation)은 상업적 보도 내용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적용하도록 하되,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적(generic) 식품광고 및 공공기관의 진적인 혹은 부분적 지원을 받는 판촉성 캠페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비상업적 보도 내용으로 만들어진 강조표시, 즉 공중보건기관 및 보건소에서 발표한 식생활 지침서(dietary guidelines)나 권고사항, 혹은 언론 매체 및 과학적 내용의 출판물에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본 규정은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로 해석해도 좋은 등록 상표(trade mark)와 다른 유명 상표(brand name)에도 역시 적용하도록 한다.

(5) 전통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식품류나 음료의 특수성을 나타내는데 사용해 온 일반적 명칭(generic descriptors, denominations)들, 가령‘소화제(digestive)’나 ‘기침약(cough drops)’과 같은 명칭은 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6) 무효한(non-beneficial)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는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 영양강조표시와 관련한 국가 제도(national schemes)를 소개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기술기준(technical standards) 및 규정과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규칙들의 분야에서 정보 규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1998년 6월22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Directive 98/34/EC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위원회 및 타 회원국들에 알려야한다.

(7)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는 국제적 수준에서 1991년 강조표시(claims)에 관한 일반지침서(general guidelines) 및 1997년 영양강조표시 사용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였다. 후자에 대한 수정안이 2004년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 수정안은 1997년 지침서 내용에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를 포함시킨 것과 관계가 있다. Codex 지침서에 정해져 있는 정의(definition)와 조건(condition)들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

(8) 지방스프레드(spreadable fats) (1)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1994년 12월5일자 Council Regulation (EC) No 2991/94 내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스프레드용 ‘저지방(low fat)’이라는 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가능성은 즉시 본 규정의 조항들에 적합 시켜야 한다. 그 사이 Regulation

(EC) No 2991/94는 그것이 다루는 제품들에 적용하도록 한다.

(9) 다음에 나오는 영양소 및 다른 성분들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비타민과 미량원소(trace elements)들을 포함하는 무기질(minerals), 아미노산(amino acids), 필수지방산(essential fatty acids), 섬유소(fibre), 어떤 식품 내에 존재하여 어떤 강조표시(claim)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능(nutritional or physiological effect)을 가진 약용식물의 추출물(herbal extracts)과 다양한 식물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양소와 기타 성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의 보증 및 사실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 속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아울러 식품 산업의 공정한 경쟁 조건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식품에 만들어지는 모든 강조표시들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확립되어야 한다.

(10) 소비자들은 어쩌면 이 같은 영양소나 기타 성분들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유사제품 혹은 다른 식품들에 비해 강조표시와 함께 판촉 되고 있는 식품들이 영양 및 생리학적 혹은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이는 소비자들이 과학적 조언(scientific advice)에 반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nutrients) 및 기타 성분의 총섭취량(intake)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도록 권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알리기 위해서는 강조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restrictions)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성분이 존재한다거나 어떤 제품의 영양소분석표(nutrient profile)와 같은 요소들이 바로 그 제품에 강조표시가 들어갈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짓는데 있어 적절한 기준(criteria)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한 영양학적 선택을 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정당화되기는 하지만, EU 공동체내 교역(intra-community trade)에 장애를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체 수준에서 조화시켜야 한다. 알코올 남용 위험에 관하여 국가기관(national authority)이나 공동체의 메시지를 지원하는 건강정보 및 보도내용은 본 규정의 범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11) 하나의 기준으로서 영양분석표(nutrient profiles)를 적용하는 것은 영양이나 건강강조표시가 어떤 식품의 전체적인 영양 상태를 가리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균형 잡힌 식이요법(balanced diet)의 맥락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는 소비자들을 오도(mislead)할 수도 있다. 본 규정 내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분석표는 강조표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제어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영양분석표들은 식이요법과 건강사이의 관계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학적인 증거(generally

accepted scientific evidence)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분석표는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및 식이습관(dietary habits)과 전통들의 다양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개개의 식품들이 전체 식이요법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참작해야 한다.

(12) 영양소 분석표 제정에 있어서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영양소와 성분들의 함량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특히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 지방산(trans-fatty acids), 소금/나트륨(salt/sodium) 그리고 당(sugar)과 같은 성분들의 경우 종합식이요법(overall diet)에서는 이들 성분의 과다 섭취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불포화지방산 및 단일불포화지방산(poly-and mono-unsaturated fats) 그리고 당(sugar),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protein) 그리고 섬유소(fibre) 이외에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available carbohydrates)에 대해서도 과다 섭취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영양분석표를 정할 때는 종합적 식이요법 안에서 서로 다른 식품군, 장소 그리고 이런 식품들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며 회원국들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이습관 및 소비패턴을 특히 감안해야 한다. 어떤 인구집단의 식이요법상의 식품이나 식품군의 역할 및 중요성에 따라 어떤 식품이나 식품군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양분석표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필수요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는 복잡한 기술적 업무에 해당될 것이며 관련조치들에 대한 채택업무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조언을 고려해 넣으면서 위원회 측으로 위임 시켜야 한다.

(13) 액상 형태이면서 알코올 함량이 1.2% 이상인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법률적 접근방식에 대한 2002년 6월1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Directive 2002/46/EC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식품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음료수로 간주하지 않는다.

(14) 건강에 이로운 것이라 증명된 적이 없는 성분이나 현재로서는 충분한 과학적 동의도 없는 성분들과 관계있는 강조표시가 일부 회원국들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라벨 표시 및 광고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성분들 때문에 강조표시가 만들어지고 그 성분들이 이로운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15) 만들어진 강조표시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강조표시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 충분히 최종제품 안에 들어있어야 하거나,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성분이 알맞게 감소된(reduced) 양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나 혹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우리 신체 내에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적절한 경우에는, 강조표시가 되어있는(claimed)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성분의 상당량은 체내에서 알맞게 소모될 수 있는 양의 식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16) 소비자가 식품상의 강조표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소비자들이 이런 표시들을 오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오도 및 비교 광고와 관련한 1984년 9월10일자 Council Directive 84/450/EEC에 대한 법률 조항(enactment)이 나온 이래로,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Communities)는 비현실적, 전형적인 소비자에게 끼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고 소송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예방책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규정에서는 사회, 문화, 언어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법재판소의 해석대로, 정보에 밝으며, 주의 깊고 신중한 평균 소비자(average consumer)를 표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강조표시에 특히 취약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들을 이용(exploitation)하는 것을 예방하는 규정(provision)을 만들도록 한다. 어떤 강조표시가 구체적으로 특정 소비자 집단, 예를 들어 어린이를 겨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강조표시의 영향이 그 집단의 평균 구성원의 관점에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는 통계학적 테스트가 아니다. 국가 법정 및 기관들이 주어진 해당 소송 건에서 평균소비자의 전형적인 반응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사법재판소의 판례법(case-law)과 관련하여 사법재판소 고유의 판결 기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17)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입증(scientific substantiation)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야하며 그런 강조표시를 사용하는 식품사업경영자(food business operators)들은 그 표시들을 정당화 시켜야 한다. 어떤 강조표시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자료의 완전성(totality)을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고찰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한다.

(18) 어떤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양 및 건강 원칙들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강조표시가 어떤 음식에 대한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거나 묵과할 경우 또는 좋은 식습관(dietary practice)을 비하할 경우에는 어떤 강조표시도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19)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가 들어가 있는 식품들에 주어지는 긍정적 이미지와 이런 식품들이 식이 습관 및 종합적인 영양소 섭취에 대해 가지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소비자들은 이런 식품들의 국제적인 영양학적 특성(global nutritional quality)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양소표시(nutrition labelling)는 의무화되어야 하며 건강강조표시를 나타내는 모든 식

품들로까지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20) 일반적인 영양학적 표시 규정들은 식료품의 영양소 표시에 관한 1990년 9월24일자 Council Directive 90/496/EEC에 포함되어 있다. 위 지침서에 따르면, 어떤 영양강조표시가 라벨 표시 상에 나타나는 경우, 프레젠테이션이나 광고 속에서는 일반적인 광고를 제외하고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당, 포화지방산, 섬유소 혹은 나트륨에 대한 영양 강조표시가 들어가는 경우, 주어진 정보는 Directive 90/496/EEC의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Group 2의 정보이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얻기 위해 Group 2의 정보를 제공할 이 같은 의무는, 일반적인 광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건강 강조표시가 만들어지는 경우라도 준용(mutatis mutandis)하여 적용해야 한다.

(21) 허용된 영양 강조표시 목록과 그 표시들의 사용에 관한 특정 조건들 역시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동체 법령(Community legislation)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강조표시의 사용 조건들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상기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 강조표시로서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표시면 어떤 것이든지 그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사용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과 무기질의 첨가(addition)와 관련되어 있는 표시들 즉 '와(with)...', '보충된(restored)', '첨가된(added)...' 혹은 '강화된(enriched)...'와 같은 표시들은 '급원(source of)...' 이라는 강조표시로 정해진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과학 및 기술적 발전을 고려해 놓기 위해서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더욱이 비교강조표시(comparative claims)를 위해서 비교되는 대상 제품들은 최종 소비자(final consumer)에게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22) 가령 '무유당(lactose-free)'이나 '무글루텐(gluten-free)'과 같은 강조표시를 위한 조건들은, 특정 장애(specif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자 집단에 맞춰진 조건들로, 특정영양용도로 쓰이는 식품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법률적 접근방식에 대한 1989년 5월3일자 Council Directive 89/398/EEC 내용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 지침서는 보통의 소비량에 적합한 식품들이 만약 그런 진술(statement)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이 같은 소비자 집단들이 사용하기에 적격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그런 진술들에 적합한 조건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정해질 때까지 회원국들은 관련 국가 조치를 지속시키거나 채택할 수 있다.

(23)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는 최고기준의 과학적인 평가가 있는 다음에 공동체 내의 사

용을 목적으로만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강조표시들에 대한 조화로운 과학적 평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그와 같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신청자가 그 진행절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4) 식이요인 이외에도 심리(psychological) 및 행동학적(behavioural)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 관한 보도는 매우 복잡하여 라벨표시 및 식품광고 내에서 사용되는 짧은 표시로는 포괄적이며 사실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심리 및 행동학적강조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학적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25)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제한 식이요법(energy-restricted diet)에 사용되는 식품들에 관한 1996년 2월26일자 Commission Directive 96/8/EC는, 이 지침서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들의 라벨 표시, 프레젠테이션 및 광고 안에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체중 감소율이나 감소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금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런 제한을 모든 식품들에 확장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26)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질병위해감소(reduction of disease risk) 및 아동발달 및 건강과 관련된 강조표시 이외에도 건강강조표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평가와 승인(허가)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유럽식품안전청과의 상담을 거친 후 그러한 허용된 강조표시의 공동체 목록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기술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전개된 과학적 증거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강조표시들이 촉진형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27) 과학 및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 대한 수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수정 작업은 기술적 특징에 관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채택 작업은 위원회(Commission)에 위임 시 켜야 한다.

(28) 식이요법은 어떤 인체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다른 요소들 가령 나이, 유전적 기질, 신체적 활동의 수준, 담배 및 기타 약물 복용, 환경적인 노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도 전부 인체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따라서 구체적인 라벨 표시 내용은 질병위해 감소와 관련한 강조표시의 관점에서 적용해야 한다.

(29) 건강한 식이요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건강강조표시가 사실이며, 명확하고, 믿을만하며 소비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건강강조표시의 용어표현 및 프레젠테이션은 유럽식품안전청의 의견과 그 이후의 절차들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0) 일부의 경우, 과학 위험 평가만으로는 위험관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려중인 그 문제와 관련 있는 다른 합법적 요소들을 참작해야 한다.

(31) 투명성을 위하여 그리고 이미 평가된 강조표시에 관한 복잡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강조표시목록들을 포함하는 공적기록부(public register)를 제정해야 하며 이것은 위원회(Commission)가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

(32) 농·식품 산업 내의 연구개발 분야가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 아래 신청을 지원해주는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혁신가들이 하는 투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연구 활동을 수행할 재정적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이 불필요한 연구 및 실험의 중복을 피하고 강조표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보호에는 시간제한을 두어야 한다.

(33) 중소기업(SMEs)은 서로 다른 식이습관의 특성 및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식품 산업에 중요한 부가가치(added value)를 의미한다. 본 규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럽식품안전청은 제한된 시간 내에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기술지침 및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34) 강조표시가 들어 있는 식품의 특별한 특징을 감안한다면, 그런 제품들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추가수단이 있어야 한다.

(35) 식품사업경영자들이 본 규정의 필수 요건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과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s)가 필요하다.

(36) 회원국들에서는 본 규정의 목적, 즉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와 관련하여 내수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확실히 보증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얻을 수 없고 공동체 수준에서 좀 더 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협약

(Treaty) 제5장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입각하여 대책안을 채택해도 좋다. 그 장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균형의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37) 본 규정을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대책들은 위원회에 주어진 실행 권한의 집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1999년 6월 28일자 Council Decision 1999/468/EC에 따라서 채택되어야 한다.

제1장

내용, 허용범위 및 정의(SUBJECT MATTER, SCOPE AND DEFINITIONS)

제1조 내용 및 허용범위 (Subject matter and scope)

1. 본 규정(Regulation)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내수시장의 효과적 기능 보장을 위하여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와 관련 있는 회원국들 내의 법률, 법규 혹은 행정조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조항들을 서로 조화시키고 있다.

2. 본 규정은 상업적 보도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적용하도록 하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식품의 표시나 프레젠테이션 혹은 광고 속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나 대형 급식업체에게 판매 되는 과일, 채소류 또는 빵과 같은 신선제품을 포함한 비포장 (non-prepackaged) 식료품과 구매자의 요청으로 판매 시점에 바로 포장을 해주거나 즉석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 전에 미리 포장을 해두는 식품의 경우, 제7조와 10(2)(a) 및 (b)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25(2)조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공동체 방침에 대한 최종 적용이 있을 때까지는 국가 규정을 적용해도 좋다.

본 규정은 또한 식당이나 병원, 학교, 구내식당 및 이와 유사한 대형 급식 업체에 공급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다.

3. 만일 라벨 표시나 프레젠테이션 혹은 광고 속에 어떤 관련 영양강조표시 혹은 건강강조표시를 수반 하고 그것이 본 규정의 조항들을 따르고 있다면, 본 규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승인(허가)절차 없이도 식품 표시나 프레젠테이션 또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 영양 혹은 건강강조표시로 해석해도 될 만한 등록 상표, 유명 상표명 혹은 진명(fancy name)을 사용해도 좋다.

4. 전통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식품류나 음료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온 일반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관련 식품사업경영자들이 신청하는 대로 paragraph 3의 손상(훼손)(derogation)에 대한 내용을 제25(2)장에서 언급된 절차에 따라 채택해도 좋다. 신청서

는 회원국의 주 무당국으로 보내지고 그 회원국은 그것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전달한다. 위원회는 식품사업경영자들을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하며 그 규정들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청 건을 투명하게, 적당한 시간 내에 다룰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함이다.

5. 본 규정(Regulation)은 다음에 나오는 공동체 규정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적용해야 한다.

(a) Directive 89/398/EEC 및 특정영양용도 식품과 관련하여 채택된 지침들

(b)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 관측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법적 접근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980년 7월15일자 Council Directive 80/777/EEC

(c) 식용생수의 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998년 11월 3일자 Council Directive 98/83/EC

(d) Directive 2002/46/EC.

제2조 정의 (Definitions)

1. 본 규정을 위하여

(a) 유럽식품안전청 확립 및 식품안전(4)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식품법(food law)의 일반적인 원칙들과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2002년 1월28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178/2002의 제2 조, 제3조 (3), (8) 및 (18)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식품(food)', '식품사업경영자(food business operator)', '시장출시(placing on the market)' 그리고 '최종 소비자(final consumer)'의 정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b) Directive 2002/46/EC에 설명되어 있는 '보조식품(food supplement)'의 정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c) Directive 90/496/EEC에 설명되어 있는 '영양소표시(nutrition labelling)', '단백질', '탄수화물', '당', '지방(fat)',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s)', '복합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s)', '섬유소(fiber)'의 정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d) Directive 2000/13/EC의 제1조 (3)(a)에 설명되어 있는 '표시(labelling)'의 정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2. 다음에 나오는 정의도 역시 적용해야 한다.

1) '강조표시(claim)'란 공동체나 국가 법률 하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 메시지나 표현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그림이나 그래픽 혹은 상징적 표현이 포함되며, 어떤 형태로든지, 식품이 각기 다른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다.

2) '영양소(nutrient)'란 Directive 90/496/EEC 에 대한 부록(Annex)에 열거되어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소, 나트륨, 비타민 및 무기질과 그 군(category)에 속해 있는 성분들이나 그런 군들 중 하나의 군에 있는 성분들을 의미 한다.

- 3) '기타 성분'이란 영양학적 및 생리학적 효과를 가진 영양소 이외에 어떤 성분을 의미한다.
- 4)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란 어떤 식품이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로 인해 유익한 특정 영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들을 의미한다.
- (a) 에너지 (열량, calorific value)
 - (i) 그 식품이 공급하는
 - (ii) 감소된 혹은 증가된 비율로 공급하는 혹은
 - (iii) 공급하지 않는 그리고/또는
 - (b) 영양소나 기타 성분들
 - (i)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 (ii) 감소된 혹은 증가된 비율로 함유하고 있는 또는
 - (iii) 함유하고 있지 않은
- 5)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란 어떤 식품군이나 어떤 식품 또는 그 식품의 구성물 중의 하나와 건강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를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들을 의미한다.
- 6) '질병위해감소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란 어떤 식품군이나 어떤 식품 혹은 어떤 식품의 구성물들 중의 하나가 인체질병의 발전과정에서 위험 인자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들을 의미 한다'
- 7) '기관(authority)'이란 Regulation (EC) No 178/2002에서 설립한 유럽식품안전청을 의미한다.

제2장 일반 원칙들

제3조 모든 강조표시를 위한 일반 원칙들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는 오직 본 규정의 조항을 따르는 경우에만 공동체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의 표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광고에 사용되어도 좋다.

Directives 2000/13/EC and 84/450/EEC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함에 있어

- (a) 거짓이거나, 모호하다거나 오도하지 않아야한다.
- (b) 다른 식품들의 안전 그리고/또는 영양학적 적합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 (c) 어떤 식품에 대한 과잉 소비를 조장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

(d) 균형 잡힌 다양한 식이요법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영양소의 양을 공급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서술 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영양소의 경우 균형 잡힌 다양한 식이요법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이러한 영양소에 대한 가치훼손은 그 적용 조건들을 포함하여, 회원국들 내에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제 25(2)조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도 좋다.

(e) 소비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신체기능상의 변화들을 문서상으로 든 그림이 나 그래픽 혹은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든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 조건

1. 2009년 1월19일까지, 위원회는 제25(2)조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면제조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영양소 분석표를 제정해야 한다. 이는 그 영양소 분석표에 관하여 식품이나 식품군에 대한 영양 혹은 건강강조표시의 사용 조건들과 영양 또는 건강강조표시를 나타내기 위해 식품이나 식품군들이 따라야 하는 분석표이다.

식품 그리고/또는 어떤 식품군들에 대한 영양소 분석표는 특히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a)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영양소 및 기타성분들 가령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당 그리고 소금/나트륨과 같은 성분들의 함량

(b) 그 식품 (혹은 식품군의)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일반 인구집단의 식이 요법에 대한 기여 또는, 알맞게, 어린이들을 포함한 어떤 위험집단의 식이 요법에 대한 기여

(c) 그 식품의 전체적 영양학적 구성과 과학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인식되어 온 영양소들의 존재여부

영양소분석표는 식이 및 영양소 그리고 이들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야한다.

영양소분석표를 설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12개월 이내에 관련 과학적 자문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 (i) 분석표가 일반식품으로 정해져야 하는지 그리고/또는 식품군들로 정해져야 하는지의 여부
- (ii) 고려해 넣어야 할 영양소의 선택과 균형
- (iii) 분석표에 쓰게 될 참고 수량/원칙의 선택
- (iv) 분석표의 계산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 (v) 제안된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및 테스트

영양소분석표를 설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특히, 식품사업경영자들과 소비자 단체들과 같은 이해당사 자들과의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영양소분석표와 그것의 사용 조건들은 제25(2)조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특히, 식품 사업경영자들과 소비자 단체들의 상담을 거친 후 관련된 과학적 발전 내용들을 고려해 놓기 위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2. 가치 훼손으로서, 영양 강조표시는

(a) 지방,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당 및 소금/나트륨 감소를 나타내는 (영양 강조표시들의 경우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표시가 만들어지게 된 특정 영양소(들)용 분석표에 대한 참고 없이도 강조표시가 허용되어야 한다.

(b) 특정 영양소에 관한 문구가 영양소 분석표에 아주 근접하여 나타나는 조건이라면 어떤 하나의 영양소가 영양소분석표를 초과하는 경우, 그 문구도 같은 면 위에도 그 강조표시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이 써야한다: ‘고(high) [...(*)]함유량.’

3. 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하는 음료에는 건강강조표시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영양강조표시에 관한 한, 오직 저알코올농도, 혹은 알코올 함유량의 감소, 혹은 알코올이 1.2% 이상 함유되어 있는 음료의 에너지 함량의 감소를 나타내는 영양 강조표시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4. 저알코올농도, 혹은 통상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 내에 알코올이나 에너지의 감소나 부채를 나타내는 영양강조표시에 관한 특정 공동체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Treaty)의 조항에 따라 관련 국가 규칙을 적용해도 좋다.

5. 식품이나 식품군은, 영양이나 건강강조표시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기 때문에 제25(2)조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과학적 증거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제5조 일반적인 조건

1.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은 다음에 나오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한다:

(a) 강조표시가 되어있는 영양소나 다른 성분에 관하여 어떤 식품이나 식품군내 영양소나 기타성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된 함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 적 증거에 의해 제정된 대로 이로운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b) 강조표시가 되어 있는 영양소나 다른 성분은

(i) 공동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최종 제품 속에 상당 양이 함유되어 있거나, 그 같은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제정된 대로, 요구되는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능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양으로 함유되어 있다.

(ii)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제정된 대로, 요구되는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 효능을 만들어내는 감소된 양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c) 적용이 가능한 경우, 강조표시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나 다른 성분은 인체에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 한다.

(d) 알맞은 소비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은 공동체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강조표시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양(significant quantity)으로 영양소나 다른 성분을 제공한다, 또는, 그러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제정된 대로 요구되는 영양학적 혹은 생리학 적 효능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양으로 제공 하게 된다.

(e)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장이나 혹은 제4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에 따름.

2.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은 강조표시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평균 소비자가 이로운 효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3.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는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소비 준비가 완료된 식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제6조 강조표시의 과학적 입증

1.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하고 입증되어야 한다.

2. 영양이나 건강강조표시를 제조하는 식품사업 경영자는 그 표시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해야한다.

3. 회원국의 소관관청들(competent authorities)은 식품사업경영자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사람에게 본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모든 관련 요소들과 데이터를 제작하라는 요구를 해도 좋다.

제7조 영양소 정보

영양강조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Directive 90/496/EEC에 의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 및 방식(modalities)은, 일반적인 광고를 제외하고, 건강강조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준용해서

(mutatis mutandis)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는 Directive 90/496/EEC의 제4(1)조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Group 2 안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이나 건강강조표시와 관계가 있는 성분(들)의 양(들)은 영양소표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영양소 정보처럼 역시 동일한 시각영역 안에서 서술되어야 하고 Directive 90/496/EEC의 제6조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보조 식품의 경우, 영양소 정보는 2002/46/EC 지침의 제8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제3장 영양강조표시

제8조 구체적인 조건들

1. 영양강조표시는 부록에 나와 있는 경우와 본 규정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조건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2. 부록 내용에 대한 수정안은 제25(2)조에 나타난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기관 (Authority)과의 상담을 거친 후 채택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본 강조표시들에 대한 개념 및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 특히 식품사업경영자들과 소비자 단체들을 개입시켜야한다.

제9조 비교강조표시(Comparative Claims)

1. Directive 84/450/EEC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비교를 할 때는 그 군의 식품들의 영역을 고려하여 같은군의 식품들 사이에서만 해야 한다. 영양소의 양 그리고/또는 에너지 값(energy value)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며 그 비교는 식품의 동일한 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영양소비교강조표시(comparative nutrition claims)는 본 식품의 구성성분을 동일한 군의 식품들과 비교해야하는데 이 식품들은 다른 브랜드의 식품들을 포함하여, 강조표시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만한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4장 건강강조표시

제10조 구체적인 조건들

1. 건강강조표시는 제2장에 나오는 일반적 내용 및 제3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따르고 본 규정에 따라 승인이 나며,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강조표시 목록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2. 건강강조표시는 다음에 나오는 정보가 라벨표시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라벨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및 광고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

- (a)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이요법과 건강한 생활양식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구
- (b) 요구되는 유익한 효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식품의 양 및 소비 패턴
- (c) 적절하다면, 그 식품 사용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구
- (d) 과도한 소비의 경우 건강에 위협을 나타낼 만한 식품에 대한 알맞은 경고문구

3. 총체적 건강이나 건강 관련 웰빙을 위한 영양소나 식품의 일반적이고 비구체적인 이점에 대한 참조는 제13, 14조에 규정된 목록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 건강강조표시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적절한 경우, 본 조항의 이행에 관한 지침서는 제25(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그 리고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자들 특히 식품사업경영자들과 소비자 단체들과의 상담 속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제11조 국내 의학 전문가 및 영양사 협회(associations) 및 건강관련 자선단체들(health-related charities)

국내 의학 전문가 및 영양사들과 건강관련 자선단체들의 권고안이나 이들에 의한 추천과 관련한 특정 공동체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련 국가 법령을 협약(Treaty)의 조항들에 따라 적용해도 좋다.

제12조 일부 건강강조표시 사용제한

다음에 나오는 건강강조표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a)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강조표시
- (b) 체중 감소율이나 감소량에 대한 언급을 하는 강조 시
- (c) 제11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개인 주치의들이나 건강 전문가들 및 기타 협회들의 권장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강조표시.

제13조 질병위해감소 및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나타내는 강조표시 이외 건강강조표시

1.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거나 나타내고 있는 건강강조표시

- (a) 성장, 발달 및 신체의 기능에서 한 영양소와 다른 성분의 역할
- (b) 심리학적 그리고 행동학적 기능
- (c) Directive 96/8/EC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체중감소(slimming)이나 체중조절 또는 식욕 감소나 포만감 의 증가 또는 식이요법으로부터 얻는 유효에너지(available energy)의 감소에 이

르기까지, 제15조에서 19조까지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서 만들어져도 좋다, 만약 그 내용들이

(i)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ii) 평균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

2. 회원국들은 늦어도 2008년 1월31일까지 강조표시에 적용되는 조건들과 관련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참고 내용을 함께 수반한 강조표시목록을 위원회(Commission)에 제공해야 한다.

3. 기관(Authority)과의 상담을 거친 후, 위원회는 제25(2)조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서 허용되는 강조표시들의 공동체 목록과 이런 표시들의 사용에 대한 모든 필수 조건들을 늦어도 2010년 1월31일까지는 채택해야 한다.

4. 어떠한 수정사항이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기관과의 상담을 거친 후, 위원회의 자체발의에 따라 혹은 위원회의 요청에 바로 이어서 제25(2)조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5. 어떠한 강조표시의 추가사항이라도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그리고/또는 개인 소유의 데이터 보호 요청을 포함하여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면서 채택해야 한다. 여기서 아동의 발달 및 건강과 관련된 강조표시는 제외되는데, 이는 제 15, 16, 17 그리고 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질병위해감소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및 아동발달과 건강을 나타내는 강조표시

1. Directive 2000/13/EC 제2(1)(b)조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위해감소강조표시와 아동의 발달 및 건강을 나타내는 강조표시는, 이런 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모든 필수조건들과 함께 그렇게 허용된 강조표시를 공동체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본 규정의 제15, 16, 17 그리고 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온 경우에는 만들 수 있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덧붙여서, 질병위해감소강조표시용 라벨 혹은, 그런 라벨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광고가 바로 그 강조표시가 나타내고 있는 질환이 복합적인 위험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위험요소들 중 하나를 변경시키는 것이 유의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문구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제15조 승인(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1.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승인(허가)신청서를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서는 회원국가의 국가주무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으로 보내져야 한다.

(a) 국가주무당국에서는

(i) 서면 상으로 14일 이내에 신청서 수령을 알려야 한다. 수령을 알리는 답장에는 신청서 수령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ii) 지체 없이 기관(Authority)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iii) 신청서 및 신청자가 제공한 어떤 보충 정보라도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b) 기관에서는

(i) 지체 없이 다른 회원국들과 위원회에 신청을 통보하여 신청자가 제공한 신청서와 어떤 보충 정보라도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ii) 신청서 개요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신청서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b) 영양소나 다른 성분, 혹은 식품이나 식품군, 이들에 대하여 만들어진 건강강조표시 및 그것의 각기 다른 특성들

(c) 가능하다면, 독립적이며 상호 검토를 받은 연구논문을 포함하여, 건강강조표시에 관하여 실시된 연구의 논문사본과 건강강조표시는 본 규정에서 규정된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기타자료들

(d) 적절하다면, 검증 가능한 정당성 증명내용을 수반하면서 특허(proprietary)로 간주되어야 하는 정보표시

(e) 해당 건강강조표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과학연구논문의 사본

(f) 승인(허가)을 구하고자 하는 건강강조표시의 표현(용어)에 대한 제안,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용 조건들을 포함

(g) 신청서의 개요.

4. 기관과의 상담을 이미 처음에 끝낸 위원회(Commission)는 제25(2)조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의 준비 및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법률들을 포함하여, 본 조항의 신청서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5.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위원회(Commission)는 과학적 평가를 위한 신청서 준비 및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식품사업경영자들, 특히 중소기업들(SMEs)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가능한 알맞은 기술 지침과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제16조 기관의 평가소견

1. 평가소견을 내는 과정에서, 기관은 법적 신청서 수령 날짜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기관이 신청자로부터 규정된 대로 보충 정보를 요구할 때마다 제한시간은 신청자가 제출한 요청 정보의 수령 날짜에 이어서 2개월까지 연장해주어야 한다.
2. 기관이나 그 기관을 통한 국가주무당국에서는, 적절한 경우라면, 신청자에게 지정된 시간제한 내에 신청서를 수반한 명세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평가소견을 준비하기 위해 기관은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을 검증해야한다:
 - (a) 건강강조표시가 과학적 증거로 입증되는가.
 - (b) 건강강조표시의 표현(용어)이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criteria)을 따르고 있는가.
4. 만일 해당 건강강조표시의 승인(허가)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 나올 경우, 그 소견은 다음에 나오는 상세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 (a)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 (b) 영양소나 다른 성분, 혹은 식품이나 식품군, 이들에 대하여 만들어진 건강강조표시 및 그것의 각기 다른 특성들
 - (c) 건강강조표시 표현(용어)에 대한 제안,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용 조건들을 포함
 - (d) 적용가능하다면, 식품 사용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사항들 그리고/또는 라벨표시나 광고에서 건강강조표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 구문이나 경고문
5. 기관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기관의 평가 내용을 기술하고 그 소견에 대한 이유 및 그 소견이 근거로 삼은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당기관의 평가소견을 위원회, 회원국들 그리고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6. 기관은 Regulation (EC) No 178/2002 제38(1)조에 따라, 당기관의 평가소견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자나 사회구성원들(대중)은 그러한 발표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비평(비판)해도 좋다.

제17조 공동체 승인(허가)

1. 기관의 평가소견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Commission)는, 해당 기관의 평가소견, 공동체 법률 관련 조항들과 심의 중인 문제와 관련한 기타 합법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23(2)조에 나타나 있는 위원회(Committee)에 허용된 건강 강조표시 목록에 대한 결정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 결정 초안이 기관(Authority)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원회(Commission)는 차이점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목록을 수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결정 초안이라도 제16(4)조에 나타나

있는 세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3.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25(2)조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4. 위원회(Commission)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정해진 결정안을 통보하고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그 결정안의 세부 내용들을 발표해야 한다.
5. 제 13, 14조에 규정된 목록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강조표시는 만약 제21조의 조항들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식품사업경영자라도 그 표시들에 적용하는 조건들을 준수하여 그 표시를 사용해도 좋다.
6. 승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관련 식품과 관련하여 어느 식품사업경영자이든 그들의 일반적 민사 및 형사책임을 경감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제18조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조표시

1. 제13(3)조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하고자하는 식품사업경영자는 그 목록에 강조표시를 포함시킬 것을 신청해도 좋다.
2. 이러한 포함용 신청서는 회원국 국가주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주무당국은 서면으로 14일 이내에 신청서 수령을 알려야 한다. 수령을 알리는 답장에는 신청서 수령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제15(3)조에 규정된 날짜와 요청 사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침과 일치하여, 유효한 신청서와 신청자가 공급한 어떠한 정보라도 과학적 평가를 위해서는 지체 없이 기관(Authority)으로 보내야 할뿐만 아니라 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도 참고로 보내주어야 한다. 기관은 당 기관의 평가소견을 요청 수령 날짜로부터 5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발행해야 한다. 그러한 시간제한은 만약 그 기관이 신청자로부터 보충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해도 좋다. 이 경우, 신청자는 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 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6(3)(a) 및 (b), (5) 그리고 (6)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준용해서 적용해야 한다.

4. 과학 평가에 이어, 기관에서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록에 해당 강조표시를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소견, 공동체 법률의 관련 조항들 및 심의 중인 문제 와 관련된 다른 합법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원국들과의 상담을 거친 후 기관의 의견을 받게 되는 2개월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관이 해당 목록 내에 강조표시를 포함시킬 것을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5(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 승인(허가)의 수정, 보류 및 철회

1. 제13, 14조에 규정된 목록들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강조표시의 신청자/사용자는 관련 목

록에 대한 수정을 신청해도 좋다. 제15~18조에 규정된 절차들은 준용해서 적용해야 한다.

2. 자체 발의에서이든 회원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든, 기관은 제13, 14조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강조표시가 여전히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공표해야 한다.

기관은 즉시 위원회와 회원국들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해당 강조표시에 대한 원신청자에게 해당 소견을 전달해야 한다. 기관은, Regulation (EC) No 178/2002 제38(1)조에 따라, 해당 의견을 대중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신청자/사용자 혹은 일반 구성원 중 한 사람은 그러한 발표가 있고 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비평(비판)을 해도 좋다. 위원회는 기관의 평가소견과 어떠한 비평(비판)이라도 받은 즉시 검토해야한다. 적절하다면, 제17, 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에 따라서 승인(허가)을 수정하거나, 보류 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제5장 일반 및 종결 규정(GENERAL AND FINAL PROVISIONS)

제20조 공동체 등록(Community Register)

1. 위원회는 식품에 사용된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의 공동체 등록부(Community Register)를 제정하여 유지해야 한다, 이하 '등록부(Register)'로 나타내기로 함.

2. 등록부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포함해야한다:

(a) 부록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듯이 영양강조표시와 적용 조건들

(b) 제4(5)조에 따라 채택된 제한사항

(c) 제13(3), (5), 14(1), 19(2), 21, 24(2) 그리고 28(6)조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받은

건강강조표시 및 그 적용조건들과 제23(3)조에 규정된 국가적 조치

(d) 거부된 건강강조표시 목록과 그 근거들. 개인권리의 사실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승인을 받은 건강 강조표시는 다음에 나오는 정보와 함께 등록부와는 별도의 부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위원회가 건강강조표시를 승인한 날짜와 그 승인을 받은 원신청자의 성명

2) 위원회가 개인보유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건강강조표시를 승인한 사실

3) 다음 신청자가 원신청자의 개인보유데이터에 대한 언급 없이 그 강조표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는다면 해당 건강강조표시는 그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

3. 등록부는 대중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21조 데이터 보호

1. 제15(3)조항 아래 필요한 신청서의 과학 데이터 및 다른 정보는, 다음 신청자가 그런 데이터와 정보는 사용되어도 좋다고 이전의 신청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승인 날짜로부터 5년의 기

간 동안에는 다음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다.

(a) 이전 신청이 접수되었을 당시, 이전 신청자가 과학 데이터 및 다른 정보를 개인 소유로 지정했었던 경우

(b) 이전 신청이 접수되었을 당시 이전의 신청자가 개인보유데이터에 대한 독점적인 참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c) 이전 신청자가 제출하는 개인보유데이터 없이는 건강강조표시가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경우.

2. 이전 신청자가 개인 소유로 지정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어떤 강조표시가 제14조 혹은, 적절 하다면,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릴 때 까지, 다음의 어떤 신청자도 이전 신청자가 개인 소유로 지정한 데이터를 참고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22조 국가별 규정

협약(Treaty) 내용, 특히 협약의 제28조와 30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회원국들이 어떤 식품이나 일반적인 식품에 쓰여진 강조표시를 통제하는 부조화스러운 국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교역(trade in) 또는 본 규정을 따르는 식품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23조 공지 절차

1. 만약 어떤 회원국에서 새로운 법률의 채택이 필요하다 여긴다면 그 국가는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들에 예상조치들에 대한 통보를 하고 그런 조치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2. 위원회는 Regulation (EC) No 178/2002 제58(1)조에 의해 설립된 식품공급사슬 및 동물후생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와 상담해야 한다. (이하 '상설위원회 (Committee)'로 나타내기로 함) 만약 상설위원회가 그런 상담을 유용하다고 여기거나 어떤 회원국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상설위원회는 예상조치들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한다.

3. 해당 회원국은, 위원회의 의견이 부정적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Paragraph 1에 규정되어 있는 공지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예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의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본 단락의 첫 번째 부속 단락에 규정된 기간의 해지 이전에, 제25(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상조치가 실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예상조치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1. 한 회원국에서 어떤 강조표시가 본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기는 중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적 입증에 불충분할 경우, 그 회원국은 일시적으로 자국 영내에서 그 강조표시의 사용을 임시로 중지해도 된다. 그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위원회에도 통지를 해야 하며 임시 중지에 대한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2. 제25(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다면, 기관에서 의견을 얻어낸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자체 발의에 대한 본 절차를 제안(발의)할 수 있다.
3. Paragraph 1에 규정된 회원국은 Paragraph 2에 규정되어 있는 결정이 당 국가에 통보될 때까지 임시 정지(suspension)를 유지해도 좋다.

제25조 상설위원회 절차(Committee procedure)

1.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이 단락에 참고 사항이 만들어질 경우, Decision 1999/468/EC의 제5조 및 7조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동 결의안(Decision)의 제8조 조항을 고려하고 있다. Decision 1999/468/EC의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정해야 한다.
3. 상설위원회는 절차에 관한 규칙들을 채택해야 한다.

제26조 감시감독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제조업자나 식품을 자국 내 시장에 출시하는 사람에게 제품에 사용된 라벨표시의 모델을 주무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주무당국에 공지할 것을 요구해도 좋다.

제27조 평가(Evaluation)

늦어도 2013년 1월19일까지, 위원회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특히 어떤 영양강조 혹은 건강강조표시가 만들어지는가에 관하여 식품시장의 발달과 강조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필요시에는 수정대안도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그 보고서는 식이선택에 대한 본 규정의 영향 평가와 비만 및 비전염성 질환에 관한 잠재적 영향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

제28조 경과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s)

1.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식품이나 본 규정의 적용 날짜 이전에 라벨 표시가 되어 나온 식품들은 본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기에 그 식품들의 만료기한까지는 판매가 될 수 있지만 2009년 7

월31일을 초과해서 서는 안 된다. 제4(1)조 규정들을 고려하여, 관련 영양소 분석표와 그것의 사용 조건에 대한 채택에 이어 24개월까지는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

2. 2005년 1월1일 이전 등록 상표와 다른 유명 상표가 들어 있는 제품들은 본 규정을 따르지는 않고 있으나 2022년 1월19일까지 계속 판매될 수 있으며 그 시간 이후에는 본 규정의 조항들을 적용해야 한다.

3. 영양강조표시에 적용 가능한 국가별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1일 이전에 회원국 내에서 사용되어 오던 영양강조표시와 부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양강조표시는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긴급수입 제한조치 채택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식품사업경영자들의 책임 하에 2010년 1월19일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4. 그림이나 그래픽 또는 상징적 표현의 형태로 되어 있는 영양강조표시는, 본 규정의 일반적 원칙들을 따르면서, 부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 규정이나 규칙들에 의해 정교화 된 구체적인 조건들과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데, 이는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a) 늦어도 2008년 1월31일까지, 회원국들은 그러한 영양강조표시 및 적용 가능한 국가별 규정이나 규칙들을 위원회에 전달해야하는데 이 때 그런 국가 규정이나 규칙들을 지지해주는 과학 데이터가 함께 수반 된다.

(b) 위원회는 제25(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본 절차 아래 승인되지 않은 영양강조표시는 결의안(Decision) 채택에 이어서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

5. 제13(1)(a)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건강강조표시는 본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제13(3)조에 규정된 목록에 대한 채택이 있을 때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 단, 식품사업경영자들의 책임 하에, 그들이 본 규정을 따르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채택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본 규정과 그들에게 적절한 기존의 국가 규정들을 따른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제13(1)(a)조와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강조표시 이외 표시들은 본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이전의 국가별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은 다음에 나오는 사항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a) 회원국 내에서 평가 및 승인의 대상이 되어 왔던 건강강조표시는 다음과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회원국들은 늦어도 2008년 1월31일까지 강조표시를 지지하는 과학 데이터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수반하는 강조표시를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ii) 기관과의 상담 이후, 위원회는 제2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승

인을 받은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결의안(Decision)을 채택해야 한다. 본 절차 아래 승인 받지 않은 건강강조표시는 결의안(Decision)의 채택 이후에 6개월 동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b) 회원국 내에서 평가 및 승인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던 건강강조표시: 그런 강조표시들은 2008년 1월 19일 이전에 본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본 절차 하에 승인 받지 않은 건강강조표시는 제17(3)조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린 이후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법률의 발효(시행)

본 규정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이 규정에 대한 발표가 있는 이후 20일째 되는 날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7월1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

부록(ANNEX)

『영양강조표시 및 적용 조건』

저에너지(Low energy)

저에너지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고체 식품의 경우 40kcal (170 KJ)/100g 이상 또는 액체 식품의 경우 20kcal (80 KJ)/100ml 이상의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를 넣어도 좋다. 4kcal (17 KJ)/1회 분량 한도의 감미료의 경우, 자당(sucrose) 6g (대략 티스푼으로 한 스푼의 자당)까지 그와 동일한 단맛을 내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적용한다.

에너지 감소(Energy-reduced)

에너지 감소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에너지가 감소한 식품이라는 특성의 표시와 함께 그 식품의 총에너지함량에서 최소한 30%까지는 에너지가 감소한 경우에만 표시를 넣어도 좋다.

무에너지(Energy-free)

무에너지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그 제품에 4kcal(17 KJ)/100ml 이상의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를 넣어도 좋다. 0.4kcal(1.7 KJ)/1회 분량 한도의 감미료의 경우, 자당(sucrose) 6g (대략 티스푼으로 한 스푼의 자당)까지 그와 동일한 단맛을 내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적용한다.

저지방(Low-fat)

저지방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 표시이든지 고체 식품의 경우 겨우 100g당 3g, 또는 액체의 경우 100ml당 1.5g (지방분을 일부 제거한 우유(semi-skimmed milk)의 경우 100ml당 1.8g정도의 지방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무지방(Fat-free)

무지방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 표시이든지 100g당 혹은 100ml당 겨우 0.5g의 지방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그러나 'X% fat-free'라고 나타내는 표시는 금지해야 한다.

저포화지방(Low saturated fat)

저포화지방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제품 내의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의 총합이 고체 식품의 경우 100g당 1.5g 또는 액체의 경우 100ml당 0.75g 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 으며 둘 중 어느 경우에서든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의 총합이 에너지의 10% 이상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무포화지방(Saturated fat-free)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무포화지방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포화지방 및 트랜스 지방산의 총합이 100g당 혹은 100ml당 포화지방 0.1g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사용해도 좋다.

저당/저설탕(Low sugar)

저당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 시이든지 고체 식품의 경우 겨우 100g당 5g, 또는 액체 식품의 경우 100ml당 2.5g의 당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사용해도 좋다.

무당(Sugars-free)

무당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표시이 든지 100g당 혹은 100ml당 겨우 0.5g의 설탕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무당' 표시

를 넣어도 좋다.

무가당/설탕 첨가 없음(With no added sugars)

식품에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단당류 혹은 이당류(mono- or disaccharides)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식품이거나 식품에 단맛을 내는 다른 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만약 설탕이 식품 속에 원래 들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표시가 역시 라벨 표시에 나타나야 한다.

‘천연적으로 당/설탕이 함유되어 있음(contains naturally occurring sugars).’

저나트륨/저소금(Low sodium/salt)

저나트륨/저소금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나트륨 함량이 겨우 0.12g이거나 혹은 100g당 혹은 100ml당 그와 등가의 소금 함량을 가진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생수의 경우, Directive 80/777/EEC의 범위에 들어가는 천연 미네랄 생수이외에는, 이 수치가 100ml당 나트륨 함량 2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저나트륨/초저소금(very low sodium/salt) 초저나트륨/초저소금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나트륨 함량이 겨우 0.04g이거나 혹은 100g당 혹은 100ml당 그와 등가의 소금 함량을 가진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이 강조표시는 천연 미네랄 생수 및 다른 생수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무나트륨 또는 무소금(Sodium-free or salt-free)

무나트륨 혹은 무소금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나트륨 함량이 겨우 0.005g이거나 혹은 100g당 그와 등가의 소금 함량을 가진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식이섬유의 급원(Source of fibre)

식이섬유 그 자체라는 식품의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100g당 적어도 3g의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거나 100kcal 당 적어도 1.5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고식이섬유(High fibre)

고식이섬유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100g당 적어도 6g의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거나 100kcal 당 적어도 3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단백질의 급원(Source of protein)

단백질 급원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적어도 식품에너지함량(energy value of the food)의 12%가 단백질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고단백질(High protein)

고단백질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식품에너지함량(energy value of the food)의 20%가 단백질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비타민(名)] 그리고/또는 [무기질(名)]의 급원(Source of [name of vitamin/s] and/or [name of mineral/s])

비타민 그리고/또는 무기질의 급원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적어도 Directive90/496/EEC의 부록(Annex)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의미 있는 양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거나 식품에 비타민 및 무기질 그리고 어떤 다른 성분의 첨가 (addition)에 관한 2006년 12월2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1925/2006의 제6조 (1)에 따라 승인된 면제(예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양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고[비타민(名)] 그리고/또는 고[무기질(名)](High [name of vitamin/s] and/or [name of mineral/s])

고비타민 그리고/또는 고무기질 식품이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적어도 ‘[비타민(名)] 그리고/또는 [무기질(名)]의 급원’함량의 두 배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영양소(名)] 또는 [다른 성분(名)] 함유(CONTAINS [name of the nutrient or other substance])

영양소나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라는 강조표시나, 본 규정 내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본 규정의 적용 가능한 조항들, 특히 제5조를 따르는 제품의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비타민 및 미네랄의 경우에는 ‘~의 급원(source of)’이라는 강조표시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영양소(名) 증가 (Increased [name of the nutrient])

비타민 및 무기질 이외에, 한두 가지 영양소 함유량이 증가되었다는 설명이 되어 있는 식품의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그 제품이 ‘~의 원천(source of)’이라는 강조표시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경우와 함유량 증가가 유사 제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어도 30%인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영양소(名) 감소 (Reduced [name of the nutrient])

비타민 및 무기질 이외에, 한두 가지 영양소 함유량이 감소되었다는 설명이 되어 있는 식품의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함유량의 감소가 유사 제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어도 30%인 경우에만 그 표시를 넣어도 좋다, 미량영양소(micro nutrients)를 제외하고, Directive 90/496/EEC내에 정해져 있는 대로 기준량(reference values)에서 10% 차이는 허용되어야 하며, 나트륨이나 그와 등가의 소금의 경우에는, 25%차이가 허용되도록 한다.

라이트/저칼로리(Light/lite)

어떤 제품에 칼로리가 적다라는 ‘light’ 또는 ‘lite’ 라는 강조표시와 소비자에게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식품의 강조표시이든지 ‘감소(reduced)’라는 용어(term)에 정해 놓은 조건들과 동일한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강조표시(claim)에는 그 식품을 ‘light’ 또는 ‘lite’로 만드는 특징에 대한 표시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천연(naturally/natural) 영양강조표시 사용을 위해 부록(ANNEX) 내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에 자연적으로 부합하는 식품의 경우 ‘천연(naturally/natural)’이라는 용어는 그 강조표시(claim) 앞에 접두어(prefix)로 붙여 사용 가능하다.

3.2 협의체 구성을 통한 Brainstorming과 정규 전문가 회의 실시

- 일시 : 2012년 6월 15일 ~ 2012년 12월 27일 (총 8회 실시)
- 관계 부처(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와 협회(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공업협회, 유가공협회, 유가공협회, 육계협회, 양계협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과 부처 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구성된 협의체는 국내의 축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살피고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현황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협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과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 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며 수시로 연구의 기본 방향과 진행 상태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총 7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각 차수 당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차수	간담회 내용
1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능성 표시 현황 분석
2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능성 표시 현황 분석
3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절차 및 기준 분석을 통하여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4	일본, 미국, 유럽의 기능성 표시사항 및 국내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분석
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비타민에 대한 기능과 표시 예 및 표현가능사례 분석을 통한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미네랄에 대한 기능과 표시 예 및 표현가능사례 분석을 통한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7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기능과 표시 예 및 표현가능사례 분석을 통한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8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담당 기관(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기능성 축산물의 관리 방안 논의

- 현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기능성 입증과 표시방법 관련하여 일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방법에 대하여는 개별법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산업체의 공통적인 의견은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사항을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관리하게 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중규제를 받게 되므로 현재 축산물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법을 일원화 되었으면 함
- 기능성과 유용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사양부터 최종제품까지 기능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사료를 기능성 원료로 먹이는 것은 기능성 축산물이 아닌 친환경으로 생각해야 함
- 일본, 미국, EU에 비하여 국내 기능성 표시 허용범위가 좁으며 기능성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따라서 외국에서 허용하는 기능성 표시 내용 수준만큼 기능성 표시 허용 범위가 완화되길 바랍

3.2.1 제 1차 간담회

일시 : 2012. 6. 15(금) 14:00 - 16:00

장소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4호(교수회의실)

주제 :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능성 표시 현황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철희	농림수산식품부	이병석	(사)대한한돈협회
최민지	농림수산식품부	목철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송성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입광세	(주)매일유업
박정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원은숙	서울우유협동조합
하태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유경모	CJ제일제당(주)
최영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유경모	CJ제일제당(주)
하혜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윤성식	연세대학교
최진성	(사)한국육가공협회	김진만	건국대학교

주요 내용 요약

간담회 주요 안건 I (농림수산식품부)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세부운영 방안에 대하여 축산물 산업체에서 반영해줬으면 하는 방향 및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
- 또한, 기능성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축산물 담당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능성축산물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 제시 바람
- 기능성 표시 문구에 대한 것과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 의견 제시 바람

산업체의견 수렴

- 업체에서는 기능성 축산물 법제화에 찬성, 소비자도 원하고 있으며,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음
- 기능성 제품 개발하여 효과까지 입증하여도, 식약청에서 그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까지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이미 입증된 성분까지 다시 임상 실험하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 중규제에 제약이 많으며, 이에 제도의 간소화가 시급. 또한, 육가공업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에 대한 법을 맡아주길 바람(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법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되기 원함)
-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법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원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음, 여기서 말하는 일원화는 하나로 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축산물위생법이면 그 법에 맞도록 일원화해야 하고, 식품위생법이면 그 법에 맞게 일원화해야 한다는 뜻임
- 처음부터 최종제품까지 기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원관리가 맞다고 생각함

3.2.2 제2차 간담회

일시 : 2012. 6. 22(금) 10:30 - 12:00

장소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4호(교수회의실)

주제 :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능성 표시 현황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신영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정희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정영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임광세	(주)매일유업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위기정	(주)매일유업
최영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원은숙	서울우유협동조합
하혜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영훈	(주)남양유업
임홍열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정희	(주)한국야쿠르트
박상도	(사)한국유가공협회	신영섭	(주)빙그레
김시환	(사)한국유가공협회	윤성식	연세대학교
최진성	(사)한국육가공협회	김진만	건국대학교
이병석	(사)대한한돈협회		

주요 내용 요약

산업체의 의견 수렴

- 본 회의는 축산식품의 대표 현장의 시각을 각 부처에게 전달하고자 함
- 오늘날 소비자는 식품을 통한 건강유지, 웰빙, 로하스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함
- 이에 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식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유용성으로는 관리제어가 불가능
- 이로서 기능성축산물을 관리 및 규제할 운영방안 및 부서가 필요함
- 대부분의 산업체는 오직 기능성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법령 제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
- 문제는 축산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관할이나, 기능성표시를 하고자 할 때 이에 따른 규격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능성표시를 할 때 다른 부처의 관할이므로 관리부처가 달라 관리부처일원화에 따른 기능성표시 완화를 요함
- 3차회의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제시 및 토픽을 선정하여 각 부처 및 산업체,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건강기능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 외국법령을 발췌하여 세부내용 협의하고자 함

산업체의견 요약

- 소비자의 욕구에 반영하여 축산물에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조속히 되도록 추진
- 기능성 표시를 규제가 아닌 완화로
- 단일부처로 통일하여 단일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2.3 제3차 간담회

일시 : 2012. 8. 10(금) 15:00 - 17:00

장소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4호(교수회의실)

주제 :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절차 및 기준 분석을 통하여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민지	농림수산식품부	전기훈	(주)매일유업
김지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최귀현	(주)남양유업
박정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이정희	(주)한국야쿠르트
이미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정희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시환	(사)한국유가공협회	신영섭	(주)빙그레
최영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윤성식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예현수	(주)매일유업	김진만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주요 내용 요약

농림수산식품부 진행 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에 대한 TFT팀을 구성하여 법안 및 고시 준비 중
-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표시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 등과 관련이 있음
- 건강기능식품법을 통한 일원화 방법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통한 기능성 축산물의 개별적인 관리방법을 고려중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 중

축산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급함

-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이중규제로 축산업계의 자유로운 제품개발 등의 업계발전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오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자유로이 표현 및 광고를 하지 못하므로 제품 다양화와 품질개선에 대한 의욕 저하가 우려됨
- 특히, 사료단계에서 첨가되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 건강기능식품은 소재 위주의 표시가 대부분인데, 사료단계에서의 기능성 물질 첨가는 최종제품에서 적정 기준치만큼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은 사육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사양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3.2.4 제4차 간담회

일시 : 2012. 8. 17(금) 14:00 - 16:00

장소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4호(교수회의실)

주제 : 일본, 미국, 유럽의 기능성 표시사항 및 국내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분석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송성욱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기정	(주)매일유업
김지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유경모	(주)CJ 제일제당
이동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원병렬	(주)푸르밀
최진성	(사)한국육가공협회	최귀현	(주)남양유업
김시환	(사)한국유가공협회	신영섭	(주)방그레
박상도	(사)한국유가공협회	서정희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이병석	(사)대한양돈협회	김진만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김일근	한국식품산업협회	윤성식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임광세	(주)매일유업		

주요 내용 요약

세부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

- 기능성과 유용성의 용어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함유량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각각에 적합한 용어 정의가 필요
- 기능성 원료를 2개 이상 사용한 복합원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

사양과정에서의 기능성 축산물 표시기준

- 사양과정에서 기능성사료와 천연사료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표시광고로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유용성 표시 기준에서 ‘녹차 먹인 돼지’는 허용되지만 ‘녹차돼지고기’는 허용되지 않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외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규 국내 적용방안

- 일본, 미국 등 제외국의 표시광고 사례에 비해 국내 권장 기능성 표현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힘들
- 일본의 경우 유산균의 strain 이름까지 표시하여 기능성표시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음

3.2.5 제5차 간담회

일시 : 2012. 8. 27(금) 16:00 - 18:00

장소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4호(교수회의실)

주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비타민에 대한 기능과 표시 예 및 표현가능사례 분석을 통한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지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기정	매일유업
김일근	한국식품산업협회	임광세	매일유업
원병렬	푸르밀	김진만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박상도	유가공협회	윤성식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김시환	유가공협회		

주요 내용 요약

세부규정 마련에 관한 논의

- 사양과정에서 무항생제, 무농약 등 축산물 제품 제조 시 기능성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규정이 필요
- 농식품의 경우 부족한 영양소가 많으므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가 많으나 축산물의 경우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축산물에 맞는 표시광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적절한 표시광고 예시를 마련하여 제안하면 표시광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업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필요

-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정보공유를 통한 산업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대한 국내외의 표시광고 사례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국내와 국외의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규 비교

- 제외국 표시광고에 비해 국내 표시광고는 학술적이고 사전적인 내용만을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떨어짐
- 미국의 사례에서 축산물은 USDA에서 담당하고, 기능성은 FDA에서 관리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있고, 기능성 식품은 Dietary supplement(식사 보충물)개념이 강한 식품첨가

물에 가까우므로 식품에 가까운 것으로 규정하는 국내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3.2.6 제6차 간담회

일시 : 2012. 9. 21(금) 16:30 - 18:00

장소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2층 소회의실

주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미네랄에 대한 기능과 표시 예 및 표현가능사례 분석을 통한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은옥	농림수산물식품부	전기훈	(주)매일유업
최민지	농림수산물식품부	이유영	(주)매일유업
송성옥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원은숙	서울우유협동조합
오순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원병렬	(주)푸르밀
박상도	(사)한국유가공협회	최귀현	(주)남양유업
이정면	(사)한국유가공협회	강규희	한국야쿠르트
입광세	(주)매일유업	윤성식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위기정	(주)매일유업		

주요 내용 요약

기능성 축산물 허가 기관의 일원화

- 기능성 축산물 인증이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할 경우 축산물 허가는 농림수산물식품부, 기능성 허가는 식약청에서 진행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업체의 혼란을 가중시킴
- 기능성 축산물 인증과 축산물 허가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단일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해야함

식약청과 농림부의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관련 이중규제

- 축산물 업체에서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업체에서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에 대하여 두 기관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두 번의 같은 허가를 받게 되므로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규제로 인해 업체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됨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이중규제를 개선하고 일원화 하여야 함
- 축산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함

3.2.7 제7차 간담회

일시 : 2012. 10. 25(금) 14:00 - 16:00

장소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4호(교수회의실)

주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기능과 표시 예 및 표현가
능사례 분석을 통한 기능성 축산물에 적용 방안 논의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지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혜정	(주)빙그레
김시환	(사)한국유가공협회	윤성식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김일근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주요 내용 요약

농림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식약청고시를 검토하여 논의 중

- 기능성원료 범위(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이의 추출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어떠한 기능성 원료든 첨가물 개념으로 축산물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원료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축산물의 관리법에서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13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뱀이나 두꺼비의 동물성 원료의 분류에 대해 고민 중
- 식약청의 고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유제품의 유산균 수와 같이 축산물의 특징적인 부분에서 적용방안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함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법 시행 후 현행 유용성 표현에 대한 변화

- 유용성 표현을 현재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능성 축산물 기준규격 고시에 가공 기준이 있으므로 사용가능
- 하지만 현재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
- 함유량의 결정이 매우 중요함

기능성 축산물 기준 완화

- 업체 측은 기능성축산물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현행 기준보다 완화되어 일반 가공업체에 적용하기 쉬운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일례로 기능성 원료 중 타가토스는 기능성 표시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량보다 많은 양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움
- 표시광고 심의기준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준에서 가능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고심하고 있음
- 표시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통과하여도 식약청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업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음

3.2.8 제8차 간담회

일시 : 2012. 12. 27(목) 14:00 - 16:00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실

주제 :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담당 기관(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기능성 축산물의 관리 방안 논의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재한	농림수산식품부	김진만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성식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제4장 결론 및 제언

근래에 들어 식품(food)의 기능이 제3차 기능인 기능성식품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의학, 식품학, 영양학 등 생명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식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까지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식과 생활 패턴은 최근 만연하고 있는 웰빙(well-being) 현상과 결합하면서 기능성 식품을 통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성분의 섭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 시장의 확대는 식품 업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정체기에 들어선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기능성 축산물의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 최근 정부의 다자간 FTA체결로 인하여 외국산 기능성 축산물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해외 기능성 수입축산물이 국내에서 기능성을 표방하여 판매될 경우 국내 제품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기능성축산물에 대한 법적 허용은 물론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여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의 기능성을 전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와 기능성 축산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광고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그 세부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능성축산물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과학적 근거 없는 과대·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는 1980년 일본에서 식품의 기능성 연구를 시작하여 1991년 최초로 “특정보건용식품”을 규정하면서 생겨난 용어로서 현재 기능성식품에 관한 정의와 명칭은 각국 별로 조금씩 다르다. 국내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기능성식품은 dietary supplement로 규정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기능성 표시 유형으로는 건강강조표시, 구조/기능 강조표시, 영양소 함량표시가 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식품은 보건기능식품 내의 특정보건용식품(FOSHU)에 포함되며 지표물질(biomarker)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고 의학·영양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질병위험 감소표시가 허용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식품보조제(Food Supplement)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유형으로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로 구분하고 있다. 전

자는 영양소함량강조표시, 비교 강조표시로, 후자는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기타기능 강조표시, 질병위험 감소표시로 각각 세분된다(표 46).

표 46. 각국의 기능성 식품 관련 법률의 분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대한민국
명명	기능성식품 (Functional Foods) / 식이보조제 (Dietary Supplements)	자연건강식품 (Natural health product)	대체 의약품 (Complementary medicine)	식이보조제/ 기능성식품 (Functional Foods)	특정보건식품 (Food with Health Claims)	건강기능식품
분류	영양소 함량 표시 (Nutrient content claim)	표준정보 (Monograph)	일반수준 표시 (General claim)	기능성 건강표시 ("Function" health claim)	영양기능식품 (Foods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구조기능강조 표시 (Structure/Function Claim)	전통적 건강표시 (Traditional health claim)	중간수준 표시 (Medium claim)	새로운 기능성 건강표시 ("New function" health claim)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NLEA Authorized /Qualified /Authoritative)	비전통적 건강표시 (Non-traditional health claim)	높은수준 표시 (High level claim)	질병감소 및 아동성장관련 건강표시 (Disease risk reduction and child development or health claim)	특정보건용 식품 (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증	미국식품의약 안전청(FDA)	헬스캐나다 (Health Canada)	호주뉴질랜드 식품안전기구 (ANZTPA)	유럽식품 안전청 (EFSA)	소비자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한편 국내의 관련법에서 규정된 건강기능식품이란 식약청에서 동물시험, 인체시험 등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한 기능성 원료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일컫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누구든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고시형'과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평가를 통하여 인정받은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된다.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총 83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다(표 5-11, 34-41쪽).

개별인정형 원료(표 13, 44-47쪽)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방생 위험감소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으로 나뉘며 생리활성기능의 경우 기능성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능성 축산물(functional livestock products)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나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및 개선에 효과가 있는 축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총 8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부처(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 및 협회, 축산 관련업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무엇보다도 축산 관련업체의 일관된 주장은 기능성 축산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이중규제를 지양하고 일원화 하되, 기능성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가급적 최소화시켜 달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청으로 집약된다.

첫째,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일반축산물(가공품 포함)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능성 축산물도 농식품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유(乳)성분이 55%인 기능성 조제분유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더. 조제유류’에 따르면 조제분유의 경우 유성분이 60% 이상이면 축산물에 해당되므로 농식품부 인·허가 사항이고, 그 미만이면 일반식품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관리 품목으로 규정되므로 유성분이 55% 함유된 기능성 조제분유 제품은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왜 조제분유의 경우 유성분이 60% 이상 함유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러한 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명확한 논리와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고질적인 지적사항이다. 따라서 국내 축산물의 정의가 국제적인 조화를 유지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와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현행 농식품부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시행규칙에 오직 “유용성”표시(별표 14)만 허용되고 있을 뿐 유용성의 평가 및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유용성 표현조차도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기능성의 인정에 있어서 지표물질(biomarker)의 함량 및 용법 등이 의약품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축산식품이 가지고 있는 원료의 특

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축산식품이 가지고 있는 축산물 원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특수한 사양 환경 하에서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사료를 급여하여 가축의 건강향상은 물론 현저히 동물약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생산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최종 산물(유성분 또는 육성분 등)에 이미 기능성을 인정받은 소재나 지표물질의 함량이 존재하여야 기능성 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라는 개념은 재배단계(축산물의 경우에는 사육 및 사양과정), 수확단계, 가공 및 보관단계, 운반 및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축산물의 경우에는 사육 및 사양과정에서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사료의 급여로 생성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산물에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능성 물질의 함량이 일부 부족하다고 하여 기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기능성의 인정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인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온전한(wholesome) 기능으로 그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아무리 기능성 축산물이 건강에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 기능성 표시가 오·남용 될 경우에는 과대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대중의 피해는 물론 식품 전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표시·광고에 관한 평가와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반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2년 4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일반법’을 개정키로 하면서 기능성 입증과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개별법을 정하여 관리하기로 협의하였다. 따라서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방안(1안)과 기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축산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2안)의 두 가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을 원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식품과 축산물을 분리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는 관련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해당부처 공무원 등 약 30명 내외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사제도의 운영방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향후 국내에서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수입되거나 신규로 개발되어 출시되었을 때 인·허가 및 관리업무가 폭주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 소홀에 의한 책임 등을 공무원 및 정부가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기능성 축산물 제도의 도입기에는 해당

부처가 주도하여 기능성 및 표시·광고의 심사제도를 정착시키되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확립되면 점차 업무를 민간 전문가위원회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좋은 제도를 찾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에 따라 2012년 12월 7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축산물에 기능성 축산물을 추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축산물의 경우 ‘기능성 표시’ 적용 사례가 전무하며 이는 동일 영업행위 및 영업장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용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법률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종류에 기능성 축산물을 추가하고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에 관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과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표 47).

표 47.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2월 7일 국회의원 발의 [대표발의자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p> <p><신 설></p> <p>3. ~ 12. (생 략)</p> <p>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생 략)</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말한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함으로써 기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p> <p>2의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p> <p>3. ~ 12. (현행과 같음)</p> <p>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필</p>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요하거나 기능성이 있는 축산물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3(광고심의 이의신청) ① 제6조의2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축산물의 기능성표시기준) ① 기능성 축산물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기능성 축산물이라는 문자 또는 기능성 축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 설>

<신 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및 신고) ① -----축산물을 가공(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②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능성을 가진 축산물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목 제조의 보고·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영양가, 기능성 및 품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표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14. (생 략)

<신 설>

15. · 16. (생 략)

제45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9. (생 략)

<신 설>

<신 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제6조의2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 16.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조의2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4.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p>10. ~ 16.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7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신설></p> <p><신설></p> <p>1.·2. (생략)</p> <p>④ (생략)</p>	<p>자</p> <p>10. ~ 1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p> <p>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2년 12월 24일 축산식품을 포함한 일반식품 형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기준을 명확화 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표 48).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일반식품(축산식품 포함) 형태 제품의 심사대상, 인정기준, 제출자료 등에 대해 영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거법령과 내용 등을 개선하였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정함에 있어 심사대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인정기준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했으며,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축산식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축산식품 포함) 형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인정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잉 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및 나트륨 등 5개 영양성분에 대해 그 함량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48.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현행	개정안
<p><u>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p>	<p><u>제3조(심사대상)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원료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② 이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의 인정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영양성분을 사용하는 식품, 공통제조기준에서 정한 제품의 형태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특수용도식품, 주류, 분유류, 조제유류 등은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제4조(인정기준)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영양성분을 사용하는 식품, 공통제조기준에서 정한 제품의 형태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특수용도식품, 주류, 분유류, 조제유류 등은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이하 “기능성 원료등”이라 한다)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원료 또는 성분의 기능성 원료등 인정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지 아니한 원료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원료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제4조(인정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의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제17조(제출자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제19조(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제17조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식품의 유형에 관한 자료

제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서 정한 유형을 따라야 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생략)

7.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

가.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 유형 등에서 기능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 임상시험관리기준(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b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ICH GCP)에 따라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인체적용시험계획에 의해 수행된 인체적용시험의 최종보고서 또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것(게재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자료) 제3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

1.~8. (현행과 같음)

제19조(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제17조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식품의 유형에 관한 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3.~6. (현행과 같음)

7.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해당 기능성 확인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자료는

-----.

8. (현행과 같음)

8. (생략)

제20조(건강기능식품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준 및 규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총 식이에서 섭취하게 되는 기능성 원료의 양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일 것
4.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및 당류의 함량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도일 것

제20조(건강기능식품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가. 일반식품, 보충제 등 총식사를 통해 섭취되는 기능성원료의 섭취량이 일일상한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

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및 나트륨은 별표 2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

다. 제조과정에 사용된 그 밖에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지 여부

라. 제조하려는 건강기능식품 중 유해물질 규격,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과 그 시험방법이 적합한지 여부

2. 기능성과 관련된 사항

가. 기능성 원료등이 최종 제품에서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일섭취량 등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나.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의 일일 섭취량이 통상 식생활을 통해 섭취가능한 양인지 여부

다. 제조하려는 건강기능식품 중 기능성원

	<u>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과</u> <u>그 시험방법이 적합한지 여부</u> <u>라. 제19조제7호가목에 따라 제출된 자료</u> <u>에서 시험설계, 시험대상자 등이 적절</u> <u>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및 통계적으</u> <u>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부</u>
--	--

현재 기능성 축산물, 혹은 축산물 관련 법령이 지정된 나라는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축산물은 식품의 범위에 속하나, 일반 식품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축산물이 다른 기능성 식품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들의 표시·광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기능성 식품 법규 및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현황을 분석하여 기능성 축산물의 정의, 기준 및 규격·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세부 운영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능성 축산물의 인·허가 및 기능성의 표시·광고에 대한 이중규제를 지양하고 현재 축산물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1 기능성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과 표시 관련 법률 및 표시방안 제안

(가) 기능성 축산물의 정의, 기준 및 규격·표시 관련 법률 제안

제품의 규격은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최종 구매 시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료의 인정 뿐 아니라 기능성의 표시 광고의 심의와 표시기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우수 건강 기능 식품 제조 기준, 건강기능 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록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따르기 때문에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기능성에 대한 표시의 기준은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합리한 제품 구매 발생 방지 및 오남용 등의 잘못된 정보의 전파를 방지하고,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표현을 통해 신체기관의 강화 및 건강상태의 유지, 조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선택 및 섭취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였다(표 49).

표 49. 기능성 축산물 기준 및 규격과 표시 관련 법률 제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법률 (제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p> <p>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p> <p>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p> <p>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p>	<p>제○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기능성 축산물"이란 축산물 내에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함유시키거나 증가시킨 축산물을 말한다. 기능성 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가축 내 특정 성분이 질병위험 감소 및 예방 등 건강기능을 조절 한다는 것이 입증된 축산물</p> <p>(2) 신체기관의 강화 및 건강상태를 유지, 조절한다는 것이 입증된 축산물</p> <p>(3) 특정 성분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축산물</p> <p>(4) 특별한 사육 및 사양관</p>

<p>다.</p> <p>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p>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p> <p>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p> <p>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p>	<p>말한다.</p> <p>4.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p> <p>5.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무상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p> <p>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리를 통한 축산물</p> <p>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p> <p>3. "표시"라 함은 기능성 축산물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p> <p>4.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p>
---	--	--

<p>말한다.</p> <p>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p> <p>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p>		
<p>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p> <p>①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p> <p>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p> <p>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p>	<p>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p>	<p>제○조 (기준 및 규격)</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에 관한 기준과 표시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기능성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기능성 축산물에 들어 있는 기능성</p>

<p>한 기준</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p> <p>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p>물질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기능성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등급에 관한 기준
	<p>제15조 (원료 등의 인정)</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p>	<p>제○조 (기능성 표시의 인정)</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부터 당해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토 후 등급별 기능성 축산물을 인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④ 신체 기관의 강화 및 건강상태의 유지, 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은 다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의 유지에 좋다.’, ‘○○은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은 ○○의 공급원이 된다.’, ‘○○은 ○○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은 ○○를 촉진할 수 있다.’, ‘○○은 ○○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p> <p>⑤ 최종 제품에 특정성분을 일정 양 함유한다는 표현은 다음에 한하여 허용한다. <‘○○의 ○○mg/ml 이상 함유.’, ‘○○의 ○○% 이상 포함.’/하루 섭취량 표기></p> <p>⑥ 특정 사양관리 및 사료급여, 처리를 한다는 표현은 다음에 한하여 허용한다. <‘○○를 먹인 ○○’/하루 ○○mg/ml 급여 표기></p>
--	---	--

<p>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p> <p>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p> <p>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표시기준)</p> <p>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조 (표시기준)</p> <p>① 기능성 축산물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축산물이라는 문자 또는 기능성축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기능성 축산물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p> <p>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p>	<p>제18조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p> <p>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p>	<p>제○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p> <p>① 누구든지 기능성 축산물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기능성축산물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p>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	---

(나) 등급에 따른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 방안 제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기능’으로 나뉜다. ‘영양소기능’은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고,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 기능을 말한다. 또한,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은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이다. 기능성 근거자료가 질병발생위험감소를 나타내며 확보된 과학적 근거자료의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높을 경우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이 인정되며,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낸 경우 ‘생리활성기능’이 인정된다. 생리활성기능의 경우 기능성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생리활성기능 1, 2, 3 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기능성 축산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증거 자료에 따라 1) “가 등급”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질병 감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축산물, 2) “나 등급”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건강상태 유지·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축산물, 3) “다 등급”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특정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축산물, 4) “라 등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육 및 사양관리를 통한 기능성 축산물로 총 4가지의 등급으로 세분화하며(그림 9) 각 등급의 기능성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위한 인증 평가 절차 방안 및 필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그림 10, 표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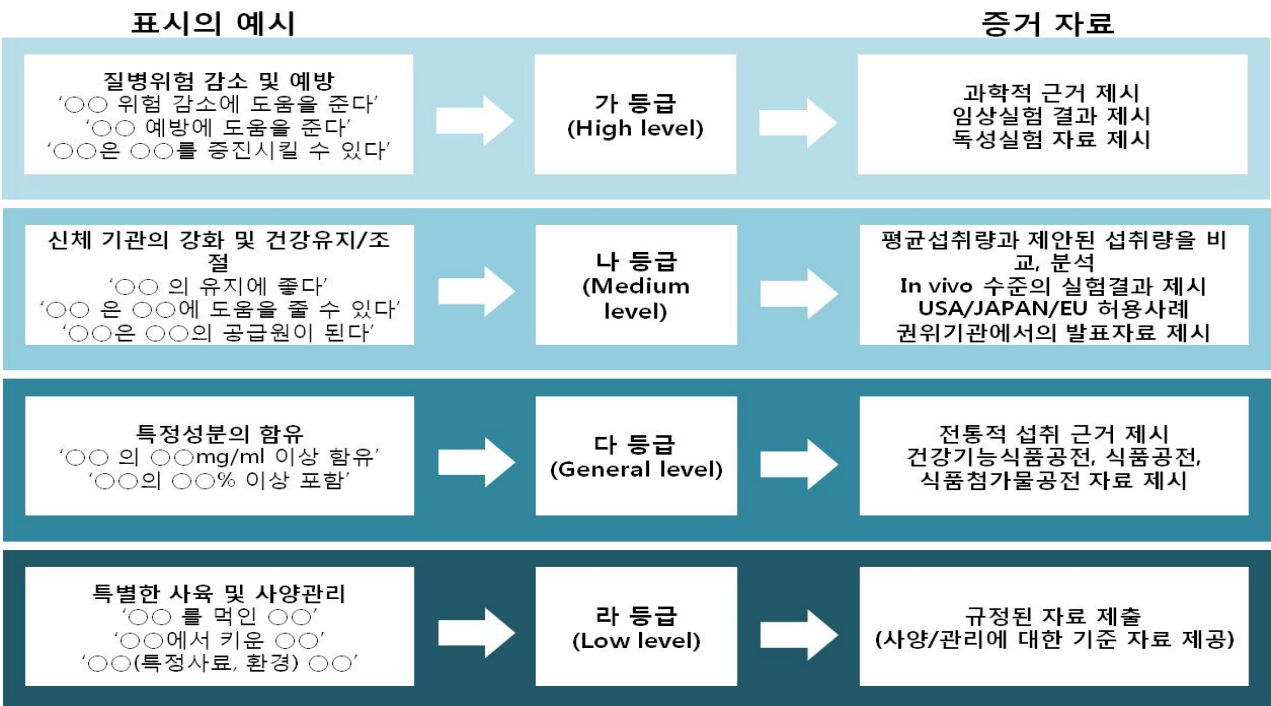


그림 9. 기능성 축산물의 등급 별 표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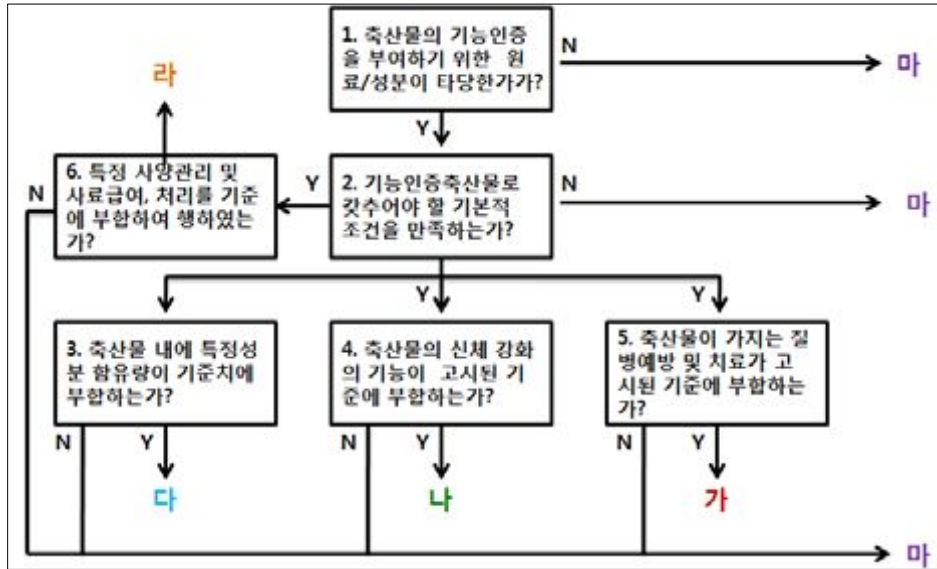


그림 10. 기능성 축산물의 인증 및 평가 절차 방안

축산물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능성의 등급을 지정하기 위해 모식도에 따라 가, 나, 다의 세 등급 중 하나를 받은 제품은 기능성 축산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세 등급 이외의 라 등급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인정기준 및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기능성 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종 기능성 축산물로서의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심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0. 기능성 축산물 인증 위한 증빙자료 예시

등급	증빙 자료
가 등급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¹⁾
	전통적 섭취근거 제시 ²⁾
	과학적 근거 제시/인체 실험 제시/생물학적 유용성 제시 ³⁾
	과학적 근거 제시/in vitro 실험 제시
	영양평가자료 평균섭취량과 제안된 섭취량 비교 자료 ⁴⁾
독성시험자료 ⁵⁾	
나 등급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¹⁾
	전통적 섭취근거 제시 ²⁾
	과학적 근거 제시/인체 실험 제시/생물학적 유용성 제시 ³⁾
	영양평가자료 평균섭취량과 제안된 섭취량 비교 자료 ⁴⁾
다/라 등급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¹⁾
	전통적 섭취근거 제시 ²⁾

- 1)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물질에 대한 독성 또는 안전성 자료 제출
- 2) 섭취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의 제시
- 3) 원료의 섭취로 인하여 다른 영양성분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한 자료 : 생물학적 유용성 자료, 중재시험, 역학조사의 인체 시험자료
- 4) 평균 섭취량과 제안된 섭취량을 비교·분석한 자료
- 5) 단 회 투여독성시험(설치류, 비설치류), 3개월 반복 투여독성자료(설치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이상시험, 소핵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원료의 특성에 따라 생식독성, 항원성, 면역독성, 발암성시험을 추가로 시험해야 함.

4.2 기능성축산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안

우리나라의 기능성 및 유용성에 대한 표현은 식품의 형태를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안하려고 한다(표 51). 기능성축산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며 심의위원은 축산물 관계 공무원 및 축산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축산물 관련 단체의 장, 축산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 수의사 및 의사, 약사, 법률가 등 전문가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 51. 기능성축산물 심의위원회 관한 법률 제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법률 (제안)
<p>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 	<p>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 <p>②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조 (기능성축산물심의위원회)</p> <p>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기능성축산물심의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성 축산물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능성 축산물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주요사항 <p>② 기능성 축산물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기능성축산물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축산물심의위원</p>

<p>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p> <p>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③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p>
<p>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p>	<p>제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p>1. 건강기능식품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p>	<p>제○조 (기능성축산물 심의위원회 구성)</p> <p>① 법 제○조에 따른 기능성 축산물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p>1. 축산물 관계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가.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p>

<p>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가.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건강기능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p> <p>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종사하는 자</p> <p>나. 축산물·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다. 축산물 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축산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p> <p>라. 수의사 및 의사, 약사, 법률가 등 전문가</p> <p>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	---

4.3 기능성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법률 제○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제2항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제안한다.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한다.

기능성 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표 52). 기능성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며 심의위원은 축산물 관계 공무원 및 축산물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축산물 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축산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 수의사 및 의사, 약사, 법률가 등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 52. 기능성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법률 제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법률 (제안)
	<p>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관한 업무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p> <p>① 기능성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능성축산물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축산물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관한 업무를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p> <p>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p>제○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p> <p>① 제○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조제○항에 따른 기능성축산물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p>
<p>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p>	<p>제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p>1. 건강기능식품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p>	<p>제○조 (기능성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구성)</p> <p>① 법 제○조에 따른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p>3. 축산물 관계 공무원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p>

<p>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p>	<p>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가.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건강기능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p> <p>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가.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p> <p>나. 축산물·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다. 축산물 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축산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p> <p>라. 수의사 및 의사, 약사, 법률가 등 전문가</p> <p>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	---

4.4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 기준 제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은 목적, 심의대상 및 기준, 심의신청 및 결과통보, 재심의 및 재심의 권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사항이 있다. 기능성 축산물 표시 광고 심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 「기능성 축산물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 규정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
2. 법 제○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5조·제6조에 의한 심의나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3조(심의기준)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기능성 축산물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5. 법 제○조 또는 법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기능성 축산물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법 제○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법 제○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심의신청)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능성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3.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신청 받은 심의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 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을 수정한 신청인은 표시·광고 전에 수정한 내용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통보받은 심의기관은 수정한 내용이 처음 심의한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심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 ① 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재심의 권고)

- 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심의기관에 재심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을 권고 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 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심의 및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능성 표시·광고내용
2. (재)심의결과 통보서 사본
3. 기타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한다.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각하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과 심사는 제3조에 규정된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기능성 표시·광고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수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조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필

한 것으로 본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표시)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표시와 그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고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관은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에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축산물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축산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축산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

3. 수의사 및 의사, 약사, 법률가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을 인정할 경우 그렇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기관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회의 및 의사)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수수료)

심의수수료는 법 제○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심의보고)

심의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종료 15일 이내에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규정)

위원장은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5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자체세부 운영규정 제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자체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체세부 운영규정에는 목적, 세부심의기준, 심의방법, 회의개최, 심의신청, 재심의의 신청 및 처리, 심의 표시 등의 사항이 있다. 기능성 축산물 표시 광고 자체세부 운영규정은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자체세부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 자체세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능성 축산물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심의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심의기준)

- ① 심의는 기능성 축산물에 관한 법률 제○조 규정에 의한 기능성 축산물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3조(심의방법)

- ① 심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직접심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서면심의 안건은 단순한 시정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4조(회의개최 등)

-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는 1주일 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한다.
-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성원이 부족한 때에는 타 분과위원회 소속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심의안을 제출한 해당 업체 또는 그룹소속 위원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최 장소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5조(심의신청)

① 신청인은 심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호서식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구비서류	첨부물
방송매체	기능성 광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 (기능성내용, 자막, 도표, 그림 등)	기능성 표시·광고내용
인쇄매체, 인터넷 등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방송매체의 구비서류 중에서 화면설명에 대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제6조(재심의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수정적합,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받은 기능성 표시·광고 중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기능성표시·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자구수정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의 없이 기능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기 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해 작성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내용과 변경하고자하는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인은 기능성 표시·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 표시·광고의 수정내용을 통보 받은 위원장은 수정내용에 대한 재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표시·광고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심의 신청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의 처리)

- ① 재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성 표시·광고 재심의신청서를 심의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1.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2.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물
- ② 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내용이 본래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심의필 표시)

- ① 심의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심의대상	심의표시	심의필도안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	- 방송중 자막 또는 멘트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결과통보서에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심의필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적합을 받은 경우 수정한 기능성표시·광고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전에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법사항 보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결정대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 기준 및 자치세부 운영규정 제안 내용 이외의 대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준별 세부지침, 심의세칙,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나)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 절차 및 심의신청 구비서류

기능성 축산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의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다음과 같으며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 신청서의 예시는 표 53와 같다.

- ①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신청서
- 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받을 광고시안 1부
- ④ (국내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증, 제조방법설명서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제품설명서(성분배합비율 포함)
-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함)
- ⑥ 품목제조신고증(국내제품)이 없는 경우 : 품목제조신고서
수입신고증(수입제품)이 없는 경우 : 제품설명서

표 53.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신청서 (예시)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업소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영업(신고)종류/ 영업(신고)번호			
심의제품	제품명			
	축산물 유형			
	주요기능성원료			
심의내용	기능성 표시문구			
	광고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심의광고문구		

기능성 축산물 광고 사전심의 기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상기 제품의 광고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 일자 :

신청인 :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들을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심의의 지연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재심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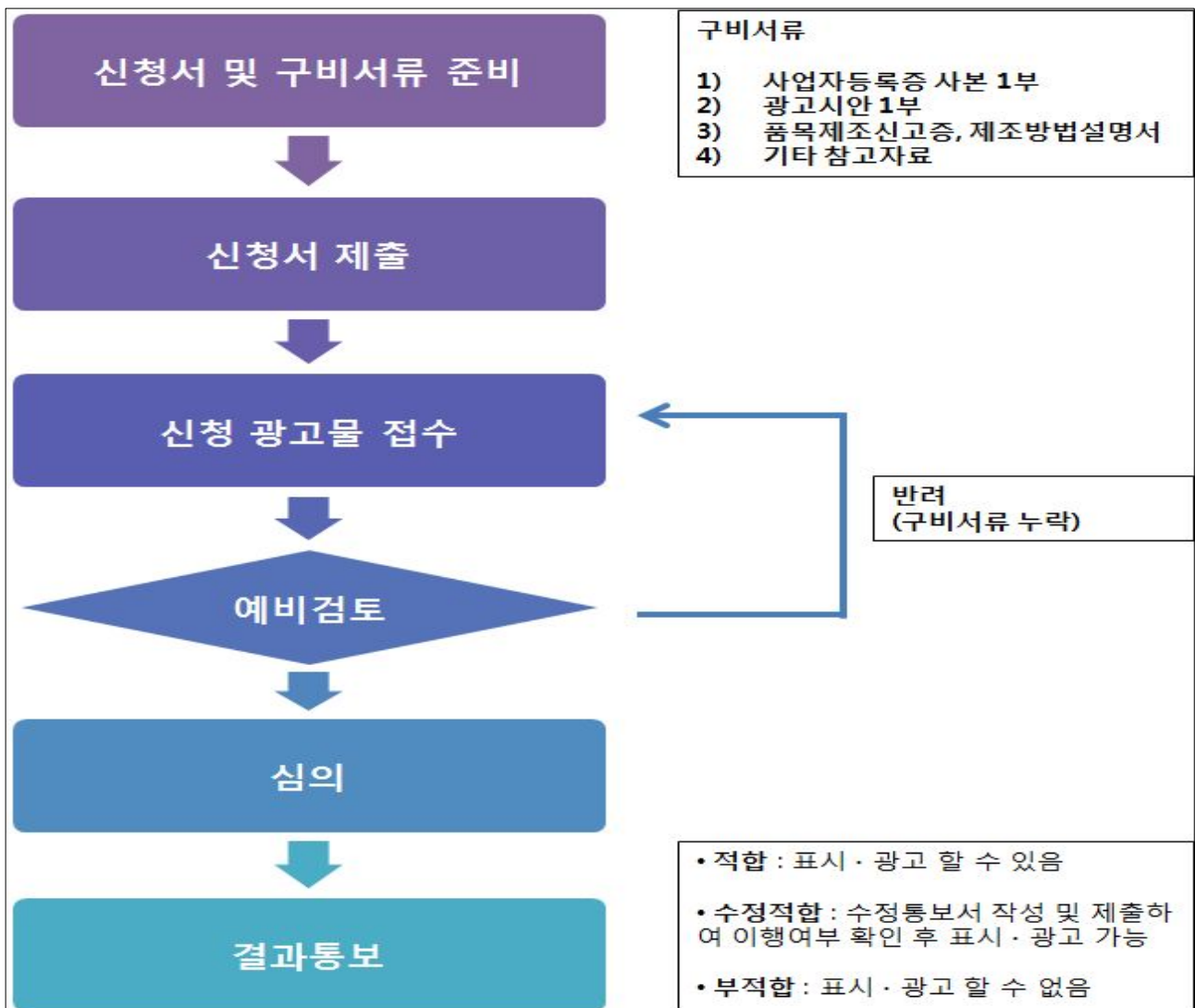


그림 11. 기능성 축산물 표시·광고 심의 절차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기여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과거의 식물성 위주의 음식섭취에서 현재는 육류와 같은 축산물 중심의 의식섭취가 확대되어 이제는 오히려 각종 성인병 및 비만 등과 같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깊어서 음식에 대한 개념도 물량 중심에서 점차 품질(quality), 안전성(safety), 다양성(variety), 건강성(health)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능성 축산식품의 소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 특성(관능적, 영양학적 특성, 안전성, 가격 편리성 등)과 소비자 및 환경과 관련된 요소(심리적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혹은 교육상의 측면, 경제적 상태, 기후, 법률 등) 들이다. 또한 이들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중요한 급원으로서 자체적으로 기능성 식품이기도 하지만,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염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의 유발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좋은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고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해한 물질들을 감소시키거나 유용한 물질을 첨가 또는 급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기능성을 표방하는 축산물에 대한 관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Docosahexanoic acid (DHA)와 같은 지방산을 활용한 우유나, 장내 유익균의 증식 및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프락토올리고당, 라피노스를 사용한 유제품이 활발히 판매가 되고 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황오리 등 다양한 축종들을 활용하여 기능성 축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식육제품의 경우, 식이섬유, 천연 향산화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의 기능성은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능성의 표시 및 광고에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은 예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가 과대·허위표시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보완을 통한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축산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반영한 국내 기능성 축산물의 관리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으며, 세부관리기준과 인증 방안, 기능성 표시·광고 운영방안 등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2년 12월 7일 축산물의 종류에 기능성 축산물을 추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종류에 기능성 축산물을 추가하고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에 관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과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기준 및 세부 운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기능성 관련 축산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학적 근거 없는 기능성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국내 축산물 시장의 안정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산업체 측면의 기여도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대한 생산자들의 대응은 신속해지고 있고, 보다 품질이 좋고, 안전하며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 또는 기타 여러 요소별로 차별화된 제품의 상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용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과 관련업체가 기능성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기능성 축산물 산업의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률과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및 운영방안이 제정된다면 축산물의 새로운 종류로서 기능성 축산물의 확실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으로 기존의 축산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능성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기대 가능 할 것이다.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틀이 마련되어 축산업계의 경제·산업적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 식품 산업의 내수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적 측면의 기여도

FTA로 인한 기능성 축산물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능성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 졌다. 이에 기능성 축산물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표시·광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기능성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 기능성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자 측면의 기여도

과학의 발달과 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도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현대의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well-being 열풍과 결합하면서, 식이를 통한 영양소와 기능성분 섭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식품의 양적 공급을 목표로 식품이 소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식품이 제공하는 건강 기능성을 위주로 양적 소비(quantitative consumption)에서 질적 소비(qualitative consumption)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한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운영방안 마련으로 기능성 축산물의 기능성 내용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해 짐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소비자를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위·광대광고의 억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구매 및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광고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기능성 축산물 산업의 발전과 나아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7장 참고문헌

- (재)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 후생노동성허가 특정보건용식품 2008판 [특보] 안내(2008)
- 박경식, 박기환, 이성기. 기능성 축산물 및 축산식품의 제도설정. 기능성 축산물연구회 창립 심포지엄 (2008)
- 박기환.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개선. 유가공 정보, 21 : 3-10 (2007. 12)
- 서정희. 기능성 유제품의 표시제도. 유가공 정보, 21 : 15-17 (2007. 12)
- 식품영양성분 data base. (2006) 식품성분표. 제 7 개정판. 농촌진흥청 <http://kissna.kfda.go.kr>.
- 이성기 (2008) 기능성 축산물의 연구 동향. 기능성 축산물 연구회 창립 심포지엄-기능성 축산물 및 축산식품의 제도설정, 기능성축산물연구회, 수원, 한국, pp. 49-64.
- Ahmad, I. and Aqil, F. (2006) In vitro efficacy of bioactive extracts of 15 medicinal plants against ES β L-producing multidrug-resistant enteric bacteria. Microbiol. Res. 162, 264-275.
- Aleson-Carbonell, L., Fernández-López, J., Pérez-Alvarez, J. A., and Kuri, V. (2005) Characteristics of beef burger as influenced by various types of lemon albedo. Innovative Food Sci. Emerging Technol. 6, 247-255.
- Bech-Larsen, T. and Scholderer, J. (2007) Functional foods in Europe: consumer research, market experiences and regulatory aspects. Trends Food Sci. Technol. 18, 231-234.
- Burdock, G. A., Garabin, I. G., and Griffiths, J. C. (2006) The importance of GRAS to the functional food and nutraceutical industries. Toxicology 221, 17-27.
- Canada Gazette. Regulations amending the Food and Drug Regulations (1385-Vitamin K)[SOR/2005-307]. C and Gaz II 139(21), 2386-2390. (2005)
- Chin, K. B. and Ahn, E. H. (2005) Evaluation of sodium lactate and potassium lactate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helf-life of low-fat sausage during refrigerated storage.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5, 52-59.
- Debasis Bagchi, PhD FACN CNS MAChE. Nutraceutical and Functional Foo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2008)
- EC (2006a)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204, 9-25.
- EC (2006b)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the addition of vitamins and minerals and of certain other substances to food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404, 26-38

- FSANZ (2009)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vailable: <http://www.foodstandards.gov.au/>
- Grethe, H. (2007) High animal welfare standards in the EU and international trade-How to prevent potential 'low animal welfare havens'? Food Policy 32, 315-333.
- Gulati, O. P. and Ottway, P. B. (2008) Botanical nutraceuticals (food supplements, fortified and functional foods) in the European Union with main focus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regulation. In: Nutraceutical and functional foo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Bagchi, D. (ed), Academic Press, NY, 199-219.
- Hideko Ikeda, Requirements and Problems for Ensuring the Safety of Health Foods in Jap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safety Aspects in the Deve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Korean Society of Food Hygiene and Safety(2008)
- Hirobumi Ohama, FOSHU, FNFC, and so called 'Health Foods' in Japan, Public conference on Recent and forthcoming changes to the regulation of health claims in Korea, 47-68p(2008)
- Jang, A. R., Chae, H. S., Yoo, Y. M., Ham, J. S., Jeong, S. G., Lee, S. G., Ahn, C. N., Kim, D. H., Lee, S. K., and Lee, E. S. (2009) A study on the health benefits labeling for livestock products.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9, 599-611.
- Joo, S. Y. and Chung, H. J. (2005) Properties of low-fat pork patties formulated with carrageenan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pectin or potato starch. Korean J. Food Culture. 20, 360-366.
- Kang, H. K., Kang, G. H., Kim, D. W., Na, J. C., Yu, D. J., Lee, S. J., and Kim, S. H. (2008) Effects of feeding high and low Ca additive on laying performance and egg quality in laying hens. J. Anim. Sci. & Technol. (Kor.) 50, 799-806.
- Kang, S. N., Kim, J. D., Kim, I. S., Jin, S. K., and Lee, M. (2007) Effect of replacing antibiotics by herb extracts and digestive enzymes containing vitamin E and oriental medicinal plants byproduct on blood serum cholesterol and meat qualities in the hog loin meat.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7, 87-94.
- Kim, B. K., Choi, C. B., Kim, Y. J. (2009) Effects of dietary mugwort on the performance and meat quality of hanwoo steers during refrigerated storage.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340-348.

- Kim, B. K., Go, S. J., and Kim, Y. J. (2005) Effects of feeding clay mineral pegmatite and vitamin A on growth performance, serum profile and carcass characteristics of fattening hanwoo steers. *J. Anim. Sci. & Technol. (Kor.)* 47, 283-292.
- Kim, I. S., Jin, S. K., and Ha, C. J. (2008) Improved quality properties of low-fat meat patties containing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reeze storage.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8, 113-121.
- Kim, J. and Kwon, O. (2007) Health functional foods.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Food Science and Industry* 40, 3-10.
- Kim, S. H., Byun, S. H., Lee, S. M., Hwang, J. H., Jeon, B. T., Moon, S. H., and Sung, S. H. (2007) Effects of supplementation period and levels of fermented mineral feed (Power-Mix) on the growth and carcass characteristics of hanwoo steer.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7, 450-456.
- Kim, S. J., Choi, W. S., You, S. G., Min, Y. S. (2007) Effect of gucomannan on quality and shelf-life of low-fat chicken patty. *Korean J. Food Sci. Technol.* 39, 55-60.
- Kim, Y. H., Yoo, J. S., Park, J. C., Jung, H. J., Cho, J. H., Chen, Y. J., Kim, H. J., Kim, I. C., Lee, S. J., and Kim, I. H. (2008) Effects of copper and zinc sources on growth performance, nutrient digestibility, carcass traits and meat characteristics in finishing pigs.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8, 27-31.
- Kim, Y. R., Lee, B. K., Kim, J. Y., Kim, J. S., Lee, W. S., Lee, S. Y., Kim, E. J., Ahn, B. K., and Kang, C. W. (2009) Effects of dietary locally grown herbs (*Mentha piperascens*, *Rubus coreanus*, *Tagetes patula*) on the growth performance and meat quality of broiler chicken.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9, 168-177.
- Lee, H. C. and Chin, K. B. (2009) Effect of Transglutaminase, Acorn, and Mungbean Powder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fat/salt Pork Model Sausages.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9, 374-381.
- Lee, J. R., Jung, J. D., Hah, Y. J., Lee, J. W., Lee, J. I., Lee, J. D., Park, G. B., and Kwck, S. J. (2005) Effects of addition of citron peel powder on the proximate composition, minerals, vitamin A, C content and fatty acid composition of emulsion-type sausage. *J. Anim. Sci. & Technol. (Kor.)* 47, 99-106.
- Lee, M. A., Han, D. J., Choi, J. H., Choi, Y. S., Kim, H. Y., Jeong, J. Y., Paik, H. D., Kim, C. J. (2008) Effect of hot air dried Kimchi powder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 fat sausages.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8, 146-153.

- NHPD. Natural Health Products Compliance Guide. Version 2.1. Natural Health Products Directorate. (2007)
- Park, B. Y., Cho, S. H., Kim, J. H., Lee, S. H., Hwang, I. H., Kim, D. H., Kim, W. Y., and Lee, J. (2005) Effects of organic selenium supplementation on meat quality of Hanwoo steers. *J. Anim. Sci. & Technol. (Kor.)* 47, 277-282.
- Park, B. Y., Cho, S. H., Seong, P. N., Hah, K. H., Lee, S. H., Hwang, I. H., Kim, D. H., Kim, W. Y., Lee, J. M., and Ahn, J. N. (2006) *J. Anim. Sci. & Technol. (Kor.)* 48, 603-610.
- Park, S. Y., Chin, K. B., Yoo, S. S. (2005) Flavor compound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 manufactured with chitosans during refrigerated storage.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5, 285-294.
- Park, J. C., Jeong, J. Y., Lee, E. S., Choi, J. H., Choi, Y. S., Yu, L. H., Paik, H. D., Kim, C. J. (2005) Effects of replaced plant oils on the quality properties in low-fat hamburger patties. *Korean J. Food Sci. Technol.* 37, 412-417.
- Recent and Forthcoming Changes to the Regulation of Health Claims in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2008)
- Son, S. H., Bang, J. W., Lee, H. C., Kim, K. H., and Chin, K. B. (2009) Product Quality and Shelf-life of Low-fat Sausages Manufactured with *Lentinus edodes* Powder, Grapefruit Seed Extracts, and Sodium Lactates alone or in Combination.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9, 99-107.
- Substances That May Be Used in Listed Medicines in Australi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2007)
- The regulation of complementary medicines in Australia - an overview,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2006)
- Yoo, Y. M., Ahn, J. N., Cho, S. H., Park, B. Y., Lee, J. M., Kim, Y. K., and Park, H. K. (2002) Feeding effect of ginseng by-product on characteristics of pork carcass and meat quality.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2, 337-342.

제8장 첨부서류


[별첨]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 현황(2012년 12월 17일 기준)

1. 특정보건용 식품 중 육제품 관련 제품(24종)
2. 특정보건용 식품 중 유제품 관련 제품(103종)

[별첨]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 현황(2012년 12월 17일 기준)

1. 특정보건용 식품 중 육제품 관련 제품(24종)

1-1. 원데이 밸런스 포크 소세지

상품명	원데이 밸런스 포크 소세지	
제조회사	(주) 일본햄	
식품유형	소세지류	
관여성분	대두단백질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분리 대두단백질을 원료뿐만 아니라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대두단백질을 섭취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다량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을 하루 한 봉지 135g(대두단백질로 9.9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10.21	
허가번호	130	


1-2. 원데이 밸런스 포크 프랭크

상품명	원데이 밸런스 포크 프랭크
제조회사	(주) 일본햄
식품유형	소세지류
관여성분	대두단백질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분리 대두단백질을 원료뿐만 아니라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대두단백질을 섭취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다량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을 하루 한 봉지 135g(대두단백질로 10.7g)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10.21
허가번호	131

1-3. 대두 가라아게

상품명	대두 가라아게
제조회사	(주) 후지제유
식품유형	소세지류
관여성분	대두단백질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분리 대두단백질을 원료뿐만 아니라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대두단백질을 섭취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을 하루 한 봉지(20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04.24
허가번호	176

1-4. 건강선언 헬시 버거

상품명	건강선언 헬시 버거	
제조회사	(주) 마루다이식품	
식품유형	햄버거	
관여성분	대두단백질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제품은 식사 후 콜레스테롤이 흡수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혈청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다량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80g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12.24	
허가번호	251	

1-5. 원데이 밸런스 햄버거

상품명	원데이 밸런스 햄버거
제조회사	(주) 일본햄
식품유형	햄버거
관여성분	대두단백질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분리 대두단백질을 원료뿐만 아니라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대두단백질을 섭취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다량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을 하루 한 봉지(대두단백질로 10.6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5.23
허가번호	352


1-6. 원데이 밸런스 미트볼

상품명	원데이 밸런스 미트볼
제조회사	(주) 일본햄
식품유형	미트볼
관여성분	대두단백질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분리 대두단백질을 원료뿐만 아니라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대두단백질을 섭취하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다량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을 하루 한 봉지(대두단백질로 10.6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5.23
허가번호	353

1-7. 건강선언 헬시 볼

상품명	건강선언 헬시 볼
제조회사	(주) 마루다이식품
식품유형	미트볼
관여성분	대두단백질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대두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다량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한 봉지(90g)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8.30
허가번호	363

1-8. 마루하 피쉬 소세지

상품명	마루하 피쉬 소세지	
제조회사	(주) 마루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75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질병위험저감표시)	
허가일	2009.01.21	
허가번호	1074	

1-9. 마루하 피쉬 소세지 85

상품명	마루하 피쉬 소세지 85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85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9.04.24
허가번호	1110

1-10. 생선 소세지

상품명	생선 소세지
제조회사	(주) 일본수산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75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질병위험저감표시)
허가일	2009.07.27
허가번호	1139

1-11. 세븐 프리미엄 생선 소세지

상품명	세븐 프리미엄 생선 소세지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75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1.04.01
허가번호	1284

1-12. 생선 소세지

상품명	생선 소세지
제조회사	(주) 시지시재팬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75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1.11.21
허가번호	1312

1-13. 맛있게 먹고 싶다! 생선 소세지

상품명	맛있게 먹고 싶다! 생선 소세지
제조회사	(주) 다이에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75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1.11.21
허가번호	1313


1-14. 세븐 프리미엄 생선 소시지 80g

상품명	세븐 프리미엄 생선 소시지 80g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80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질병위험저감표시)
허가일	2012.4.17
허가번호	1338


1-15. 섬유도 취할 수 있는 보로니아 소세지

상품명	섬유도 취할 수 있는 보로니아 소세지	
제조회사	(주) 일본햄	
식품유형	소세지류	
관여성분	난소화성텍스트린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식이 섬유를 보충, 배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을 하루 한 봉지 65g(식이 섬유로 4.8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8.27	
허가번호	359	

1-16. 섬유도 취할 수 있는 로스햄

상품명	섬유도 취할 수 있는 로스햄		
제조회사	(주) 일본햄		
식품유형	햄류		
관여성분	난소화성텍스트린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식이 섬유를 보충, 배의 상태를 정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을 하루 한 봉지 65g(식이 섬유로 4.8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8.27		
허가번호	360		


1-17. DHA 들어있는 리사라 소세지

상품명	DHA 들어있는 리사라 소세지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소세지류		
관여성분	DHA/EP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불포화 지방산(EP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이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약은 아닙니다. 치료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50g)를 기준으로 그대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8.04.09		
허가번호	1008		

1-18. DHA 들어있는 햄 타입

상품명	DHA 들어있는 햄 타입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DHA/EP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불포화 지방산(EP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이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약은 아닙니다. 치료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5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05.19
허가번호	1117


1-19. DHA 들어있는 리사라 햄버거 타입

상품명	DHA 들어있는 리사라 햄버거 타입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DHA/EP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불포화 지방산(EP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이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약은 아닙니다. 치료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5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05.19	
허가번호	1118	


1-20.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상품명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DHA/EP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불포화 지방산(EP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이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약은 아닙니다. 치료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두 개(50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08.23
허가번호	1245


1-21.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마늘맛

상품명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마늘맛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DHA/EP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불포화 지방산(EP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이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약은 아닙니다. 치료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두 개(50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08.22	
허가번호	1297	

1-22.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바질맛

상품명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바질맛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DHA/EP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불포화 지방산(EP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이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약은 아닙니다. 치료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두 개(50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08.22	
허가번호	1298	

1-23.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레몬&파슬리맛


상품명	DHA 들어있는 피쉬 슈나 레몬&파슬리맛	
제조회사	(주) 마르하니치로식품	
식품유형	어육소세지	
관여성분	DHA/EP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혈청 중성 지방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코사헥사엔산(DHA)과 다가불포화 지방산(EP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중성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이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약은 아닙니다. 치료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두 개(50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08.22	
허가번호	1299	

1-24. 건강 지원 식품 키토산 들어있는 마린


상품명	건강 지원 식품 키토산 들어있는 마린
제조회사	(주) 키분식품
식품유형	소세지류
관여성분	키토산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키토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본 제품 한 팩에 키토산 0.7g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루 여섯 개(105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2.01.21
허가번호	407

2. 특정보건용 식품 중 유제품 관련 제품(103종)


2-1. 메이지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LB 81플레인

상품명	메이지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LB 81플레인	
제조회사	(주) 메이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delbrueckii sp. bulgaricus</i> 2038 <i>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i> 1131	
허가 받은 표시내용	LB 81 유산균의 운동에 의해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해 장의 상태를 좋게 유지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가열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봉 후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ml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10.21	
허가번호	132	


2-2. 메이지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LB 81

상품명	메이지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LB 81	
제조회사	(주) 메이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delbrueckii sp. bulgaricus</i> 2038 <i>Streptococcus salivarius sp. thermophilus</i> 1131	
허가 받은 표시내용	LB 81 유산균의 운동에 의해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해 장의 상태를 좋게 유지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가열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봉 후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ml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10.21	
허가번호	133	


2-3. 메이지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Ca

상품명	메이지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Ca	
제조회사	(주) 메이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delbrueckii sp. bulgaricus</i> 2038 <i>Streptococcus salivarius sp. thermophilus</i> 1131	
허가 받은 표시내용	LB 81 유산균의 운동에 의해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해 장의 상태를 좋게 유지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가열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봉 후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ml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10.21	
허가번호	134	


2-4. 메이지 불가리아 Ca 마시는 요구르트

상품명	메이지 불가리아 Ca 마시는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메이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delbrueckii sp. bulgaricus</i> 2038 <i>Streptococcus salivarius sp. thermophilus</i> 1131	
허가 받은 표시내용	LB 81 유산균의 운동에 의해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해 장의 상태를 좋게 유지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가열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봉 후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ml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9.10.21	
허가번호	135	


2-5. 야쿠르트

상품명	야쿠르트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5.20	
허가번호	181	


2-6. 메이지 아침의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LB 81

상품명	메이지 아침의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 LB 81	
제조회사	(주) 메이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delbrueckii sp. bulgaricus</i> 2038 <i>Streptococcus salivarius sp. thermophilus</i> 1131	
허가 받은 표시내용	LB 81 유산균의 운동에 의해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해 장의 상태를 좋게 유지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가열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봉 후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ml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86	


2-7. 비피더스 요구르트

상품명	비피더스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모리나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비피더스균(<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이 들어있으므로, 장내 비피더스균이 증가해 장내환경을 좋게 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g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89	


2-8. 야쿠르트 80Ace

상품명	야쿠르트 80Ace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분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93	


2-9. 야쿠르트 LT

상품명	야쿠르트 LT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94	


2-10. 죠아 플레인

상품명	죠아 플레인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95	


2-11. 죠아 오렌지

상품명	죠아 오렌지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96	


2-12. 죠아 스트로베리

상품명	죠아 스트로베리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분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97	

2-13. 죠아 레몬

상품명	죠아 레몬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분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98	


2-14. 죠아 라이트

상품명	죠아 라이트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분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199	

2-15. 죠아 마일드

상품명	죠아 마일드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200


2-16. 죠아 청포도

상품명	죠아 청포도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201	


2-17. 죠아 트로피칼후르츠

상품명	죠아 트로피칼후르츠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202


2-18. 락탈

상품명	락탈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의 작용으로,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의 건강을 지켜준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203	


2-19. 락탈E

상품명	락탈E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의 작용으로,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의 건강을 지켜준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30	
허가번호	204	

2-20. 비피르

상품명	비피르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의 작용으로,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의 건강을 지켜준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06	

2-21. 야쿠르트 400

상품명	야쿠르트 400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07	


2-22. 야쿠르트 80 Ace LT

상품명	야쿠르트 80 Ace LT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08


2-23. 야쿠르트 플레인 요구르트

상품명	야쿠르트 플레인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g 이상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09


2-24. 퓨아라 알로에

상품명	퓨아라 알로에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10	


2-25. 퓨아라 블루베리

상품명	퓨아라 블루베리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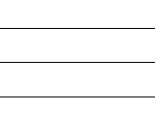
2-26. 소후르 플레인

상품명	소후르 플레인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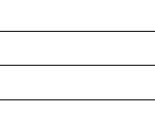
2-27. 소후르 스트로베리

상품명	소후르 스트로베리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13	

2-28. 소후르 애플

상품명	소후르 애플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14	


2-29. 소후르 유자

상품명	소후르 유자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15	


2-30. 소후르 LT

상품명	소후르 LT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16


2-31. 타카나시 요구르트 장으로 GG!

상품명	타카나시 요구르트 장으로 GG!	
제조회사	(주) 타카나시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rhamnosus</i> GG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actobacillus rhamnosus</i> GG의 작용에 의해,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은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좋게 하도록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3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06.04	
허가번호	225	


2-32. 죠아 블루베리

상품명	죠아 블루베리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11.22	
허가번호	234	

2-33. 타카나시 드링크요구르트 장으로 GG!

상품명	타카나시 요구르트 장으로 GG!	
제조회사	(주) 타카나시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rhamnosus</i> GG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actobacillus rhamnosus</i> GG의 작용에 의해,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은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좋게 하도록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3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06.12	
허가번호	268	


2-34. 메이지 불가리아 요구르트 LB 81

상품명	메이지 불가리아 요구르트 LB 81	
제조회사	(주) 메이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delbrueckii</i> sp. <i>bulgaricus</i> 2038 <i>Streptococcus salivarius</i> sp. <i>thermophilus</i> 1131	
허가 받은 표시내용	LB 81 유산균의 운동에 의해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해 장의 상태를 좋게 유지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가열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봉 후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g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1.10	
허가번호	289	

2-35. 비피더스 플레인 요구르트

상품명	비피더스 플레인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모리나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비피더스균(<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이 들어있으므로, 장내 비피더스균이 증가해 장내환경을 좋게 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100g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호에 따라 기준량 이상을 드셔도 됩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1.10
허가번호	290

2-36. 야쿠르트 200

상품명	야쿠르트 200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12	
허가번호	300	


2-37. 퓨아라 감귤믹스

상품명	퓨아라 감귤믹스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12
허가번호	301


2-38. 퓨아라 모과

상품명	퓨아라 모과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12
허가번호	302


2-39. 퓨아라 피치

상품명	퓨아라 피치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12	
허가번호	303	


2-40. 칼피스 유산 비피더스 라이프

상품명	칼피스 유산 비피더스 라이프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Soy oligosaccharide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Soy oligosaccharide을 함유하고 있어,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증가시켜 장내의 환경을 좋게 유지시키므로 장의 상태가 신경 쓰이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너무 많이 마시거나 체질·몸의 상태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60g), Soy oligosaccharide(stachyose, raffinose) 2g)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12	
허가번호	307	


2-41. 마시는 덴마크요구르트

상품명	마시는 덴마크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후쿠시마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actis</i> FK 120	
허가 받은 표시내용	비피더스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해,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100ml(약 반 컵)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호에 따라 기준량 이상을 드셔도 됩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28	
허가번호	308	

2-42. 먹는 덴마크요구르트

상품명	먹는 덴마크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후쿠시마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actis</i> FK 120	
허가 받은 표시내용	비피더스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해,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100g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호에 따라 기준량 이상을 드셔도 됩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28	
허가번호	309	


2-43. 밀밀S

상품명	밀밀S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 breve</i> Yakult의 작용으로,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의 건강을 지켜준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12.28	
허가번호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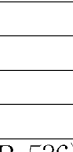
2-44. 코이와이 저지방 마시는 요구르트[효모식물 섬유 함유]

상품명	코이와이 저지방 마시는 요구르트[효모식물 섬유 함유]	
제조회사	(주) 코이와이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맥주효모에서 유래된 식물섬유	
허가 받은 표시내용	맥주효모에서 유래된 식물섬유의 작용으로 장내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환경을 개선하여 장내의 상태를 좋게 유지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식물성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의해 배가 부를 수 있지만 일시적이므로 안심하고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0. 12. 28	
허가번호	320	


2-45. 모리나가 카르다스

상품명	모리나가 카르다스	
제조회사	(주) 모리나가 유업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	
허가 받은 표시내용	장에 살아있는 상태로 도달하는 비피더스균(<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의 작용으로 장내의 비피더스균이 증가하여 장내환경을 좋게 하여 장내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3.23	
허가번호	328	


2-46. 모리나가 비피더스

상품명	모리나가 비피더스	
제조회사	(주) 모리나가 유업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	
허가 받은 표시내용	장에 살아있는 상태로 도달하는 비피더스균(<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의 작용으로 장내의 비피더스균이 증가하여 장내환경을 좋게 하여 장내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3.23	
허가번호	329	


2-47. 장에 맛있는 요구르트

상품명	장에 맛있는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협동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actis</i> LKM 5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비피더스균을 함유해,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증가시켜 장내환경을 개선하여 장내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후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컵(10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4.09	
허가번호	346	


2-48. 장에 맛있는 요구르트 플레인

상품명	장에 맛있는 요구르트 플레인	
제조회사	(주) 협동 유업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actis</i> LKM 5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비피더스균을 함유해,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증가시켜 장내환경을 개선하여 장내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후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컵(10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4.09	
허가번호	347	

2-49. 칼피스 키즈

상품명	칼피스 키즈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 acidophilis</i> CK 92, <i>L. helveticus</i> CK 60	
허가 받은 표시내용	유산균 <i>L. acidophilis</i> CK 92, <i>L. helveticus</i> CK 60의 작용으로 장의 상태가 좋게 유지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4.11	
허가번호	348	

2-50. 칼피스 키즈 복숭아

상품명	칼피스 키즈 복숭아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 acidophilis</i> CK 92, <i>L. helveticus</i> CK 60	
허가 받은 표시내용	유산균 <i>L. acidophilis</i> CK 92, <i>L. helveticus</i> CK 60의 작용으로 장의 상태가 좋게 유지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4.11	
허가번호	349	


2-51. 프로즌 요구르트 건강한 가족

상품명	프로즌 요구르트 건강한 가족
제조회사	(주) 에자키글리코
식품유형	냉동발효유
관여성분	Lactosucrose
허가 받은 표시내용	프로즌 요구르트 건강한 가족은 Lactosucrose을 배합하여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적정하게 증가시키는 제품으로, 장내 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과하게 드시거나 체질·몸의 상태에 따라 설사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1~3개(Lactosucrose량 : 약 2~6g)정도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7.27
허가번호	355

2-52. 칼피스 키즈 사과

상품명	칼피스 키즈 사과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
허가 받은 표시내용	유산균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의 작용으로 장의 상태가 좋게 유지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8.27
허가번호	356


2-53. 칼피스 키즈 오렌지

상품명	칼피스 키즈 오렌지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	
허가 받은 표시내용	유산균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의 작용으로 장의 상태가 좋게 유지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8.27	
허가번호	357	

2-54. 칼피스 키즈 후르츠 케릿

상품명	칼피스 키즈 후르츠 케릿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
허가 받은 표시내용	유산균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의 작용으로 장의 상태가 좋게 유지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8.27
허가번호	358


2-55. 에코 라이프

상품명	에코 라이프	
제조회사	(주) 밀 총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somalto oligosaccharide	
허가 받은 표시내용	에코라이프는 Isomalto oligosaccharide을 원료로 하여 비피더스균을 증가시켜 장내의 환경을 좋게 유지하므로, 장의 상태가 신경 쓰이는 분에게 적합한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과한 섭취 및 체질·몸의 상태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9.13	
허가번호	375	


2-56. 프로바이오틱스 BL2 요구르트

상품명	프로바이오틱스BL2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모리나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비피더스균(<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이 들어있으므로, 장내 비피더스균이 증가해 장내환경을 좋게 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g 이상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9.20
허가번호	380


2-57. 메이지 장활력 밀크

상품명	메이지 장활력 밀크	
제조회사	(주) 메이지 유업	
식품유형	유음료	
관여성분	Propionic acid 균에 의한 유청발효물(DHNA로서)	
허가 받은 표시내용	Propionic acid 균에 의한 유청발효물의 작용에 의해, 당신의 장내의 유익한 균인 비피더스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켜 배변상태를 좋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매일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9.20	
허가번호	382	


2-58. 펠컬

상품명	펠컬	
제조회사	(주) 니신 YORK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NY 1301	
허가 받은 표시내용	<i>Lactobacillus casei</i> NY 1301의 작용에 의해, 장내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좋게 유지하므로 매일 장의건강이 신경 쓰이는 분에게 적합한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품질유지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세요.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65ml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12.19	
허가번호	399	


2-59. 베스트

상품명	베스트	
제조회사	(주) 츠키노토모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sucrose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sucrose을 주성분으로 하여,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적정하게 증가시켜 장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여 배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과한 섭취 및 체질·몸의 상태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5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2.03.25	
허가번호	418	

2-60. 칼피스키즈 딸기

상품명	칼피스키즈 딸기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	
허가 받은 표시내용	유산균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의 작용으로 장의 상태가 좋게 유지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3.02.07	
허가번호	464	

2-61. 칼피스키즈 포도

상품명	칼피스키즈 포도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	
허가 받은 표시내용	유산균 <i>L. acidophilus</i> CK 92, <i>L. helveticus</i> CK 60의 작용으로 장의 상태가 좋게 유지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1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3.02.07	
허가번호	465	

2-62. 비피더스매끈 요구르트

상품명	비피더스매끈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모리나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비피더스균(<i>Bifidobacterium longum</i> BB 536)이 들어있으므로, 장내 비피더스균이 증가해 장내환경을 좋게 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한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후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10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3.06.30
허가번호	517


2-63. CO·OP Wellplus 필콜

상품명	CO·OP Wellplus 필콜
제조회사	(주) 니신YORK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NY 1301
허가 받은 표시내용	<i>Lactobacillus casei</i> NY 1301의 작용에 의해, 장내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좋 게 유지하므로 매일 장의건강이 신경 쓰이는 분에게 적합한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65ml을 기준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4.08.20
허가번호	587

2-64. 장의 건강을 원조 BB-12 요구르트

상품명	장의 건강을 원조 BB-12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아즈미노 식품 공방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의 작용으로 장내환 경을 개선하고 장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별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80g(1개)、240g(80g×3개)、320g(80g×4개) : 1개(80g) 120g 1개(80g) : 1개(80g)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4.09.27
허가번호	599


2-65. 칼피스키즈 딸기

상품명	코이와이생유100%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코이와이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 있는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의 작용에 의해 장내의 환경을 개선해, 장내 상태를 좋게 유지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10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4.12.16	
허가번호	627	


2-66. 요즈바 홋카이도 토카치 감미 하지 않은 요구르트 생유100

상품명	요즈바 홋카이도 토카치 감미 하지 않은 요구르트 생유100	
제조회사	(주) 요즈바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의 작용으로 장내환경을 개선하고, 장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별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10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5.11.17	
허가번호	703	

2-67. 소후르LCS 100

상품명	소후르LCS 100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개	
구분	특정보건용식품(재허가)	
허가일	2006.02.21	
허가번호	733	


2-68. 비피네M

상품명	비피네M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breve</i> Yakult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breve</i> Yakult의 작용으로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환경을 개선하고 장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병	
구분	특정보건용식품(재허가)	
허가일	2006.02.21	
허가번호	734	


2-69. 비피네S

상품명	비피네S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breve</i> Yakult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i>Bifidobacteriumbreve</i> Yakult의 작용으로 장내의 유익한 균을 늘리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환경을 개선하고 장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병	
구분	특정보건용식품(재허가)	
허가일	2006.02.21	
허가번호	735	


2-70. 이카루가 요구르트

상품명	이카루가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이카루가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에 함유된 <i>Bifidobacteriumlactis</i> Bb 12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에 도달하여, 장내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별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 90g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6.12.16	
허가번호	799	


2-71. 야쿠르트400 LT

상품명	야쿠르트400 LT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i>Lactobacillus casei</i> Shirota YIT 9029의 작용으로, 유익한 균을 증가시키고 유해한 균을 감소시켜 장내환경을 개선하고, 장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병	
구분	특정보건용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7.12.04	
허가번호	958	

2-72. LC1 야쿠르트

상품명	LC1 야쿠르트	
제조회사	(주) 네슬레 일본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LC1 유산균	
허가 받은 표시내용	LC1 유산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도달하여 장벽에 붙어 경쟁적으로 장 내 <i>Clostridium perfringens</i> 등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비피더스균 등의 유용균을 늘립니다. 본 제품은 LC1 유산균의 작용에 의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 (120g)를 기준으로 드세요.	
구분	특정보건용식품(재허가)	
허가일	2008.12.19	
허가번호	1061	

2-73. LC1 야쿠르트90g

상품명	LC1 야쿠르트90g	
제조회사	(주)네슬레 일본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LC1 유산균	
허가 받은 표시내용	LC1 유산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도달하여 장벽에 붙어 경쟁적으로 장 내 <i>Clostridium perfringens</i> 등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비피더스균 등의 유용균을 늘립니다. 본 제품은 LC1 유산균의 작용에 의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 (120g)를 기준으로 드세요.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8.12.19	
허가번호	1062	


2-74. 술의 나라에서 Bb-12 야쿠르트

상품명	술의 나라에서 Bb-12 야쿠르트	
제조회사	(주) 후루야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lactis</i> Bb-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에 포함된 비피더스균(<i>B. lactis</i> Bb-12)는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착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개 90g을 기준으로합니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9.02.20	
허가번호	1085	


2-75. 조아 여름 한정

상품명	조아 여름 한정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 kazei</i>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 kazei</i> YIT 9029의 작용으로 좋은 균을 늘려 나쁜 세균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개선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개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9.04.24
허가번호	1109


2-76. 요구리나

상품명	요구리나	
제조회사	(주)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자일로올리고당	
허가 받은 표시내용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적정하게 늘려, 배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너무 많이 마시거나 체질·몸의 상태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0.03.19	
허가번호	1200	


2-77. 조아 기간한정 망고맛

상품명	조아 기간한정 망고맛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 kazei</i>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 kazei</i> YIT 9029의 작용으로 좋은 균을 늘려 나쁜 세균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개선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0.05.31	
허가번호	1240	


2-78. 네잎클로버 요구르트

상품명	네잎클로버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오즈바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Bifidobacteriumlactis</i> Bb-12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요구르트에 포함된 비피더스균(<i>B. lactis</i> Bb-12)는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착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100g을 기준으로 드세요.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0.09.30	
허가번호	1262	


2-79. 조아 기간한정 유자맛

상품명	조아 기간한정 유자맛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 kazei</i>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 kazei</i> YIT 9029의 작용으로 좋은 균을 늘려 나쁜 세균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개선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0.09.30	
허가번호	1263	


2-80. 조아열대믹스맛

상품명	조아열대믹스맛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 kazei</i>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 kazei</i> YIT 9029의 작용으로 좋은 균을 늘려 나쁜 세균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개선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1.03.07	
허가번호	1273	

2-81. 나츠크레메구미

상품명	나츠크레메구미	
제조회사	(주) 유키지루시메구미루쿠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actobacillus gasseri</i> <i>bifidobacteria</i> sp	
허가 받은 표시내용	<i>Lactobacillus gasseri</i> 균과 <i>bifidobacteria</i> sp균의 작용으로 장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특히 없음	
1일 기준 섭취량	100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1.04.01	
허가번호	1278	


2-82. 칼피스키즈 딸기

상품명	조아라 프랑스맛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 kazei</i>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 kazei</i> YIT 9029의 작용으로 좋은 균을 늘려 나쁜 세균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개선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1.06.27	
허가번호	1286	

2-83. 소후루메론맛

상품명	소후루메론맛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L. kazei</i> YIT 9029	
허가 받은 표시내용	살아있는 상태로 장내에 도달하는 유산균 <i>L. kazei</i> YIT 9029의 작용으로 좋은 균을 늘려 나쁜 세균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의 상태를 개선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한 개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1.06.28	
허가번호	1292	

2-84. 칼피스 유산 아미르S 칼로리오프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칼로리오프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Lacto tripeptide」 (VPP, IPP) 이 들어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또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 또는 신장기능이 나쁘신 분은 의사에게 상담한 후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 160g, 「Lacto tripeptide」 (VPP, IPP) 3.4g(VPP, IPP환산) 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11.22	
허가번호	244	


2-85. 칼피스 유산 아미르S120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120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Lacto tripeptide」 (VPP,IPP) 이 들어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또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 또는 신장기능이 나쁘신 분은 의사에게 상담한 후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병 120g, 「Lacto tripeptide」 (VPP, IPP) 3.4g (VPP, IPP환산)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1.11.22
허가번호	245

2-86. 칼피스 유산 아미르S 마시는 요구르트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마시는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VPP,IPP) 이 들어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시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섭취해주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두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4.03.23
허가번호	564


2-87. 프레티오

상품명	프레티오	
제조회사	(주) 야쿠르트 본사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GABA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γ (gamma)-aminobutyric acid (GABA)를 포함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의 섭취로 인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다량섭취에 의해 건강이 더욱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한 병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4.09.27	
허가번호	607	

2-88. 칼피스 유산 아미르S 200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200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 (VPP, IPP) 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200g : 하루 한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400g, 600g, 1000g : 하루 200g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5.01.31
허가번호	638

2-89.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후르츠 믹스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후르츠 믹스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 (VPP, IPP) 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에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5.08.01	
허가번호	686	

2-90.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알로에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알로에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 (VPP, IPP) 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에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6.06.15
허가번호	752

2-91.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사과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사과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VPP, IPP)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에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6.06.15
허가번호	753

2-92.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스트로베리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스트로베리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VPP, IPP)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에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6.06.15
허가번호	754

2-93.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블루베리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120 블루베리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VPP, IPP)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에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6.06.15
허가번호	755


2-94. 칼피스 유산 아미르S

상품명	칼피스 유산 아미르S
제조회사	(주) 칼피스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관여성분	Lacto tripeptide (VPP, IPP)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Lacto tripeptide」(VPP, IPP) 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혈압의 예방약 및 치료약이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 드물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 임신 중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한 뒤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200ml 용량 :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400ml, 600ml, 1000ml 용량 : 하루 2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7.02.16
허가번호	836

2-95. 칼슘 강화 스킵

상품명	칼슘 강화 스킵
제조회사	(주) 유키지루시
식품유형	분말유음료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시의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전한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를 먹고 나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저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은 의사에게 상담해주세요.
1일 기준 섭취량	250g : 16g(큰 수저 : 두 수저 반)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16g×10개입: 스틱 한 개(16g)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질병위험저감표시)
허가일	2007.06.18
허가번호	884

2-96. 모리나가 칼슘의 달인

상품명	모리나가 칼슘의 달인	
제조회사	(주) 모리나가 유업	
식품유형	유음료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시의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전한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를 먹고 나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저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은 의사에게 상담해주세요.	
1일 기준 섭취량	하루에 컵 한잔(20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질병위험저감표시)	
허가일	2007.12.04	
허가번호	960	


2-97. 미로 C

상품명	미로 C
제조회사	(주) 네슬레 일본
식품유형	유음료
관여성분	프락토올리고당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프락토올리고당의 작용에 의해 튼튼한 뼈를 만드는 칼슘의 흡수가 촉진 되도록 고안된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을 과음하거나 체질·몸의 상태에 따라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에 두 개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9.07.27
허가번호	1140


2-98. 미로 L

상품명	미로 L
제조회사	(주) 네슬레 일본
식품유형	유음료
관여성분	프락토올리고당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프락토올리고당의 작용에 의해 튼튼한 뼈를 만드는 칼슘의 흡수가 촉진 되도록 고안된 음료입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을 과음하거나 체질·몸의 상태에 따라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일 기준 섭취량	100ml : 하루에 두 개 기준으로 드십시오. 200ml : 하루에 한 개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09.07.27
허가번호	1141


2-99. 우유에서 칼슘

상품명	우유에서 칼슘	
제조회사	(주) 빈스타쿠스노우	
식품유형	분말유음료	
관여성분	칼슘	
허가 받은 표시내용	이 식품은 칼슘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운동과 적절한 양의 칼슘을 함유 건강한 식사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고 늙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칼슘을 과다하게 섭취해도 골 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스틱 한개 (16g)를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재허가)	
허가일	2010.08.23	
허가번호	1247	

2-100. Dr. 마시는 요구르트

상품명	Dr. 마시는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일본루나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ndigestible dextrin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식물섬유로서 식사 시 당의 완만하게 하는 Indigestible dextrin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혈당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본 제품의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혈당치에 이상이 있으신 분과 현재 당뇨병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식사 시에 한 병 180ml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1.09.05	
허가번호	364	

2-101. 서포트 요구르트

상품명	서포트 요구르트	
제조회사	(주) 타카나시 유업	
식품유형	발효유	
관여성분	Indigestible dextrin	
허가 받은 표시내용	본 제품은 Indigestible dextrin의작용에 의해,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하므로, 혈당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과한 섭취나 체질·몸의 상태에 의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량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섭취량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당뇨병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 및 당뇨병이 의심되는 분은 의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에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당 100g 한 개 (Indigestible dextrin : 6.0g)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5.04.27	
허가번호	658	

2-102. 메이지 리카루덴토TM 우유

상품명	메이지 리카루덴토TM 우유
제조회사	(주) 메이지
식품유형	유음료
관여성분	CPP-ACP (우유단백 분해물)
허가 받은 표시내용	충치의 시작은 치아 탈회입니다. 본 상품은 탈회 부분의 재석 회화를 강화하는 CPP-ACP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08.09.17
허가번호	1035

2-103. 메이지 밀크의 리카루덴토®

상품명	메이지 밀크의 리카루덴토®
제조회사	(주) 메이지
식품유형	유음료
관여성분	CPP-ACP (우유단백 분해물)
허가 받은 표시내용	충치의 시작은 치아 탈회입니다. 본 상품은 탈회 부분의 재석 회화를 강화하는 CPP-ACP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섭취 후의 주의사항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드십시오.
1일 기준 섭취량	하루 한 개 기준으로 드십시오.
구분	특정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허가일	2010.11.25
허가번호	1264